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용어정리

공 백

I. 서론

1. 연구목적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입장이 어떠하든, 청소년기는 “문제행동”이 많은 시기라는 점에는 쉽게 동의할 수 있다. 청소년의 발달상 특성과 더불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속에서 청소년들의 행동은 적어도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볼 때는 문제행동으로 간주되곤 한다. 아마도 청소년 문제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비행 또는 범죄가담 행동일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청소년 인구 집단 가운데에서 비행 또는 범죄경력이 있는 청소년들(즉 청소년범죄자)의 문제행동을 다루고자 한다. 사실상 범죄청소년의 문제행동이란 결국 “재범” 또는 “범죄경력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초점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재범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것이다.

흔히 청소년 비행과 범죄는 청소년기의 ‘저항’의 한 기호로 파악하여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¹⁾ 즉 청소년기 인구 중 일정 비율이 범죄행위나 일탈행위에 참여하고, 이들 중 소수만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범죄경력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서면, 청소년의 재범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1) 청소년기에 일탈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은 생활영역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첫째, 재화와 쾌락을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 즉 직업, 신용카드, 술, 섹스 등의 수단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이 보다 용이해진다 둘째, 연령에 따라 규범의식이 증가한다. 셋째, 동료 유대와 생활양식이 변화한다. 동년배나 동성친구에 대한 지향이 감소하는 반면, 이성집단이나 나이가 많고 성숙한 집단에 대한 지향이 늘어난다. 넷째, 일탈행동에 의해 치러야 할 법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다섯째, 불법적인 기회유형이 달라진다 성인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위험이 적고 보다 수지타산적인 범죄, 예를 들어 도박, 사기, 직장에서의 절도 등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Shelley, 1991 85, 김성언 외, 1999 161 재인용)

점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서의 이행과 동시에 청소년 일탈 및 범죄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경력과 관련한 일반적인 해석은 상당수의 범죄가 재범자에 의해 행해진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재범율이 해마다 높아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계속할 사람의 비율이 증가할 개연성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재범문제는 한 사회의 범죄증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성언외, 1999: 161).²⁾

최근 한국 청소년 범죄추세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양적 팽창이 상대적으로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재범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66년에 4.6%에 불과하던 청소년범죄 재범율은 1983년에는 20%를 넘었고, 1998년에 33.6%를 거쳐 2000년에는 35.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과3범 이상의 범죄경력자에 의한 재범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소수 청소년 범죄자의 경력화 경향이 뚜렷하다.³⁾

일반적으로 “재범(recidivism)은 낙인이론에서 말하는 소위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차적인 일탈은 일차적인 일탈, 즉 최초의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부터 생겨난다. 처음으로 범죄나 일탈을 행한 사람은 자신과 상호작용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전과는 달리 자신을 범죄자나 일탈자로 취급하게 되고 당

2) Wolfgang, Figlio and Sellin (1972)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모든 범죄의 과반수, 그리고 폭력범죄의 2/3이상이 자신들의 연구대상으로 삼은 코호트 연령집단 중 단지 6%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범죄의 90%는 재범자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II장 1. 한국 청소년범죄 발생동향 및 재범추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사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낙인에 대한 반응으로 또 다시 일탈이나 범죄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는 현상을 이차적 일탈이라고 한다(Lemert, 1951:75-77). 이차적 일탈, 즉 재범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사회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차적 일탈자에 대한 범죄억제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 그것은 범죄자 관리 및 재사회화에 직접 연관되는 형사정책적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범죄자를 대하는 사회의 일반적 반응의 문제일 수도 있는 복합적인 성격의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범죄청소년의 “재범화” 및 “범죄경력의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탐색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재범율의 증가는 이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비롯된 문제행동을 저지른 후 이로 인하여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한 후, 다시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행청소년들이 상습적이거나 전문적인 성인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결국은 기존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우 프로그램 및 대책의 전반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며, 청소년 범죄의 재범 예방과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새로운 대책의 강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범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유형, 재범시기, 재범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선진 각국의 청소년 재범방지 프로그램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 정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범죄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재범”이라는 스펙트럼을 통

해서 조명한다. 비행·범죄청소년들의 재범양상과 재범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 공식 통계자료에 나타난 한국 청소년범죄의 발생동향과 재범실태 및 추이를 정리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실태와 그 문제점도 고찰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효과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청소년 범죄특성 및 관련 쟁점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청소년 재범 및 범죄경력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주요 쟁점들에 접근한다. 경험과학적 논의를 토대로 조사 쟁점들을 도출·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세 번째, 소년범죄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재범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범죄청소년의 구체적인 문제행동 유형과 특성, 이들의 자아구성 및 실제적 행동성향, 마지막으로 재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한다. 본 조사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요 연구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행동 표출동기, ② 과거 생활환경과 범죄경력, ③ 최초 범죄로 인한 소년의 생활변화, ④ 생활변화와 범죄발전(재범)의 관계, ⑤ 시설경험과 자아낙인(낙인인지), ⑥ 자아개념과 재범 등이다. 이와 같은 쟁점들은 실제로 행위 및 처분결과가 feedback 과정 및 범죄경력의 구조화되어가는 현실과 함께 범죄의 단절과 확산(발전)의 계기(요소)와 과정 등이 밝히는 데 핵심적인 지표(Index)이다.

네 번째, 21세기 전환기적 시점에 등장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소년 사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문제를 검토하고, 각국에서의 청소년 재범억제 프로그램 및 사법적 처우동향 등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검토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예방 및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모색한다.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구성되었다. 우선, 국내외 관계법령과 연구자료 등의 문헌 및 인터넷 정보 분석, 각종 통계자료들을 통하여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발생실태 및 재범현황을 정리하고, 범죄청소년에 대한 범죄사회학적·범죄심리학적 연구결과들을 분석·논의 쟁점들을 도출함과 더불어 청소년 재범억제 및 비행예방을 위한 각국의 정책동향 및 국내의 형사사법적인 대응 및 규제현황 등을 파악·정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범죄청소년의 문제행동 실태와 범죄경력화 및 재범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요연구 결과 및 관련문헌을 분석을 토대로 문제유형과 쟁점들을 구조화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접근하였다. 범죄청소년들의 재범양상과 요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종단적 연구방법은 장기간의 연구를 요하므로 본 연구는 이미 범죄로 인하여 각급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횡단적 연구방법을 택하고 설문지를 통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대상자는 현재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세 단계의 범죄소년 집단들에 대해 시행하였다. ① 분류심사원 대상소년, ② 소년원 대상소년, ③ 소년교도소에 재소하고 있는 소년 등 세 집단을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2003년 5월 22일 현재 사법처리단계별 대상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 범죄자수는 다음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상자 선정방향은 가급적 다양한 소년을 포함하기 위하여 교도소, 소년원, 분류심사원을 모두 조사대상기관에 포함한다. 조사기간 및 비용 등의 한계를 감안하여 가급적 대규모 인원 기간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여자청소년들의 수용인원이 매우 적어서, 성차분석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본 조사에서는 남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표 1-1> 범죄청소년들의 시설수용 현황(2003. 5. 22 현재)

()는 여자수용인원 *는 분류심사기능 함께	소년원	분류심사원	교도소
서울	265	187(21)	
부산	188	109(14)	
대구	115	44(1)	
광주	214	44(7)	
대전	168	32(5)	
전주*	146	14(1)	
청주*	123	20(2)	
춘천*	69	20(6)	
대덕	82		
안양여자	(128)		
충주	81		
안산	60(3)		
제주	41		
천안소년교도소			기결 597
김천소년교도소			기결 429 (미결 229)
소 계	보호소년 1679명	수용위탁 470명(女57)	범죄소년 1026명 (평년보다 30%감소)

이와 같은 선정원칙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기관은 (1) 천안소년교도소(김천교도소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아 제외, 천안은 초등졸업이상자 수용, 김천은 미취학자 등 수용)과 (2) 소년원 및 (3)분류심사원은 서울, 부산, 광주 세 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III장 연구방법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3. 용어정리

분석에 앞서 재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로 한다. 재범은 글자 그대로 과거에 범죄를 행하였던 자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이 때 “재범”이라는 것은 과거에 행했던 똑같은 종류의 범죄, 예를 들면 강도를 했던 사람이 다시 강도를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에는 범죄의 전문화, 특정화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재범율이라는 것은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에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재범이란 범죄행위를 1회 이상 반복하는 행위특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매우 포괄적인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범죄학에서는 재범이라는 용어 대신에 ‘범죄경력’ 또는 ‘경력범죄자’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지만, 법학분야에서 재범, 누범 혹은 상습범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범죄경력 또는 경력범죄자란 과거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하여서 다수의 체포 혹은 기소기록이 있는 사람 혹은 심각성에 있어서 다양한 수준의 범죄를 행하여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체포 혹은 기소기록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여기서 범죄경력이라는 말은 어느 일정기간 동안 경험적으로 발견가능한 횟수의 범죄행위를 행한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의 추이(pattern)를 가리킨다(Blumstein, 1988:2; 류철원의, 1995:32 재인용). 이때 활동적인 범죄자들의 범죄경력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세가지 개념이 유용하게 쓰인다. (1) 범죄행위빈도, (2)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유형의 조합, (3) 범죄경력 기간이다. 여기에서 ‘재범’은 ‘범죄경력’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공 백

II. 논의 배경

1. 학교 청소년범죄 발생동향과
재범추세 분석
2. 재범 및 범죄경력화 과정에
대한 이해

공 백

II. 논의 배경

1. 한국 청소년범죄 발생동향과 재범추세 분석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식통계인 「범죄분석」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범죄백서」의 자료를 기반으로 청소년 범죄의 발생추세 및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범죄분석」과 「범죄백서」에서는 현행 소년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세 가지 소년, 즉 범죄소년⁴⁾, 촉법소년⁵⁾, 우범소년 중에서 우범소년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실제로 형법을 위반한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이며, 우범소년은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는 청소년 범죄자란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공식적 인지보고율을 중심으로 그 추세와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1) 청소년범죄 발생추세

지난 36년간(1965-2001년) 발생추세를 살펴 보면, 우리사회의 범죄는 성인범죄, 청소년범죄에 관계없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다. 2001년의 성인 범죄자수는 192만명으로 1965년에 비해 약 5배이며, 청소년 범죄자수는 약 13만명으로 1965년의 약 2.7배이다.

4)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14세(형사책임연령)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소년.

5)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촉법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를 한 소년

<표 II-1> 전체 소년법 인원 및 전체범죄인중 점유비율(1996-2001)

	전체 범죄자수	성인범죄자		소년범죄자			소년의 점유비율 (%)
		인원	지수	인원	지수	인구비	
1965	437171	389000	(100.0)	48171	(100.0)	82.1	11.0
1970	435765	391920	(100.8)	43845	(91.0)	72.9	10.1
1975	466344	403424	(103.7)	62920	(130.6)	88.1	13.5
1980	725284	636559	(163.6)	88725	(184.2)	124.9	12.2
1985	1005892	903667	(232.3)	102225	(212.2)	142.2	10.2
1990	1420507	1314940	(338.0)	105567	(219.2)	156.0	7.4
1991	1540914	1438377	(369.8)	102537	(212.9)	154.2	6.7
1992	1542035	1442734	(370.9)	99301	(206.1)	151.0	6.4
1993	1738952	1628348	(418.6)	110604	(229.6)	169.4	6.4
1994	1637680	1530280	(393.4)	107400	(223.0)	167.5	6.6
1995	1744179	1619935	(416.4)	124244	(257.9)	193.8	7.1
1996	1929512	1792817	(460.9)	136695	(283.8)	215.8	7.1
1997	1863148	1713292	(440.4)	149856	(311.1)	243.3	8.0
1998	2065483	1916985	(492.8)	148498	(308.3)	246.1	7.2
1999	1949410	1807159	(464.6)	142251	(295.3)	242.2	7.3
2000	1979126	1836353	(472.1)	142773	(296.4)	252.8	7.2
2001	2047627	1917470	(492.9)	130157	(270.2)	249.0	6.4

자료 : 범죄분석 및 범죄백서 해당연도 참조

인구비=12세이상 20세미만 청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

이를 같은 기간 중 청소년의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산출한 청소년 인구 만명당 범죄자수(인구비)로 환산하면, 1966년에 82.1명에서 2001년에 249명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하였다. 즉, 지난 36년 동안 청소년범죄자는 절대적 인원 수 뿐만 아니라 인구비에 있어서도 대략 3배 정도 증가했다. 한편, 전체범죄자중 청소년의 점유비율은 1965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10-13%대를 유지하던 것이 1986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01년에는 역대 가장 낮은 6.4%로 감소하였다. 요컨대, 청소년범죄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성인범죄의 증가추세가 소년범죄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청소년은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에 진입하지 않는 집단들이므로, 상대적으로 [형법]위반율이 [특별법]위반율보다 높다. 따라서 전통적인 범죄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형법범죄를 중심으로 그 발전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결과를 보면, 전체 형법범중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13.4%에서 1980년대에 16-17%에 이르도록 꾸준히 증가하다가 90년대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이 비율의 감소가 실질적 의미에서 소년범죄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2세이상-20세미만의 인구수가 최근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여 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로서 다시 살펴 보면, 1965년 소년범죄자 인구비는 100.5명이었던 것이 70년대엔 다소 낮은 70-80명으로 감소하다가 80년대엔 다시 증가하였고, 95년이후부터 최근까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 2000년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만명당 166.3명의 발생수를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 소년인구수의 절대적 감소 및 훨씬 빠른 성인범죄의 증가율의 영향으로 마치 소년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소년범죄 발생율은 지속적 증가를 보였다. 게다가 지난 36년 동안 소년 형법범죄의 인구비 변화폭(100.5명 → 157.8명)을 성인의 경우(210.8명 → 249.0명)와 비교해 보면, 소년범죄의 발생율이 성인범죄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청소년 형법범죄는 절대규모나 범죄율면에서 연대별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였고, 그것도 성인 형법범죄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11-2> 소년·성인별 형법범 및 특별법범 인원 및 인구비(1965-2001)

	형법범					특별법범		
	소년			성인				
	인원	소년비	인구비	인원	인구비	소년	성인	소년비
1965	44619	13.5	100.9	284971	210.8	3552	104029	3.3
1970	41932	12.5	71.8	292494	191.6	1913	99426	1.9
1975	60314	16.1	86.9	313376	180.9	2606	90048	2.8
1980	83959	17.2	123.2	403783	196.9	4766	232776	2.0
1985	88298	16.8	122.8	438016	181.8	13927	465651	2.9
1990	82446	14.8	115.5	475921	170.0	23121	839019	2.7
1991	72413	12.4	108.9	512710	183.1	30124	925667	3.2
1992	67553	11.1	102.7	539727	188.3	31748	903007	3.4
1993	74465	10.1	114.2	666217	227.3	36139	962131	3.6
1994	76534	10.4	118.3	659778	220.4	30866	870502	3.4
1995	85461	10.5	133.3	731259	240.4	38783	888676	4.2
1996	87084	8.9	137.5	889834	286.8	49611	902983	5.2
1997	95666	11.2	155.3	761873	240.3	54190	951419	5.4
1998	99552	10.2	165.0	872950	271.2	48946	1044035	4.5
1999	93261	10.4	158.8	804124	255.4	48990	1003035	4.7
2000	94465	9.9	166.3	858147	258.1	48308	978206	4.7
2001	82746	8.8	156.8	857831	249.0	47411	1059639	4.3

주 1 범죄분석, 한국통계연감

2 소년인구비는 12-20세미만의 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이고, 성인인구비는 20세이상 성인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

3. 소년비 = 소년범/(소년범+성인범) × 100

4 형법범에는 [폭력행위등처벌법] 포함

2) 발생추세에 나타난 청소년 범죄의 주요 특징

(1) 폭력화 경향

청소년 범죄자들의 유형을 재산범죄, 폭력범죄, 강력범죄, 기타범죄로 나누어 지난 36년간의 구성비율의 변화를 보면, 1966년에는 재산범죄 57.3%, 폭력범죄 28.2%, 강력범죄 2.5%로 나타나 재산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1년에는 재산범죄가 24.5%, 폭력범죄가 37.0%, 강력범죄가 2.5%, 교통범죄가 30.3%, 기타범죄가 5.4%로 나타났다.

범죄구성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재산범죄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폭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995년 이후 폭력범죄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절대 인원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재산범죄는 2만명 수준에서 3-4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폭력범죄는 1만명 수준에서 5-6만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청소년 범죄의 폭력화 경향을 뒷받침한다. 다만 최근 구성비율이 둔화된 것은 교통범죄 등 특별법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기 때문이다

<표 II-3> 청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전체	강력범		폭력범		재산범		교통범		기타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1966	38187	953	2.5	10763	28.2	21900	57.3	29	0.1	4542	13.9
1970	42612	1234	2.9	18427	43.2	17194	40.4	441	1.0	5316	16.4
1975	62920	2273	3.6	28401	45.1	24320	38.7	920	1.5	7006	17.9
1980	88725	4216	4.8	42014	47.4	29206	32.9	2055	2.3	11234	11.1
1985	102225	5689	5.6	46309	45.3	34160	33.4	6247	6.1	9820	8.3
1990	105567	6261	5.9	49075	46.5	25404	24.1	16304	15.4	8523	8.7
1995	124244	4349	3.5	47523	38.2	32338	26.0	30808	24.8	9226	12.8
1996	147008	4566	3.1	53165	36.2	34044	23.2	39378	26.8	15855	7.5
1997	164182	5653	3.4	62218	37.9	39605	24.1	45622	27.8	11084	6.6
1998	161277	6134	3.8	57080	35.4	45561	28.3	41665	25.8	10837	7.1
1999	150821	5053	3.4	56757	37.6	36612	24.3	40874	27.1	11525	5.1
2000	151176	4421	2.9	56711	37.5	39834	26.3	42537	28.1	7673	5.1
2001	138028	3479	2.5	51095	37.0	33822	24.5	41867	30.3	7765	5.4

- 주 1. 강력범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성폭력특별법위반사범 등이 포함
 2. 폭력범에는 폭행·상해, 공갈, 폭력행위등처벌법 및 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 포함
 3. 재산범에는 사기, 절도, 횡령·배임, 장물 등 포함

최근 11년(1990-2000)간 범죄유형별 세부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강력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로 강간범죄의 감소율(만명당 3.8명→2.4명)에 기인한 것이며, 강도범죄(47명→40명)의 추이는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② 폭력범죄의 경우엔 상해(1.6명→2.9명), 폭행(0.5명→1.5명), 폭력행위등(67.8명→90.8명), 공갈(0.3명→

0.8명) 등 모두에서 증가율을 보여, 청소년 범죄의 폭력화 추세를 단적으로 예시한다. ③ 한편, 재산범죄의 경우 전발적인 구성비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절도범죄 발생비는 같은 기간 31.8명에서 53.0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성인의 감소추세와는 상반된 결과로서 청소년범죄의 특수성을 나타낸다. 또한 사기범죄도 같은 기간에 1.8명에서 6.6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소년범죄자의 고학력화 경향에 따라 소년범죄 역시 지능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청소년 교통범죄의 증가

최근 청소년범죄 중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는 유형은 교통범죄의 구성비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특별법범의 범죄유형별 구성동향을 살펴보면, 특히 80년대 후반과 90년대 후반이후 들어서면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교통관련 범죄가 전체 특별법범의 절반을 넘고 있다. 여기에는 1982년부터 시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범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범죄의 급증은 자동차(및 오토바이) 보급의 확대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더욱이 최근 폭주족과 관련된 비행집단의 형성 움직임도 새로운 비행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II-4> 청소년 특별법범의 범죄유형별 구성 동향(1966-2000)

연도	합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기타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1966	2,604	100	29	1.1	-	-	5	0.2	2,570	98.7
1970	1,913	100	441	23.1	-	-	24	1.3	1,448	75.7
1975	2,606	100	920	35.3	-	-	13	0.5	1,673	64.2
1980	4,766	100	2,055	43.1	-	-	95	2.0	2,616	54.9
1985	13,927	100	2,347	16.9	3,900	28.7	663	4.8	7,017	50.4
1990	23,121	100	9,533	41.2	6,771	29.3	785	3.4	6,032	26.1
1995	38,783	100	22,176	57.2	7,840	20.2	1,587	4.1	7,180	18.5
2000	49,894	100	32,051	64.2	8,135	16.3	2,648	5.3	7,060	14.1

자료 범죄백서 1996, 범죄백서 2001 재구성

폭력행위처벌법범과 성폭력특별법범은 제외.

(3) 저연령화 경향

먼저 소년형법범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1966년부터 주된 연령층은 18-19세 청소년들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이후 계속되다가 80년대 후반부터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0년에는 18-19세가 37.8%, 16-17세가 34.5%, 14-15세가 26.7%, 12-13세가 1.0%로 나타났다. 변화를 요약하면, 12-13세와 18-19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14-15세와 16-17세의 비중은 늘어났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곧바로 청소년 범죄자의 저연령화라고 단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연령층별 청소년 인구규모가 다르고 또 그 변화의 속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I-5> 청소년 형법범의 연령별 동향(1966-2000)

연도	계	12-13세		14-15세		16-17세		18-19세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인원	인구비
1966	35,583 (100)	3,292 (9.3)	24.6	4,197 (11.8)	35.7	9,844 (27.7)	92.6	18,250 (51.3)	170.1
1970	40,699 (100)	2,348 (5.8)	13.3	5,904 (14.5)	36.9	13,891 (34.1)	105.5	18,556 (45.6)	158.8
1975	60,314 (100)	2,569 (4.3)	13.9	7,763 (12.9)	41.3	19,560 (32.4)	112.0	30,422 (50.4)	208.0
1980	83,959 (100)	3,988 (4.7)	23.2	11,419 (13.6)	67.0	26,175 (31.2)	152.9	42,367 (50.5)	252.9
1985	88,298 (100)	1,435 (1.6)	7.8	15,306 (17.3)	81.9	31,254 (35.4)	176.6	40,303 (45.6)	237.2
1990	82,446 (100)	1,684 (2.0)	11.0	14,705 (17.8)	90.7	28,627 (34.7)	160.1	37,430 (45.4)	203.7
1995	85,461 (100)	1,617 (1.9)	10.0	25,650 (30.0)	151.3	30,890 (36.1)	198.3	27,304 (32.0)	177.2
2000	95,335 (100)	983 (1.0)	8.0	25,420 (26.7)	195.1	32,919 (34.5)	219.6	36,013 (37.8)	214.8

자료 : 범죄백서 1996, 범죄백서 2001, 한국통계연감 2001 재구성

각 연령층의 인구비는 각 연령층 인구 1만명당 청소년 범죄자수를 말함.

각 연령층별로 인구비를 살펴보면, 먼저 12-13세의 경우 1966년에는 해당 연령층 1만명당 형법범은 약 246명 정도였으나, 2000년에 들어서는 80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14-15세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약 35.7명에서 195.1명으로 5.5배 급격하게 증가였고, 16-17세의 경우에도 92.6명에서 219.6명으로 2.4배 증가하였다. 18-19세의 경우에는 170.1에서 214.8로 1.3배 증가하였다. 특히 14-15세 연령층의 증가율이 매우 컸다. 전반적으로 볼 때, 18-19세 연령층의 범죄참여율 및 구성비율은 줄어들고 14-15세와 16-17세 연령층의 범죄참여율 및 범죄자 구성비

율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 범죄자의 저연령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2-13세 연령층의 경우는 구성비나 인구비 모두 하락하고 있어 제한적인 의미의 저연령화로 볼 수 있다.

한편 연령대별 범죄유형의 차이를 보면, 저연령층일수록 재산범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폭력범죄의 비중이 낮은 반면에 고연령층일수록 폭력범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2001년의 연령과 범죄유형 관계를 보면, 12-13세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재산범죄의 비율이 47.2%로 높고 폭력범죄비율은 37.2%로 낮은 반면, 18-19세 집단의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비율이 68.6%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가장 높고 재산범죄 비율은 25.0%로 가장 낮았다. 고연령집단의 폭력범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신체적 성숙과 일정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동원, 2000: 267-293).

<표 II-6> 청소년 형법범의 연령과 범죄유형(2001)

범죄유형	12-13세		14-15세		16-17세		18-19세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재 산 범	463	47.2	10,571	51.1	10,110	36.7	8,579	25.0	29,723	35.6
폭 력 범	365	37.2	9,345	45.2	15,815	57.3	23,527	68.6	49,052	58.7
강 력 범	46	4.2	648	3.2	1,102	4.0	1,219	3.6	3,015	3.6
과 실 범	31	3.2	32	0.2	29	0.1	55	0.2	147	0.2
기 타	75	7.7	94	0.5	526	1.9	940	2.7	1,635	2.0
계	980	100	20,690	100	27,582	100	34,320	100	83,572	100

자료 : 범죄백서 2002, 재구성

(4) 여자청소년의 범죄가담을 증가

청소년 범죄자의 성별 현황을 보면 <표 II-7>과 같다. 청소년 범죄

자 중 여자청소년의 비율은 1966년에 10.6%에서 1990년에 4.1%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줄어들다가 1995년부터는 그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2000년도에는 12.8%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여자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사범이 크게 늘어나면서 나타난 경향으로 풀이된다(범죄백서, 2000; 범죄백서, 2001). 이 같은 결과는 여학생의 학교폭력 증가와 일정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며, 또한 앞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같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와 맞물려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과거의 문화적 풍토가 약화되면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이동원, 2000).

<표 II-7> 청소년 범죄자의 성별 현황(1966-2000)^{a)}

연도	계	남 자	여 자	여자비율(%)
1966	38,163	34,132	4,031	10.6
1970	42,901	38,895	4,006	9.3
1975	62,007	57,508	4,499	7.3
1980	87,962	82,722	5,240	6.0
1985	102,225	97,495	4,730	4.6
1990	105,567	101,255	4,312	4.1
1995	124,244	115,290	8,954	7.2
2000	143,643	125,156	18,487	12.8

자료 범죄백서 1996. 범죄백서 2001 재구성

a) 특별법범 포함.

여자비율은 (여자/(남자+여자)×100)로서 전체소년범 중 여자 비율(%)

(5) 학생 및 고학력자의 범죄가담을 증가

청소년 범죄자의 신분현황을 보면, 학생의 경우 1966년에는 13.4%에 불과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소년범이 직업청소년이었으나, 무직청소년

년과 직업청소년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여 마침내 2000년에는 학생비율이 51.6%로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학생 범죄자의 급증은 전체 청소년들의 취학을 및 진학을 상승과 관련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범죄참여율이 증가했다고 단순히 결론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전체 청소년들 중에서 학생인구의 변화를 고려하여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표 II-8> 청소년 범죄자의 신분 현황(1966-2000)^{a)}

연도	계	학 생	직업 없음	직업 있음
1966	38,163 (100)	5,115 (13.4)	15,454 (40.5)	17,594 (46.1)
1970	42,901 (100)	5,363 (12.5)	13,680 (31.9)	23,858 (55.6)
1975	62,007 (100)	9,978 (16.1)	25,096 (40.4)	26,933 (43.4)
1980	87,867 (100)	22,271 (25.3)	32,136 (36.6)	33,460 (38.1)
1985	101,997 (100)	31,897 (31.3)	37,344 (36.6)	32,756 (32.1)
1990	105,567 (100)	37,918 (35.9)	29,853 (28.3)	37,797 (35.8)
1995	124,244 (100)	62,168 (50.0)	32,211 (25.9)	29,865 (24.0)
2000	143,643 (100)	74,148 (51.6)	35,751 (24.9)	33,744 (23.5)

자료 범죄백서 1996. 범죄백서 2001 재구성

a) 특별법범 포함, 미상은 제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김성언외, 1999:146)에 따르면, 1966년에 전체 청소년 중에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비율은 41.8%였고, 1995년의 경우 재학생 비율은 89.0%였다. 따라서 1966년에 전체 청소년 100명 중 42명이 학생이고 청소년 범죄자 100명 중 13명이 학생이었고, 1995년에는 전체 청소년 100명 중 89명이 학생이고, 청소년 범죄자 100명 중 52명이 학생이었다. 따라서 같은 기간동안 전체 청소년 가운데 재학생 비율이 21배 증가한 반면 전체 청소년범죄자 가운데 재학생의 비율은 4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면, 결국 학생범죄자의 증가는 단순히 재학생의 증가에 의해서만 설명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학생 비율의 증가 속도 그 이상으로 학생범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력수준 현황을 보면, 불취학 및 초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 범죄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준 학력을 범죄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청소년 범죄자의 고학력화 경향으로 단정할 수도 있지만, 앞서 지적한 취학을 진학률의 상승으로 인한 전체 청소년의 학력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별로 전체 청소년들의 학력수준과 청소년 범죄자의 학력수준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표 II-9> 청소년 범죄자의 학력수준 현황(1966-2000)^{a)}

연도	계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66	36,857 (100)	3,150 (8.5)	19,047 (51.7)	8,148 (22.1)	5,948 (16.1)	564 (1.5)
1970	39,148 (100)	1,804 (4.6)	20,261 (51.8)	9,964 (25.5)	6,672 (17.0)	447 (1.1)
1975	61,458 (100)	1,495 (2.4)	26,550 (43.2)	19,173 (31.2)	13,410 (21.8)	830 (1.4)
1980	84,246 (100)	816 (1.0)	24,720 (29.3)	29,254 (34.7)	27,812 (33.0)	1,644 (2.0)
1985	92,478 (100)	660 (0.7)	11,548 (12.5)	33,049 (45.7)	43,492 (47.0)	3,729 (4.0)
1990	94,416 (100)	353 (0.4)	4,946 (5.2)	31,325 (33.2)	53,735 (56.9)	4,057 (4.3)
1995	118,176 (100)	177 (0.1)	2,896 (2.5)	39,480 (33.4)	70,199 (59.4)	5,424 (4.6)
2000	138,231 (100)	112 (0.1)	2,161 (1.6)	41,088 (29.7)	82,400 (59.6)	12,470 (9.0)

자료 : 범죄백서 1996, 김성언(1999), 범죄백서 2001 재구성

a) 특별법범 포함, 미상은 제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김성언외, 1999:142)에 따르면, 1966년에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일반 청소년의 비율은 22.1%였고, 1995년에는 그 비율이 39.6%로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일반 청소년의 비율은 12.9%에서 44.2%로 상승하였

다 즉 일반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은 1.5배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은 3.3배 증가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청소년 범죄자의 학력수준의 변화를 보면,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1.5배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3.7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체 청소년들의 고학력화 경향보다 청소년 범죄자의 고학력화 경향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재범추세와 문제점

청소년 재범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년에는 전과가 없는 청소년의 비율이 압도적이었으나 꾸준히 그 비율이 감소하여 2000년에는 60%대로 떨어졌다. 반면, 1966년에 4.6%에 불과하던 청소년 범죄 재범률은 1978년에는 10%를 넘어섰고, 1983년에는 20%를 넘어섰으며, 2000년에는 35.4%로 30%선을 넘었다. 다시말해, 범죄를 행한 청소년 세명 중의 한명은 재범자라는 것이다.

재범 청소년의 범죄경력을 보면, 특히 전과 3범이상에 의한 재범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과 1범에 의한 재범률은 1966년에는 3.8%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6.0%로 늘어나 3.2배가 커졌다. 전과 2범에 의한 재범률은 1966년에는 0.4%에서 2000년에는 8.0%로 같은 기간 동안 약 19배 증가했으며, 전과 3범이상에 의한 재범률은 1966년에 0.2%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전과 2범보다 많은 11.4%를 기록하였다. 즉 전과 3범이상인 청소년 재범률은 같은 기간동안 무려 60배 가까이 더 큰 규모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년법의 상습범화는 가속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표 II-10> 청소년 범죄자의 전과 현황(1966-2000)^{a)}

연도	계	전과 없음	1犯	2犯	3犯이상
1966	38,163 (100)	36,493 (95.6)	1,446 (3.8)	150 (0.4)	74 (0.2)
1970	42,901 (100)	41,377 (96.4)	1,273 (3.0)	162 (0.4)	89 (0.2)
1975	62,007 (100)	57,533 (92.8)	3,657 (5.9)	616 (1.0)	201 (0.3)
1980	87,962 (100)	78,246 (89.0)	6,954 (7.9)	1,845 (2.1)	917 (1.0)
1985	102,225 (100)	80,819 (79.0)	12,000 (11.7)	5,308 (5.2)	4,098 (4.0)
1990	105,567 (100)	81,896 (77.6)	13,040 (12.4)	5,446 (5.2)	5,185 (4.9)
1995	120,047 (100)	91,048 (75.8)	16,678 (13.9)	6,774 (5.6)	5,547 (4.6)
2000	140,893 (100)	90,875 (64.5)	22,608 (16.0)	11,311 (8.0)	16,099 (11.4)

자료 · 범죄백서 1996. 범죄백서 2001 재구성

a) 특별법범 포함, 미상은 제외.

범죄유형별로 범죄경력에 있는 청소년에 의해 그 유형의 범죄가 행해지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80년대 이후로 형법범죄보다는 특별법범죄의 경우, 범죄경력자에 의한 비율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재산범죄보다는 폭력범죄에 있어서의 재범률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범죄경력에 있는 청소년이 형법범죄를 행한 비율(형법범죄의 재범률)은 1966년 4.9%에서 1980년 10.5%로 높아졌고, 1990년에는 20.3%, 1998년에는 32.4%를 기록했다. 또한 재산범죄에 있어 범죄경력 청소년에 의해 행해진 비율(재산범죄의 재범률)은 1966년 5.7%에서 1980년 10.4%, 1990년 21.6%, 1998년에는 31.4%로 증가하였다. 폭력범죄가 범죄경력에 있는 청소년에 의해 행해진 비율(폭력범죄의 재범률)은 1966년 3.1%에서 1980년 11.7%, 1990년 24.1%, 1998년 34.6%로 계속 증가하였다(김성언 외, 1999: 164-180).

공식적으로 보고된 범죄발생추세에 나타난 청소년범죄와 성인범죄의 재범상황을 종합·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폭력범죄 중 범죄경력자에 의한 범행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강

도범죄였다. 이것은 청소년범죄와 성인범죄 모두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특징이다. 특히 1998년의 경우, 유일하게 강도범죄만이 청소년 범죄경력자에 의한 범행비율이 40%선을 넘어서고 있었고, 성인 범죄경력자에 의한 범행비율은 70%를 넘어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범죄경력자에 의한 범행비율이 1995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② 범죄경력자에 의한 청소년 절도범죄의 비율은 1975년까지만 하더라도 강도 다음으로 재범율이 높은 유형이었지만, 이후 20여년간 다른 유형(강도, 강간, 폭행, 상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범비율을 보이고 있다.

③ 가장 주목할 유형은 강간범죄이다. 강간범죄의 경우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다른 유형(강도, 절도, 폭행, 상해 등)에 비해 재범비율이 낮은 편에 속했지만, 1995년을 기점으로 강도범죄 다음으로 높은 재범율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범죄경력자에 의한 재범율은 1990년 이후 강도, 강간, 폭행, 상해에 있어서(절도제외) 20%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1998년에는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상해 모두 30%를 상회하였다. 성인의 경우도 재범율은 50-60%선(절도제외)에 이르고 있다. 특히 3범 이상의 높은 범죄경력을 지닌 청소년이나 성인에 의한 재범률이 1985년을 정점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강도와 강간범죄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난다(김성언외, 1999:179-180). 요컨대, 범죄경력자의 재범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범죄자의 재사회화 및 재범억제 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4) 사법적 처리현황과 처우의 문제점

(1)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현황

2002년 소년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처리한 내역을 보면, 전체 소년범

죄자 124,076명 중 구공판 6.8%, 구약식 23.2%, 기소유예 38.8%, 소년부 송치 15.9%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97년 12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강화 등 불구속수사의 확대경향 및 인권신장 우선정책과 맞물려 소년비행사건 중 검찰의 소년범 구속률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소년범 구속인원은 1998년 16,745명에서 2001년에는 7,186명까지 감소함으로써, 약 51.3% 감소율을 보였고, 구공판 비율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불기소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년부 송치율은 다소 증감이 있지만 15-6%선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한편 2001년 소년범죄중 학생범죄의 처리내역을 보면, 구공판 3.3%, 구약식 23.6%, 기소유예 46.6%, 소년부 송치 14.1% 등이다. 같은 기간의 소년범죄 처리내역과 비교할 때, 학생범죄의 구공판은 4.2%가 낮은 반면, 기소유예는 7.2% 높다.

<표 II-11> 소년범죄의 처리

연도 /구분	계	기소			불기소					소년부 송치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무 혐의	기소 유예	기소 중지	기타	
1997	163,813	60,301 (36.8)	23,030 (14.1)	37,271 (22.8)	78,596 (48.0)	3052 (1.9)	62,447 (38.1)	5,437 (3.3)	7,760 (4.7)	24,916 (15.2)
1998	163,583	57,490 (35.1)	22,229 (13.6)	35,261 (21.6)	83,166 (50.8)	3,407 (2.1)	64,063 (39.2)	5,543 (3.4)	10,153 (6.2)	22,927 (14.0)
1999	153,578	50,733 (33.0)	16,368 (10.6)	34,365 (22.4)	78,745 (51.3)	3,809 (2.5)	59,540 (38.8)	4,848 (3.1)	10,548 (6.9)	24,100 (15.7)
2000	153,085	45,922 (30.0)	13,312 (8.7)	32,610 (21.3)	81,625 (53.3)	3,850 (2.5)	63,122 (41.2)	3,786 (2.5)	10,867 (7.1)	25,538 (16.7)
2001	138,166	44,578 (32.3)	10,364 (7.5)	34,214 (24.8)	71,611 (51.8)	4,178 (3.0)	54,384 (39.4)	3,934 (2.8)	9,115 (6.6)	21,977 (15.9)
2002	124,076	37,192 (30.0)	8,450 (6.8)	28,742 (23.2)	67,110 (54.1)	4,421 (3.6)	48,155 (38.8)	4,896 (3.9)	9,638 (7.8)	19,774 (15.9)

자료 범죄백서 2002, 청소년백서 2002.

199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소년범죄자의 절대 수는 증가하였지만, 선도유예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1995년에 소년범죄자에서 선도유예율은 9.3%이지만, 점차 감소하여 2001년에는 4.6%만이 선도유예를 받았다.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죄명별 분포를 보면, 거의 절반정도를 절도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폭력범죄로 약 35-40%를 차지한다. 전체 소년범죄에서 폭력범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폭력범에 대한 선도 유예율은 절도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5년(1997-2001년)사이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소년범 중 절도비중은 48.3%에서 37.6%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폭력비중은 같은 기간에 39.5%에서 42.9%로 약간 상승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청소년백서, 2002: 528-529).

<표 II-1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범죄건수	124,244	146,986	164,182	161,277	150,821	151,176	138,030
기소유예	11,551	11,062	8,653	9,182	7,076	7,045	6,397
기소유예율	9.3	7.5	5.3	5.7	4.7	4.7	4.6

소년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한 현황은 <표 II-13>과 같다. 송치된 사건들은 대부분 보호자 등 감호위탁과 2호·3호처분(보호관찰)과 병행하여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보호국 관찰과의 통계에 따르면, 1994년에 21,452명이던 것이 1998년에는 35,840명이고, 2000년에는 29,282명으로서, 전체소년범의 20-25%, 그리고 보호사건의 83-85%를 전담하는 핵심적인 처우방법으로 정착하고 있다. 최근 소년 사범에 대한 처우환경이 변화되면서, 무엇보다도 보호관찰과 연관된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방안 등 비행의 선도

와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 전략개발이 요구된다.

<표 II-13> 소년보호사건 처리동향

연도	계	보 호 처 분								불 처분	심리 불개시	검찰 송치	기타
		소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1997	39,639	37,559 (94.8)	33,504 (84.5)	[12595]	[14017]	653 (1.7)	43 (0.1)	2,214 (5.6)	1,145 (2.9)	650 (1.6)	1,304 (3.3)	59 (0.1)	67 (0.2)
1998	39,300	37,081 (94.3)	33,139 (84.3)	[12719]	[13712]	851 (2.2)	10 (0.0)	1,884 (4.8)	1,197 (3.0)	897 (2.3)	1,250 (3.2)	26 (0.1)	46 (0.1)
1999	36,460	32,348 (88.7)	28,572 (78.4)	[10677]	[11234]	920 (2.5)	14 (0.0)	1,621 (4.5)	1,194 (3.3)	1,848 (5.1)	2,118 (5.8)	106 (0.3)	40 (0.1)
2000	35,342	32,270 (91.3)	28,572 (80.8)	[10783]	[10404]	896 (2.5)	10 (0.0)	1,502 (4.3)	1,290 (3.7)	1,322 (4.3)	1,512 (4.3)	93 (0.3)	145 (0.4)
2001	30,496	27,314 (89.6)	6,057	[8816]	[8975]	717	7	1,420	1,314	1,255	1,798	97	32

자료 : 청소년백서(2002.548)

주 []는 타처분과의 병합된 인원/2001년통계는 잠정치임(사법연감출간후 조정)

한편, 매년 약 8-9%의 소년들이 소년원에 수용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추세를 보면, 소년원 수용율은 다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용면에서 보면, 6호의 단기수용 처분비중은 줄고, 7호 처분율은 약간 늘었다. 한편 감호적 성격보다는 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4호 위탁처분율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처분 및 심리불개시 사례 역시 다소 증가하고 있어서 소년사건 처리과정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2) 사법적 처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① 처우의 개별화 및 과학화 필요성

소년범죄 처리실태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4만 3천여명의 범죄소년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이 약 3만 7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소년분류심사원과 같이 전문적인 진단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적기에 문제원인을 진단받는 범죄소년은 연간 7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소년부 분류심사원 위탁비율은 1998년 14,230명에서 2001년에는 7,410명으로 48% 감소했다.

<표 II-14> 소년보호사건 대상자 위탁현황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42,104	39,910	36,757	36,520	30,706
분류심사원	13,875 (33.0)	14,230 (35.7)	9,977 (27.1)	9,243 (25.3)	7,410 (24.1)
보호자위탁	28,229 (67.0)	25,680 (64.3)	18,034 (49.1)	25,906 (71.0)	21,884 (71.3)
기타복지시설	-	-	8,746 (23.8)	1,371 (3.7)	1,412 (4.6)

소년법에 대한 비행성 진단업무를 전담하는 분류심사원 위탁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보호자위탁 인원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최근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입원자중 56%가 3회 이상의 누범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처우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구속 상태로 소년부에 송치되는 대부분의 범죄소년은 특별한 진단이나

환경조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에게 다시 위탁되는 등 종전의 비행환경에 노출되어 재범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②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결여

적절한 개입절차와 프로그램이 없음으로 인하여, 재범률이 가속되는 경향이 있다. 소년범죄자 2명중 1명꼴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고, 이중 기소유예처분이 약 39.4%이다. 하지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재범률이 1997년 5.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13.3%라는 점은 소년법의 다루는 현행처우방식과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

<표 II-1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재범현황

연도	선도유예 인원	죄명별 재범자 수						
		계	재범률	절도	폭력범	강도	강간	기타
1997	8,653	430	5.0	175 (40.7)	157 (36.5)	9 (2.1)	9 (0.0)	89 (20.7)
1998	9,182	498	5.4	274 (55.0)	137 (27.5)	10 (2.0)	1 (0.2)	76 (15.3)
1999	7,076	682	9.6	273 (40.0)	267 (39.1)	19 (2.8)	2 (0.3)	121 (17.7)
2000	7,045	883	12.5	370 (41.9)	296 (33.5)	23 (2.6)	7 (0.8)	187 (21.2)
2001	6,397	852	13.3	295 (34.6)	326 (38.3)	18 (2.1)	5 (0.6)	208 (24.4)

자료 청소년백서(2002:532)

현행 소년사법제도 및 처우과정들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여러 절차와 단계들의 개입목표와 원칙들이 재

검토될 필요가 있고, 각 단계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연구·개발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향은 기본적으로 비행예방과 선도, 그리고 재범억제를 위한 대책과 사후관리라는 각 독립적 목표 속에서 처우의 차별화와 누적적 제재의 원칙을 결합하면서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재범 및 범죄경력화 과정에 대한 이해

1) 범죄경력화를 설명하는 두 가지 대립적 입장

청소년 범죄자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분석적 연구가 시도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Nagin and Paternoster, 1991; Nagin and Farrington, 1993). 지금까지 어떤 이유로 소년범죄자가 경력범죄자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다. 모집단이질론(population heterogeneity)과 상황의존론(state dependency)이다.⁶⁾

(1) 모집단이질론

모집단이질성을 강조하는 학자(Rowe et al, 1990; Gottfredson & Hirschi, 1990)들은 소년범죄자의 재범 및 범죄경력화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의 범죄성향이라고 본다. 이 입장의 주요 골자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력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러한 잠재력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대체로 불변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사람들의 기본성향은 어릴 때 부모훈육에 의해 형성되는데, 어렸을 때 부모훈육이 결핍되거나 잘못되면 범죄적 성향이 되고, 이러한 성향은

6) 여기에서는 이순래 (1994),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그 사람의 생애에 걸쳐 대체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소년기 범죄자 중에서 특히 범죄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재범을 하고 커서도 성인범죄자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 학자 중 모집단이질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자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이다. 이들은 [범죄의 일반이론(A general theory of crime)]이란 저서에서 자아통제력이 형성되는 배경이나 자아통제력의 정도와 범죄와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모집단이질론의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였다. Gottfredson & Hirschi(1990)은 범죄를 “적은 노력으로 눈앞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행동”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자아통제력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것이다. 자아통제력의 개인성향은 대체로 10-12세 이전의 어린 나이에 형성되는데, 자아통제력이 적절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 ① 아이의 행동을 늘 관찰하는 사람의 존재, ② 잘못된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③ 이를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Gottfredson과 Hirschi(1990)은 범죄자의 특성상 자아통제력이 낮기 때문에, 범죄의 전문화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습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범죄자의 발전추세는 특정범죄를 전문화하기 보다는 기회가 닿는대로 어떤 범죄자를 닮는 대로 저지르는 ‘일반화 경향’이 보다 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제시하는 범죄예방 및 대책은 비행조기예측 및 재범예측을 통한 소위 ‘선택적 범죄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와 적절한 재범예측(recidivism prediction)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여러 결정과 계획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⁷⁾ 범죄의 예측문제는 예방, 수사, 재판, 교정의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로서, 이에 관한 판단의 적정

7)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범죄자의 적절한 처분방법 결정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제도가 도입되어 일종의 ‘위험성 예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부는 모든 처분·처우활동의 성패를 좌우하고 결과적으로 형사정책 전체의 성패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2) 상황의존론

상황의존성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상황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로 말미암아 앞으로 범죄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견해이다(Nagin and Paternoster, 1991). 상황변화가 범죄발전의 원인이라는 인식은 사실상 범죄학이론의 주류적 관점이기도 하다.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이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및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그리고 낙인이론(labeling theory) 등 대부분 주요 범죄학 이론들은 상황의존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들 모두 개인의 범죄성향보다는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의 상황변화가 재범 및 범죄경력화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즉 상황의존론에 의하면,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①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학교에서 재적을 당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기 때문에, 또는 ② 다른 범죄자와의 교분기회가 생기면서 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범죄를 옹호하는 가치나 기술을 학습하거나, ③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낙인을 당한다든지 하는 상황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변화를 보다 심각하게 겪은 사람들이 경력범죄자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은 범죄이후 상황이 나쁜 방향으로 변할수록 초범자는 더욱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범죄발전추세에 대한 상황의존론의 견해는 다분히 전문화경향이다.

상황의존론의 대표하는 이론은 역시 낙인이론이다.⁸⁾ 여기에서 제시

8) Lemert(1972)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단 범죄를 저질러 국가기관에 의해 범

하는 범죄예방 및 재범대책은 “낙인”없는 통제이다. 이들은 소위 4D 정책을 제시해왔다. ①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웬만한 비행은 범죄로 규정하지 말고, ② 전환처우(diversion); 가급적 공식적 사법절차(체포, 기소, 처벌)에 두지 않고, 기소 전에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처우를 받게 함으로써 낙인을 줄이며, ③ 공정한 절차(due process); 계층간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고, ④ 탈시설화(demstitutionalization);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에 처우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사회내 처우를 통해서 사회재적응을 쉽게 하자는 것이다(김준호 외, 2003:131). 실제로 이러한 주장은 각국의 소년사법정책에 영향을 주었고, 소년보호이념과 더불어 복지모델과 결합하여 많은 처우개선을 이루어 내었다.

2) 주요 선행 연구결과

재범 및 범죄경력을 연구함에 있어서 접근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사실상 재범이나 범죄경력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경우, 형사정책적인 현실적 이유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력범죄자의 특성을 발견하는데 보다 초점이 있으며, 이에 덧붙여 재범억제, 범죄경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데 보다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 외국에서는 가석방 취소를 포함한 가석방(가퇴원)의 재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연구들로부터 도출된 주요한 재범관련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범죄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석방(가퇴원)의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

죄자로 낙인되면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향후 범죄에는 달라진 사회적 반응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과자라는 낙인이 붙고,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기대로 이들을 대함으로써 범죄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로 말미암아 점차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이차범죄자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 비행이나 범죄성의 발현이 이를수록, 가석방(가퇴원)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 범죄경력이 있는 범죄자는 초범보다 위협의 인식이 낮다.
- 가석방(가퇴원)중에 정규고용상태에 있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석방이 시작되는 시점에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은 평가를 보인다.
- 재산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폭력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보다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Sykes & Cullen, 1992 : 481).

국내의 연구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에서는 재범요인에 있어서 범죄경력관련변수의 영향보다는 생활수준이나 가족원의 수와 같은 사회적응 및 개인적 배경변수의 영향력이 큰 반면, 재범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출소형태와 전과횟수와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범죄유형별로 상이한 재범화 과정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강력범과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재산범 출소자의 재범을 고찰한 연구(KIC, 1995)에서는 재산범의 재범에 있어서 강력범죄의 결과와는 달리 '보상/손실'의 함수가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측면을 밝혔다. 이러한 측면은 재산범죄가 강력범죄에 비해서 매우 도구적이며,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나타난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인범죄자의 횡단적 자료를 중심으로 한 연구(류철원 외, 1995)에서는 절도와 폭력, 사기범죄에 있어서 전문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소년범의 재범예측을 다룬 연구(노성호, 1993)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⁹⁾의 재범율을 분석한 결과, ① 전체적으로 사회에 복귀한 직후의 청소년들이 오래된 청소년들보다 재범가능성이 높으며,

9) 이 연구는 1989년 7월부터 1990년 6월까지 서울 소년감별소에 입소한 소년들 54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들에 대한 [소년부] 및 이후 범죄경력조치를 통해, 재범율 및 재범예측표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복귀후 시간이 지날수록 재범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6세이하 청소년들의 경우 출소직후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집중적 지도가 요구된다고 제시한다. ② 재범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Cox의 비례적 위험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입소범죄명, 소년의 교육정도, 가출여부, 15세이전의 흡연여부, 범죄경력, 부의 훈육방법 등 6개 변인이었다. 즉 입소시 절도, 폭력행위, 강도를 저지른 소년들이 다른 범죄소년들에 비해서, 그리고 교육정도가 낮고, 가출 및 15세이전에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또한 범죄경력이 많고, 부의 훈육태도가 엄할수록 그렇지 않은 소년에 비해서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노성호, 1993:15). 재범가능성이 높은 소년특성이 밝혀진 만큼, 이들에 대한 출소이후의 집중적인 사후관리 및 유형에 적합한 재범방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다른 연구(이순래외, 1995)는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전이해가는 과정을 다루면서, 소년기에 가장 많이 저질렀던 범죄의 유형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이 두 가지 유형이 전체 소년범죄의 90%이상이라고 한다. 청소년의 경우 폭력범죄를 저지른 51.5%의 범죄자가 다음 범죄에서 다시 폭력범죄를 범하고 있고, 재산범죄의 54.2%가 다시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강도, 강간, 폭행, 협박, 절도, 사기, 약물, 교통, 기타 등 9개 범죄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폭행과 절도범죄에서 상당한 전문화 형태가 나타났다. 또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폭력범죄로 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6> 청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

소년기	전이	성인범죄자화의 경향
비범법	→	30%
1-2회 범법	→	56%
3-4회 범법	→	74%
5회이상 범법	→	80%이상

한편, 소년기 범행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인범죄자로 발전하는 정도가 높다. 평균적으로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화되는 정도는 67%에 이른다. 다시 말해, 현재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예방대책이 곧 장래의 범죄정책이라는 점에서, 재범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종합적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론적 및 경험과학적 논의를 토대로, 본 보고서의 실태조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① 범죄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실태와 현황은 어떠한가?
- ② 범죄경력에 미치는 낙인 효과는 어떠한가?
- ③ 범죄경력에 미치는 처벌 효과는 어떠한가?
- ④ 범죄발전에 미치는 사회유대(부모/학교/친구)의 효과는?
- ⑤ 범죄발전과 자아 및 법의식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⑥ 시설수용경험이 재범억제 효과를 지니는가?
- ⑦ 신분변화 및 상황변화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⑧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소년의 특성은 무엇인가?

Ⅲ.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2. 변인의 측정
3. 분석방법

공 백

III. 조사방법

본 연구는 범죄소년들의 재범양상과 재범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각급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본 연구의 실제 모집단은 현재 소년범죄자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들이다. 현재 수용기관으로는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가 대표적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소이며, 소년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대덕, 안양, 춘천, 충주, 제주, 안산 등 13개소, 소년교도소는 천안과 김천 등 2개소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을 포괄하여 조사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대상 기관별로 수용인원의 편차가 매우 크고, 조사일정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의 소년범죄자를 포괄하면서도 조사의 편의를 기하고자 가급적 수용인원의 규모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을 선정하고 수용인원 전원을 조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단 소년교도소 수용자의 경우에는 수용기간이 길어지면 회상의 문제 등으로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수용기간이 3년 이하인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선정된 기관과 조사대상자의 규모는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조사대상자의 기관별 분포

기 관	인 원	비 율
서 울 분 류 심 사 원	122	13.3
서 울 소 년 원	183	20.0
부 산 분 류 심 사 원	61	6.7
부 산 소 년 원	130	14.2
광 주 분 류 심 사 원	49	5.4
광 주 소 년 원	179	19.6
천 안 소 년 교 도 소	191	20.9
계	915	100.0

※ 응답부실로 제외된 설문지 미포함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는 집단면접방식을 취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과정을 거친 설문지를 통한 본 조사는 2003년 7월 14일부터 25일 사이에 연구진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통한 집단면접조사와는 별도로 범죄소년들의 재범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실을 얻기 위하여 소규모 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별도의 조사표를 이용하지 않고 집단면접 설문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대상자는 광주소년원에 수용중인 소년을 10명을 대상으로 2003년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하였다.

2. 변인의 측정

설문문항에 포함된 변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소년의 비행·범죄경력과 생활변화에 관련된 변인이며, 둘째, 시설에 수용되기 이전의 생활환경 관련 변인, 셋째, 현재 시설에서의 경험과 태

도 및 자아 관련 변인, 넷째, 향후 재범가능성 관련 변인, 그리고 끝으로 기타 소년의 일반적인 배경에 관련된 변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변인들의 구성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행·범죄경력과 생활변화 관련 변인

비행·범죄경력과 생활변화에 관련된 변인은 소년들의 문제행동 경험에 관한 문항, 범죄경력에 관한 문항, 최초범죄 이후의 변화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소년들의 문제행동 경험에 관한 문항에서는 첫째,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출입, 성인용 술집출입, 나이트클럽 출입’ 등 각종 유흥 관련 문제행동의 경험여부를 물어보았으며, 둘째, ‘패싸움, 폭력씨름가입, 폭행, 위협, 기물파손, 흥기소지’ 등 폭력관련 문제행동의 경험여부를 물어보았으며, 셋째, ‘물건훔치기, 훔친물건 사고팔기’ 등 재산관련 문제행동의 경험여부를, 넷째, ‘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 등 약물관련 문제행동을, 다섯째, ‘성추행, 성관계, 성매매’ 등 성관련 문제행동의 경험여부를 물어보았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동을 해 본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는 응답지와 이곳에 오기 전 1년동안 얼마나 자주했는지를 표시하는 응답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범죄경력에 관한 문항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된 연령’, ‘과거에 비행이나 범죄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횟수’, ‘최초범죄와 두 번째 범죄의 범죄명, 공범정도, 처분결과, 최초범죄와 두 번째 범죄의 시간적 간격(재범간격)’ ‘이곳에 오게 된 범죄명(최근범죄명), 최근범죄의 공범정도’ 등을 측정하였다.

최초범죄 이후의 변화에 관한 문항은 이번 사건이 최초 범죄가 아

년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으로 여기서는 ‘최초범죄 당시의 신분 및 범죄(처분)이후의 신분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가정, 친구, 학교생활의 변화정도’를 측정하였다. 가정에서의 변화정도는 ‘부모와의 대화정도’, ‘부모의 감독정도’, ‘부모와의 사이’, ‘부모의 관심정도’ 등의 변화를 5점 척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친구관계의 변화정도는 ‘이전에 사귀던 친구들과 멀어졌는가’, ‘나쁜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게 되었는가’, ‘이전에 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었는가’ 등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학교생활의 변화정도는 ‘그 이전에 비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 전에 비해서 담임선생님과 사이가 더 나빠졌는지’, ‘그 전에 비해서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었는지’, ‘학교에서 더욱더 문제아로 찍혔는지’, ‘다니던 학교에서 그 사건 때문에 처벌을 받았는지’, ‘그 전에 비해서 학교친구들이 나를 멀리 했는지’ 등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2) 과거 생활환경 관련 변인

시설에 수용되기 전의 생활환경에 관련된 질문은 가정환경, 학교생활, 비행친구관련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가정환경에 관련된 문항은 ‘가족의 월평균수입’에 ‘친부모의 결혼정도’ 등을 통하여 가정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기능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부모와 소년의 관계정도, 부모의 훈육정도에 대해서 측정하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은 ‘이야기를 자주하는 편인지’, ‘밖에 있을 때 누구랑 뭘하는지 잘 아시는 편인지’, ‘다정하게 지내는 편인지’ 등을 5점 척도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부모의 훈육정도에 대해서는 ‘같은 잘못을 해도 당신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는지’를 통하여 부모 각각에 대하여 역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소년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생활에 대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편이었는지’, ‘담임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는지’, ‘성적이 좋은 편에 속했는지’ 등을 역시 5점 척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끝으로 비행친구의 정도에 대해서는 ‘친했던 친구 중에 비행이나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된 친구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3) 현재 시설에서의 경험과 태도 및 자아관련 변인

현재 시설에서의 경험에 대해서는 1974년 미국에서 개발된 교정시설환경 척도(Correctional Institutions Environment Scale)를 이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본래 교정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형과 시행하려고 하는 교정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측정하기 위한 유형, 그리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처우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Rudolf H. Moos, 1987:1, 김지선, 2002a:107). 본 연구에서는 소년들의 교정시설에서의 경험과 처우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마지막 유형에 속하는 9개 척도 중에서 6개 척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6개 척도를 중심으로 각각 2개 문항씩 총 12개 문항을 통하여 현재 시설에서의 경험을 측정하였다. 6개 척도는 참여·몰입, 지지(support), 인간적인 관계, 자율성·책임성,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개인적인 문제의 지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참여·몰입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이곳의 소년들은 자신을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소년들은 여기서 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한다’,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직원(선생님)들이 소년들 한명 한명에게 관심을 가질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곳의 소년들은 서로 잘 돕는다’, 인간적인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소년들은

직원(선생님)들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속이는 편이다’, ‘소년들은 직원(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편이다’, 자율성·책임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직원(선생님)들은 소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책임지고 하게 한다’, ‘직원(선생님)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소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한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직원(선생님)들은 소년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문제(기술습득, 취업, 진도 등)에 관심을 가지라고 강조한다’, ‘직원(선생님)들은 소년들이 이곳을 나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지향성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소년들은 직원(선생님)에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거의 이야기 하지 않는다’, ‘소년들은 자신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 다른 소년에게 거의 이야기 하지 않는 편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소년들의 경험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시설에서의 경험은 6가지 척도 이외에도 시설에서의 ‘범죄학습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이곳에서 범죄수법을 많이 배웠는가’에 대한 질문(5점척도)을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소년들의 태도관련 문항은 법(범죄)과 사회에 대한 태도, 낙인인지, 처벌의 두려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법(범죄)과 사회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나보다는 국가, 사회,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여기까지 온 것은 뺑이 없고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잘못은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불잡히지만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등의 문항(5점척도)을 이용하였다.

낙인인지의 정도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생각이 든다’ 라는 문항(5점척도)을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처벌의

두려움의 정도는 ‘만약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에 잡혀 처벌을 받을까봐 두렵다’라는 문항(5점척도)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자아에 관련된 문항은 먼저 범죄적 자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범죄인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문항(5점척도)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소년들의 자아개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자아개념과 비행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구성된 피트(Fitt, 1969)의 자아개념척도를 한국사회에 맞게 재구성한 문항(심응철·최광현, 1986: 277)을 참고하여, 도덕적·성격적·사회적·능력적·가정적 자아 등 다섯 가지 하위차원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5점척도)을 구성하였다.

도덕적 자아를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올바른 사람이다’이며, 성격적 자아를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거친 성격이다’, ‘나는 우울한 성격이다’, 사회적 자아를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사교적이다’, ‘나는 인기가 있다’, 능력적 자아를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능력있는 사람이다’, 가정적 자아를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가정적으로 불행하다’, ‘나는 가정에서 화목한 사람이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4) 향후 재범가능성 관련 변인

현재 수용 중인 소년들이 시설에서 출소된 이후의 재범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범가능성과 유형별 재범가능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당신은 이곳에서 나간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다’, ‘그럴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그리지 않을 것 같다’,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재범가능성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변별력을 높이고 재범가능성 정도를 범죄유형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범죄유형별 재범가능성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유형으로 절도·강도·폭행·약물·강간 등 다섯 가지를 선택하였다. 각각의 범죄에 대한 재범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칠 가능성’,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돈이나 물건을 뺏을 가능성’, ‘누군가를 심하게 때릴 가능성’, ‘환각제나 본드, 니스, 코크 등 약물을 할 가능성’, ‘강제로 성관계를 할 가능성’ 등의 문항을 제시한 후 그 각각에 대하여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3. 분석방법

분석결과는 조사대상자의 특성, 비행·범죄경력의 양상, 범죄경력과 재범, 과거 생활환경과 재범, 현재 시설경험 및 태도와 재범, 종합분석의 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 개략적인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며, 조사대상자들의 범죄 및 문제행동의 실태 및 향후 재범가능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비행·범죄경력 양상에서는 소년들의 재범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그 유형의 변화 및 전문화경향 및 최초 범죄이후의 생활의 변화 등을 통하여 재범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이상의 기술적인 통계자료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인들과 재범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재범정도과 향후 재범가능성과 각종 독립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게 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첫째는 비행·범죄경력에 관련된 각종 변인과 재범정도 및 재범

가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며, 둘째는 가정 학교 친구 등 과거 생활환경과 재범정도 및 향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 셋째는 현재 시설경험, 태도 및 자아개념과 향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변인의 성격에 따라 두 집단 평균차검증(T-test) 또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끝으로 종합분석에서는 논의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통계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지금까지의 재범정도와 향후 재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공 백

IV. 조사결과

IV

1. 조사대상자의 특성
2. 비행·범죄경력과 생활의 변화
3. 비행·범죄경력 및 생활변화와 재범
4. 과거 생활환경과 재범
5. 현재 시설경험, 태도, 자아개념과 재범가능성
6. 재범요인에 대한 종합분석

공 백

IV.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먼저 연령의 경우, 소년들의 연령은 16-17세가 조사대상자의 35.0%로 가장 많고 다음이 18-19세로 34.4%였다. 20세 이상의 소년도 16.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로 수용된 이후에 20세를 넘긴 소년들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70% 정도가 16-19세 사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공식 통계상의 수치 72.3%(범죄백서, 200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현재 수용시설에 오기 전 소년들의 직업을 보면, 무직소년이 3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생이 25.2%, 음식점 유흥업소 종법원이 13.7%, '일정한 직업없이 닥치는 대로'가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가진 소년들의 경우에 다른 직종보다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소년들이 많았다는 점과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소년들이 상당수라는 점은 유흥업이라는 직업의 특성과 직업의 불안정성이라는 성격상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 원	비 율
연 령	14세 미만	13	1.4
	14-15세	112	12.2
	16-17세	320	35.0
	18-19세	315	34.4
	20세 이상	155	16.9
	계	915	100.0

구 분		인 원	비 율
직 업	학생	230	25.2
	공장직원	42	4.6
	가게점원	88	9.6
	음식점, 유흥업소 종업원	125	13.7
	일정한 직업없이 다치는대로	107	11.7
	직업 없었음	280	30.7
	학원생	12	1.3
	기타	29	3.2
	계	913	100.0
학 력	초등학교 졸업 못함	9	1.0
	초등학교 졸업	33	3.6
	중학교 졸업 못함	367	40.2
	중학교 졸업	98	10.7
	고등학교 졸업 못함	369	40.4
	고등학교 졸업이상	38	4.2
	계	914	100.0
결손여부	친부모 모두 있음	369	40.5
	친어머니만 있음	90	9.9
	친아버지만 있음	172	18.9
	양아버지와 친어머니	49	5.4
	친아버지와 양어머니	113	12.4
	친척 또는 양부모	27	3.0
	기타	90	9.9
	계	910	100.0
가족수입	70만원 이하	137	15.5
	71-100만원	152	17.2
	101-150만원	250	28.2
	151-200만원	123	13.9
	201-250만원	71	8.0
	251-300만원	76	8.6
	301만원 이상	77	8.7
	계	886	100.0

구 분		인 원	비 율
부 직업	무직	75	9.2
	행상, 단순노동	201	24.7
	회사원, 공무원	135	16.6
	사업(장사)	234	28.9
	운전기사	80	9.9
	농축어업	49	6.0
	기타	37	4.6
	계	811	100.0
모 직업	무직(전업주부)	191	26.0
	행상, 단순노동, 반숙련노동	37	5.0
	유흥음식점 종업원	75	10.2
	집에서 부업	124	16.8
	사업(장사)	178	24.2
	회사원, 공무원	76	10.3
	농축어업	10	1.4
	기타	45	6.1
	계	736	100.0
부 학력	초등학교 졸업 못함	55	6.5
	초등학교 졸업	102	12.1
	중학교 졸업 못함	70	8.3
	중학교 졸업	141	16.8
	고등학교 졸업 못함	59	7.0
	고등학교 졸업	330	39.2
	대학교 졸업 못함	18	2.1
	대학교 졸업 이상	66	7.8
	계	841	100.0
모 학력	초등학교 졸업 못함	42	5.5
	초등학교 졸업	74	9.7
	중학교 졸업 못함	50	6.6
	중학교 졸업	160	21.0
	고등학교 졸업 못함	45	5.9
	고등학교 졸업	319	41.9
	대학교 졸업 못함	17	2.2
	대학교 졸업 이상	55	7.2
	계	762	100.0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소년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그와 비슷하게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소년도 4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80%를 넘는 소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러한 응답은 시설에 수용되기 직전의 학력에 대한 질문의 결과이기 때문에 재학생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분류심사원에 수용중인 소년들 중 일부만이 다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비수용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고등학교 중퇴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들의 가정적 특성을 보면, 먼저 부모의 결혼여부의 경우, 친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가 40.5%로서, 결혼가정출신의 소년들이 60%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범죄자의 부모결혼정도에 대한 공식통계수치를 보면 약 78% 정도가 정상가정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범죄백서, 2001),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조사대상자에게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등 수용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상대적으로 정상가정출신 소년들에 대해서는 친부모의 생존이라는 특성상 소년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비수용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의 분포를 보면, 101-150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소년이 2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1-100만원 사이가 17.2%, 70만원 이하가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보면, 아버지의 직업은 사업이나 장사 등 개인자영업이 2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행상이나 단순노동이 24.7%였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26.0%, 개인자영업이 24.2%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39.2%, 중졸이 1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41.9%, 중졸이 21.0%로 나타났다.

<표 IV-2> 조사대상자의 비행·범죄관련 특성

구	분	인 원	비 율
최근 범죄명	절도	412	45.1
	사기	33	3.6
	강도	122	13.3
	강간	64	7.0
	폭행·상해	122	13.3
	살인(강도살인포함)	41	4.5
	약물관련범죄	11	1.2
	교통관련범죄	37	4.0
	보호관찰위반	42	4.6
	기타	30	3.3
	계	914	100.0
최근범죄 공범여부	공범 없음	301	33.0
	공범 1명	176	19.3
	공범 2-3명	254	27.8
	공범 4명이상	182	19.9
	계	913	100.0
최초 경찰체포연령	12세미만	32	3.5
	12-13세	251	27.6
	14-15세	363	39.9
	16-17세	218	24.0
	18세이상	46	5.1
	계	910	100.0
경찰체포 횟수 (재범횟수)	이번 사건 이외에 없음	118	12.9
	1번 더 있음	158	17.3
	2번 더 있음	192	21.0
	3번 더 있음	150	16.4
	4번 이상 더 있음	297	32.5
	계	915	100.0
비행친구유무	없음	258	28.3
	1명 있음	137	15.0
	2-3명 있음	281	30.8
	4명이상 있음	235	25.8
	계	911	100.0

2) 조사대상자의 비행·범죄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비행·범죄관련 특성을 보면 <표 IV-2>와 같다.

현재 시설에 수용되게 된 범죄명(최근 범죄명)을 보면, 절도가 45.1%로 가장 많고, 강도와 폭행·상해가 각각 13.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사기를 포함한 재산범죄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데, 사기의 경우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각종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의 경우에는 강도살인을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관련범죄는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내고 겁이 나서 도망가다가 붙잡혀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범죄의 공범여부를 보면, 공범이 없이 단독범행인 경우가 33.0%로 가장 많고, 2-3명의 공범이 있는 경우가 27.8%로 나타났다. 결국 범행을 할 경우에 단독범행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고, 공범이 있을 경우에는 1명보다는 2-3명이 함께 하는 소규모 집단범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최초로 경찰에 붙잡힌 연령을 보면, 14-15세의 비율이 39.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13세 비율이 27.6%였다. 결국 13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경찰에 처음 체포되는 비율이 30%를 넘고 있으며, 15세 이하의 나이에 경찰에 처음 체포되는 비율도 70%를 넘고 있는데 이는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경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경찰에 붙잡힌 횟수(이번 사건 제외)를 보면 4번 이상이 32.5%로 가장 많고, 2번 더 있다는 응답이 21.0%, 1번 더 있다는 응답이 1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이 처

음이라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재범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년들의 비행친구 정도를 살펴보면,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된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소년들은 28.3%인 반면에 2-3명 있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고, 4명이라는 응답도 25.8%나 되었다. 따라서 소년들의 70% 이상이 비행친구가 있으며, 결국 대다수의 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비행친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조사대상자의 문제행동 경험

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표 IV-3>과 같다.

다섯 가지 문제행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총 경험을 보면, 유흥관련 문제행동의 경험율이 9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산관련 문제행동이 84.6%, 폭력관련 문제행동이 76.6%로서 이러한 문제행동은 조사대상 소년들에게 있어서 아주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관련 문제행동은 49.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약물관련 문제행동은 18.9%로서 다른 문제행동에 비해서 보편적이지 않고 일부 소년들에게 국한된 문제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정도를 보면, 유흥관련 문제행동의 경우 일주일에 3-4번이 35.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1-2번이 21.7%로서 과반수 이상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유흥관련 문제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번도 없다는 응답은 8.0%에 불과했다. 폭력관련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6개월에 1-2번이 32.3%이고 한달에 1-2번이 20.3%였고, 한번도 없다는 응답은 32.0%였다. 재산관련 문제행동의 경우에도 6개월에 1-2번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달에 1-2번이 12.4%였다. 한번도 없다는 응답은 35.9%였다. 약물관련 문제행동

의 경우에는 90.2%가 지난 1년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6개월에 1-2번은 6.2%에 불과했다. 성관련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54.6%였으며 한달에 1-2번이 14.6%이고 6개월에 1-2번은 13.9%, 일주일에 1-2번은 11.3%로 나타났다

<표 IV-3> 조사대상자의 문제행동 경험

단위: 인원(%)

구 분	지금까지 총 경험			(수용되기 전) 지난 1년동안					
	없음	있음	계	없다	6개월 1-2번	한달에 1-2번	일주일 에 1-2번	일주일 에 3-4번	계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술집· 나이트클럽 출입	38 (4.2)	876 (95.8)	914 (100.0)	73 (8.0)	124 (13.6)	194 (21.3)	198 (21.7)	323 (35.4)	912 (100.0)
폐싸움, 폭력서클 가입, 폭행, 위협, 기물파손, 흉기소지	214 (23.4)	700 (76.6)	914 (100.0)	292 (32.0)	295 (32.3)	185 (20.3)	89 (9.7)	52 (5.7)	913 (100.0)
물건훔치기 훔찬물건사고팔기	140 (15.4)	772 (84.6)	912 (100.0)	326 (35.9)	354 (39.0)	113 (12.4)	62 (6.8)	53 (5.8)	908 (100.0)
분드, 가스, 환각제 마약	740 (81.1)	173 (18.9)	913 (100.0)	820 (90.2)	56 (6.2)	15 (1.7)	7 (0.8)	11 (1.2)	909 (100.0)
성추행, 성관계, 성매매	459 (50.5)	450 (49.5)	909 (100.0)	497 (54.6)	127 (13.9)	133 (14.6)	103 (11.3)	51 (5.6)	911 (100.0)

따라서 성관련 문제행동은 재산관련 문제행동이나 폭력관련 문제행동에 비해서 비경험자의 비율은 높지만, 경험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자주 그러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조사대상자의 향후 재범가능성

현재 시설에서 사회로 복귀한 후의 재범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소년들의 응답결과는 <표 IV-4>와 같다.

먼저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시된 ‘이곳에서 나간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 소년의 1.9%가 ‘확실히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럴 것 같다’고 응답한 소년은 5.5%,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소년은 14.5%,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한 소년은 28.1%,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소년은 49.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재범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응답한 소년은 7.6%, 낮은 쪽으로 응답한 소년은 77.8%,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소년은 14.5%로 볼 수 있다.

출소 후에 재범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범죄유형별로 질문한 결과를 보면, 절도의 경우에는 ‘매우 높다’고 응답한 소년이 1.1%, ‘높은 편이다’고 응답한 소년이 2.5%, ‘보통이다’고 응답한 소년이 9.7%, ‘낮은 편이다’고 응답한 소년은 30.6%, ‘매우 낮다’고 응답한 소년이 56.1%였다. 따라서 절도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는 소년이 3.6%, 중간정도인 소년이 9.7%, 낮은 편에 속하는 소년이 8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도의 경우에는 ‘매우 높다’고 응답한 소년이 0.8%, ‘높은 편이다’고 응답한 소년이 18%, ‘보통이다’고 응답한 소년이 10.4%, ‘낮은 편이다’고 응답한 소년은 27.6%, ‘매우 낮다’고 응답한 소년이 59.5%였다. 따라서 강도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는 소년이 2.6%, 중간정도인 소년이 10.4%, 낮은 편에 속하는 소년이 8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조사대상자의 향후 재범가능성에 대한 태도

구		분	인원	비율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확실히 그렇다	17	1.9
		그럴 것 같다	52	5.7
		잘 모르겠다	132	14.5
		그러지 않을 것 같다	257	28.1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455	49.8
		계	913	100.0
유형별 재범 가능성	절도	매우 높다	10	1.1
		높은 편이다	23	2.5
		보통이다	89	9.7
		낮은 편이다	279	30.6
		매우 낮다	512	56.1
		계	913	100.0
	강도	매우 높다	7	0.8
		높은 편이다	16	1.8
		보통이다	95	10.4
		낮은 편이다	251	27.6
		매우 낮다	542	59.5
		계	911	100.0
	폭행	매우 높다	31	3.4
		높은 편이다	63	6.9
		보통이다	225	24.6
		낮은 편이다	209	22.9
		매우 낮다	385	42.2
		계	913	100.0
	약물	매우 높다	2	0.2
		높은 편이다	6	0.7
		보통이다	13	1.4
		낮은 편이다	64	7.0
		매우 낮다	825	90.7
		계	910	100.0
	강간	매우 높다	10	1.1
		높은 편이다	9	1.0
		보통이다	61	6.7
		낮은 편이다	111	12.2
		매우 낮다	720	79.0
		계	911	100.0

폭행의 경우에는 ‘매우 높다’고 응답한 소년이 3.4%, ‘높은 편이다’고 응답한 소년이 6.9%, ‘보통이다’고 응답한 소년이 24.6%, ‘낮은 편이다’고 응답한 소년은 22.9%, ‘매우 낮다’고 응답한 소년이 42.2%였다. 따라서 폭행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는 소년이 10.3%, 중간정도인 소년이 24.6%, 낮은 편에 속하는 소년이 6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매우 높다’고 응답한 소년이 0.2%, ‘높은 편이다’고 응답한 소년이 0.7%, ‘보통이다’고 응답한 소년이 1.4%, ‘낮은 편이다’고 응답한 소년은 7.0%, ‘매우 낮다’고 응답한 소년이 90.7%였다. 따라서 약물관련 범죄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는 소년이 0.9%, 중간정도인 소년이 1.4%, 낮은 편에 속하는 소년이 9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에는 ‘매우 높다’고 응답한 소년이 1.1%, ‘높은 편이다’고 응답한 소년이 1.0%, ‘보통이다’고 응답한 소년이 6.7%, ‘낮은 편이다’고 응답한 소년은 12.2%, ‘매우 낮다’고 응답한 소년이 79.0%였다. 따라서 강간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는 소년이 2.1%, 중간정도인 소년이 6.7%, 낮은 편에 속하는 소년이 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응답결과를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출소 이후에 소년들의 재범가능성이 가장 높은 범죄는 폭행이며, 가장 낮은 범죄는 약물관련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행·범죄경력과 생활의 변화

비행·범죄경력과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는 범죄발전의 양상과 최초 범죄 이후의 생활의 변화로 구분하여 범죄발전의 양상에서는 범행단계별로 범죄유형의 구성에 어떤 변화의 양태를 보이며, 소년들의 범행의 전문화 경향에 대해서 살피고자 하며, 범행단계에 따라서 공범정도의 변화양상, 첫 번째 범죄와 두 번째 범죄의 시간적 간격, 첫 번째 범

죄와 두 번째 범죄의 처분비교 등의 내용을 다룬다. 한편 최초 범죄 이후의 생활의 변화에서는 최초 범죄시의 신분상태에 어떠했으며 범죄(처분)이후에 신분의 변화정도 및 부모, 친구, 학교관련 변화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1) 범죄발전의 양상

(1) 범행단계별 범죄유형의 구성변화

조사대상자 915명 중에서 최근 범죄를 포함하여 최소 3번 이상 범죄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 소년 633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범죄, 두 번째 범죄 그리고 최근 범죄의 종류를 중심으로 그 분포를 비교하여 소년들의 범행단계에 따라서 범죄유형의 구성분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IV-5>를 보면, 첫 번째 범행의 분포는 절도와 사기를 포함하는 재산범죄의 비율은 62.9%에서 두 번째 범행과 최근 범행으로 가면 그 비율은 55.3%와 50.7%로 줄어든다. 반면에 강도 강간 폭행 등을 포함하는 폭력범죄의 비율은 첫 번째 범행시 28%였으나 두 번째 범행과 최근 범행으로 가면 32.7%와 34.8%로 그 구성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약물관련 범죄 교통관련 범죄 등 기타범죄의 경우에도 폭력범죄의 구성비율과 마찬가지로 범행이 거듭될수록 그 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소년들의 범행이 거듭될수록 재산범죄의 비중은 줄어들고 폭력범죄나 기타범죄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폭력화 경향은 폭력범죄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폭행·상해의 경우에는 21.2% → 25.6% → 14.2%로 두 번째 범행 이후에는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강도의 경우에는 4.4% → 4.5% → 12.3%로 범행이 거듭될수록 그 비중이 늘고 있으며, 강간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 범행단계별 범죄유형의 구성변화

단위: 인원(%)

유형	범 죄 명	제1범행	제2범행	최근범행
재산범죄	절도	396 (62.6)	347 (54.8)	304 (48.0)
재산범죄	사기	2 (0.3)	3 (0.5)	17 (2.7)
	소계	398 (62.9)	350 (55.3)	321 (50.7)
폭력범죄	강도	28 (4.4)	36 (5.7)	78 (12.3)
	강간	15 (2.4)	8 (1.3)	33 (5.2)
	폭행·상해	134 (21.2)	162 (25.6)	90 (14.2)
	살인	-	1 (0.2)	19 (3.0)
	소계	177 (28.0)	207 (32.7)	220 (34.8)
기타범죄	약물	13 (2.1)	16 (2.5)	11 (1.7)
	교통	34 (5.4)	43 (6.8)	27 (4.3)
	보호관찰위반	-	4 (0.6)	31 (4.9)
	기타	11 (1.7)	13 (2.1)	23 (3.6)
	소계	58 (9.2)	76 (12.0)	92 (14.5)
총 계		633 (100.0)	633 (100.0)	633 (100.0)

결국 소년들의 범행이 거듭될수록 재산범죄에서 폭력범죄로 옮겨가고, 폭력범죄에서도 보다 흉폭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범죄유형의 발전양상

앞서 범행단계별 범죄유형의 구성변화는 소년들의 전체적인 범죄발전양상을 의미한다면, 이제 살펴볼 범죄유형의 발전양상은 개별 소년들의 범죄발전양상이 과연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는 전문화경향(specialization criminal career)을 의미한다.

<표 IV-6>을 보면, 첫 번째 범행에서 재산범죄를 저지른 소년 398명 중에서 두 번째 범행과 최근범행에서 모두 재산범죄를 저지른 소년(재산범죄→재산범죄→재산범죄)이 19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 재산범죄를 저지른 소년들 중 48.5%에 해당하며, 전체 소년 633명 중에서는 29.1%에 해당된다.

한편 첫 번째 범행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소년 177명 중에서 두 번째 범죄와 최근범행에서 모두 폭력범죄를 저지른 소년(폭력범죄→폭력범죄→폭력범죄)은 57명이었다. 이는 최초 폭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 중에서 32.2%이며 전체 소년 633명 중에서는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범죄유형의 발전양상

제1범행 →	제2범행 → 최근범행	인 원	비 율	
			비율1	비율2
재산범죄 →	재산범죄 → 재산범죄	193	48.5	29.1
	재산범죄 → 폭력범죄	55	13.8	8.3
	재산범죄 → 기타범죄	23	5.8	3.5
	폭력범죄 → 재산범죄	25	6.3	3.8
	폭력범죄 → 폭력범죄	49	12.3	7.4
	폭력범죄 → 기타범죄	13	3.3	2.0
	기타범죄 → 재산범죄	18	4.5	2.7
	기타범죄 → 폭력범죄	14	3.5	2.1
	기타범죄 → 기타범죄	8	2.0	1.2
	소계	398	100.0	60.0
폭력범죄 →	재산범죄 → 재산범죄	30	16.9	4.5
	재산범죄 → 폭력범죄	17	9.6	2.6
	재산범죄 → 기타범죄	10	5.6	1.5
	폭력범죄 → 재산범죄	27	15.3	4.1
	폭력범죄 → 폭력범죄	57	32.2	8.6
	폭력범죄 → 기타범죄	20	11.3	3.0
	기타범죄 → 재산범죄	7	4.0	1.1
	기타범죄 → 폭력범죄	7	4.0	1.1
	기타범죄 → 기타범죄	2	1.1	0.3
	소계	177	100.0	26.7
기타범죄 →	재산범죄 → 재산범죄	11	19.0	1.7
	재산범죄 → 폭력범죄	6	10.3	0.9
	재산범죄 → 기타범죄	5	8.6	0.8
	폭력범죄 → 재산범죄	2	3.4	0.3
	폭력범죄 → 폭력범죄	11	19.0	1.7
	폭력범죄 → 기타범죄	3	5.2	0.5
	기타범죄 → 재산범죄	8	13.8	1.2
	기타범죄 → 폭력범죄	4	6.9	0.6
	기타범죄 → 기타범죄	8	13.8	1.2
	소계	58	100.0	8.7

비율1 : 제1범행별 인원 중 구성비율

비율2 : 전체인원(633명) 중 구성비율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폭력범죄보다는 재산범죄의 전문화 경향(48.5%:32.2%)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체 633명의 소년들 중에서 재산범죄(29.1%)나 폭력범죄(8.6%)로 전문화 경향을 보이는 소년은 37.5%로서 소년의 1/3이상 범죄경력의 전문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범행단계별 공범정도의 변화

소년들의 범행단계에 따라서 공범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IV-7>과 같다.

<표 IV-7> 범행단계별 공범정도의 변화

단위 인원(%)			
공범정도	제1범행	제2범행	최근범행
단독범행	138 (22.0)	151 (24.0)	209 (33.3)
공범1명	146 (23.2)	154 (24.5)	116 (18.5)
공범2명이상	344 (54.8)	323 (51.4)	303 (48.2)
계	628 (100.0)	628 (100.0)	628 (100.0)

범행단계별로 단독범행의 비율을 보면 최초 범행시에는 22.0%였으나, 두 번째 범행시에는 24.0%. 최근 범행에서는 33.3%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범이 2명이상인 경우는 첫 번째 범행에서는 54.8%, 두 번째 범행시에는 51.4%, 최근 범행에서는 48.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결국 소년들은 범행이 거듭될수록 단독범행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범행의 시간적 간격

첫 번째 범행과 두 번째 범행의 시간적 간격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IV-8>과 같다.

<표 IV-8> 제1범행과 제2범행의 시간적 간격(재범간격)

구 분	인 원	비 율
1개월 이내	50	7.9
1개월 - 3개월	101	16.0
3개월 - 6개월	158	25.0
6개월 - 1년	152	24.0
1년 - 1년 6개월	105	16.6
1년 6개월 - 2년	30	4.7
2년 - 2년 6개월	20	3.2
2년 6개월 이상	17	2.7
계	633	100.0

※ 시설수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

응답소년들 중 25.0%가 첫 번째 범행 이후 3개월에서 6개월이내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24%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가 16.6%, 1개월에서 3개월 이내가 16.0%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 번째 범행이후 6개월 이내에 재범을 한 경우가 48.9%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으며, 1년 이내에 재범을 한 경우는 72.9%에 달했다

(5) 첫 번째 범죄와 두 번째 범죄의 처분 비교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처분결과와 두 번째 범죄에 대한 처분결과를 보면 <표 IV-9>와 같다.

<표 IV-9> 첫 번째 범죄와 두 번째 범죄에 대한 처분비교

단위 인원(%)

처 분	제1범죄에 대한 처분	제2범죄에 대한 처분
경찰훈방	219(34.9)	118(18.8)
(선도조건부)기소유예	65(10.4)	47(7.5)
벌 금	7(1.1)	22(3.5)
집행유예	6(1.0)	13(2.1)
1호 처분	64(10.2)	23(3.7)
2호처분, 3호처분	212(33.8)	247(39.3)
4호 처분	31(4.9)	58(9.2)
단기소년원 송치	17(2.7)	57(9.1)
장기소년원 송치	5(0.8)	36(5.7)
교도소 실행집행	-	4(0.6)
기 타	2(0.3)	3(0.5)
계	628(100.0)	628(100.0)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처분결과를 보면 경찰단계에서 훈방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호관찰처분(2·3호처분)이 33.8%, 기소유예 10.4%, 보호자위탁처분(1호처분) 10.2%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두 번째 범죄에 대한 처분결과는 보호관찰처분이 3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찰훈방이 18.8%, 민간보호시설수용처분(4호처분) 9.2%, 단기소년원송치 9.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번째 범

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경찰훈방이나 보호자위탁처분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수용처분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최초 범죄 이후의 생활의 변화

(1) 신분의 변화

최초 범죄 당시의 소년들의 신분과 범죄(처분) 이후 신분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IV-10>, <표 IV-11>과 같다.

첫 번째 범죄 당시의 신분(<표 IV-10>)은 학생이 70.4%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직소년이 21.2%였고, 직업이 있었던 소년은 8.4%로 소수에 불과했다.

<표 IV-10> 첫 번째 범죄 당시 신분

구 분	인 원	비 율
학 생	560	70.4
유 직	67	8.4
무 직	169	21.2
계	796	100.0

범죄(처분)이후 그 신분의 변화(<표 IV-11>)를 살펴보면, 먼저 학생의 경우에는 68.3%가 이전과 다름없이 같은 학교에 다녔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든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16.1%는 학교를 그만두고 하는 일 없이 지내게 되었으며, 전학을 가는 경우가 6.8%, 학업을 포기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로 인한 신분의 변화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업이 있는 소년이나 없는 소년이나 마찬가지이다. 직업이 있었던 소년의 경우에도

52.2%가 계속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였다는 소년이 28.4%였으며, 무직상태로 전락하는 경우도 14.9%나 되었다.

무직소년의 경우에는 계속 직업없이 지낸 경우가 52.1%였으며, 새로 일을 시작한 경우가 33.7%, 새로 학교에 진학한 경우가 14.2%였다.

<표 IV-11> 첫 번째 범죄 이후 신분의 변화

구	분	인 원	비 율
학생의 변화	같은 학교를 다님	382	68.3
	다른 학교로 전학	38	6.8
	학교를 그만두고 무직	90	16.1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함	49	8.8
	소 계	559	100.0
유직자의 변화	같은 곳에서 계속 일을 함	35	52.2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됨	19	28.4
	일을 그만두고 무직상태	10	14.9
	일을 그만두고 학교 진학	3	4.5
	소 계	67	100.0
무직자의 변화	계속 직업 없이 지냄	88	52.1
	새로 일을 시작	57	33.7
	새로 학교에 진학	24	14.2
	소 계	169	100.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응답소년 795명 중에서 신분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소년의 비율은 36.5%로서 상당수의 소년들이 첫 번째 범죄로 인하여 급격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모와의 관계변화

첫 번째 범죄(처분) 이후에 부모와의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표 IV-12>와 같다.

<표 IV-12> 부모와의 관계의 변화

단위 인원(%)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부모님과 대화 가 줄었다	23 (3.0)	92 (11.8)	239 (30.8)	279 (35.9)	144 (18.5)	777 (100.0)
부모님은 나를 더 철저하게 감독했다	42 (5.4)	209 (26.9)	268 (34.5)	190 (24.5)	68 (8.8)	777 (100.0)
부모님과 내 사이는 더 멀어졌다	24 (3.1)	67 (8.6)	177 (22.8)	305 (39.3)	203 (26.2)	776 (100.0)
부모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다	141 (18.1)	353 (45.4)	190 (24.5)	63 (8.1)	30 (3.9)	777 (100.0)

‘부모와의 대화 가 줄었다’는 응답이 14.8%,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63.4%였으며, ‘부모님이 나를 더 철저하게 감독했다’는 응답이 32.3%,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33.3%, ‘부모님과 사이가 더 멀어졌다’는 응답이 11.7%,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65.5%, ‘부모님이 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응답이 63.5%,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12.0%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일단 소년들이 최초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소년의 부모들은 일단 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보다 강하게 통제활동을 하는 쪽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친구관계의 변화

첫 번째 범죄(처분) 이후에 친구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표 IV-13>과 같다.

<표 IV-13> 친구관계의 변화

단위: 인원(%)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그 이전에 사귀던 친구들과 멀어졌다	31 (3.9)	95 (12.1)	172 (21.9)	300 (38.1)	189 (24.0)	787 (100.0)
나쁜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게 되었다	40 (5.1)	127 (16.2)	180 (22.9)	258 (32.8)	181 (23.0)	786 (100.0)
이전에 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었다	77 (9.8)	214 (27.2)	284 (36.0)	144 (18.3)	69 (8.8)	788 (100.0)

‘그 이전에 사귀던 친구들과 멀어졌다’는 응답이 16.0%,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62.1%였으며, ‘나쁜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게 되었다’는 응답이 21.3%,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55.8%, ‘이전에 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37.0%,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27.1%였다 따라서 첫 번째 범죄이후에 친구관계의 변화에서는 사귀던 친구들과 멀어지거나 나쁜 친구를 더 많이 사귀는 쪽으로 변화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쪽으로의 변화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친구와 멀어지거나 새로운 나쁜 친구를 사귀는 쪽으로의 변화보다는 기존 친구관계의 강화쪽으로의 변화의 폭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학교생활의 변화

첫 번째 범죄 당시에 학생이었던 소년들이 학교에서 겪게 되는 학교생활의 변화정도를 살펴보면 <표 IV-14>와 같다. 문항별로 그 변화의 정도를 살펴보면, ‘그 전에 비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응답이 15.0%,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47.3%였으며, ‘그 전에 비해서 담임선생님과 사이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15.3%,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51.6%, ‘그 전에 비해서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응답이 24.0%,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50.6%, ‘학교에서 더욱더 문제아로 찍혔다’는 응답이 40.4%,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33.0%, ‘다니던 학교에서 그 사건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는 응답이 23.5%, ‘그렇지 않았

<표 IV-14> 학교생활의 변화

단위: 인원(%)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그 전에 비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8 (2.1)	49 (12.9)	143 (37.7)	142 (37.5)	37 (9.8)	379 (100.0)
그 전에 비해서 담임선생님과 사이가 더 나빠졌다	16 (4.2)	42 (11.1)	126 (33.2)	149 (39.2)	47 (12.4)	380 (100.0)
그 전에 비해서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18 (4.7)	73 (19.3)	96 (25.3)	132 (34.8)	60 (15.8)	379 (100.0)
학교에서 더욱더 문제아로 찍혔다	37 (9.8)	116 (30.6)	101 (26.6)	91 (24.0)	34 (9.0)	379 (100.0)
다니던 학교에서 그 사건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	14 (3.7)	75 (19.8)	42 (11.1)	163 (43.0)	85 (22.4)	379 (100.0)
그 전에 비해서 학교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였다	9 (2.4)	29 (7.7)	65 (17.2)	154 (40.6)	122 (32.2)	379 (100.0)

다'는 응답이 65.4%, '그 전에 비해서 학교친구들이 나를 멀리하였다'는 응답이 10.1%,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이 72.8%였다. 소년들이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을 당하게 되고, 다음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친구관계의 변화는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비행·범죄경력 및 생활변화와 재범

이제 소년의 비행·범죄경력 및 첫 번째 범죄이후의 생활의 변화에 관련된 여러 요인이 지금까지의 재범정도(재범횟수와 재범간격)와 향후 재범가능성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비행·범죄경력과 재범과의 관계에서는 소년의 문제행동의 경험여부, 최초 경찰체포연령, 최초 범죄유형, 최초 범죄에 대한 처분 등의 요인과 재범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생활의 변화와 재범과의 관계에서는 신분의 변화, 부모와의 관계변화, 친구관계변화, 학교생활변화 등의 요인과 재범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비행·범죄경력과 재범

(1) 문제행동의 경험과 재범

소년들의 문제행동 경험과 재범과의 관계는 <표 IV-15>와 <표 IV-16>과 같다.

<표 IV-15> 문제행동 경험과 재범정도

구	분	재 범 정 도	
		재범 횟수	재범 간격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술집· 나이트클럽 출입	없음	2.24	3.36
	있음	3.43	3.69
	T값	-5.16***	-0.73
패싸움, 폭력서클 가입, 폭행, 위협, 기물파손, 흉기소지	없음	2.98	3.68
	있음	3.50	3.68
	T값	-4.78***	0.98
물건훔치기 훔친물건사고팔기	없음	2.61	4.00
	있음	3.52	3.65
	T값	-6.71***	1.52
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	없음	3.25	3.66
	있음	3.95	3.77
	T값	-6.31***	-0.70
성추행, 성관계, 성매매	없음	3.23	3.72
	있음	3.54	3.65
	T값	-3.33**	0.52

* P<0.05, ** P<0.01, *** P<0.001

먼저 지금까지 재범정도와의 관계를 보면, 소년의 각종 문제행동의 경험여부는 소년들의 재범횟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첫 번째 범죄와 두 번째 범죄와의 간격(재범간격)과는 어떠한 관계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소년들의 각종 문제행동 여부는 소년의 이후 재범횟수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6> 문제행동 경험과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강도	폭행	약물	강간
가출, 음주, 흡연, 비디오방·술집· 나이트클럽 출입	없음	1.61	1.76	1.26	1.37	1.24	1.16
	있음	1.83	1.61	1.58	2.10	1.12	1.34
	T값	-1.33	0.93	-2.94**	-6.64***	1.10	-2.13*
패싸움, 폭력서클 가입, 폭행, 위협, 기물파손, 흉기소지	없음	1.68	1.76	1.30	1.48	1.14	1.21
	있음	1.86	1.58	1.65	2.24	1.12	1.37
	T값	-2.25*	2.53*	-6.83***	-10.60***	0.49	-3.31**
물건훔치기 훔친물건사고팔기	없음	1.68	1.24	1.35	1.84	1.09	1.22
	있음	1.84	1.69	1.61	2.11	1.13	1.35
	T값	-1.78	-7.94***	-3.78***	-2.58**	-0.99	-2.06*
본드, 가스, 환각제 마약	없음	1.75	1.61	1.52	2.00	1.07	1.29
	있음	2.12	1.66	1.76	2.34	1.36	1.49
	T값	-3.92***	-0.67	-3.02**	-3.31**	-4.57***	-2.68**
성추행, 성관계, 성매매	없음	1.72	1.67	1.45	1.83	1.10	1.17
	있음	1.91	1.56	1.69	2.31	1.16	1.49
	T값	-2.81**	1.94	-4.57***	-6.62***	-1.98*	-6.76***

* P<0.05, ** P<0.01, *** P<0.001

다음으로 향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앞서 지금까지의 재범횟수와는 밀접한 관계를 보인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폭력관련 문제행동과 약물관련문제행동 성관련문제행동은 전반적인 재범가능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반면에, 유혹관련 문제행동과 재산관련 문제행동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형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혹관련 문제행동과 재산관련 문제행동 역시 상당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년들의 과거 문제행동 경험은 지금까지의 재범횟수는 물론 향후 재범가능성과도 밀접한 관계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독립변인으로 선정된 문제행동의 상당수가 사실상 범죄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범죄행동에 속하지 않는 문제행동의 경우에도 재범과 상당한 관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같은 범죄행동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만은 없다. 결국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의 경험이 심각한 범죄로 발전한다는 것을 일정부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최초 경찰체포 연령과 재범

최초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된 연령과 재범과의 관계는 <표 IV-17>와 <표 IV-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재범정도와의 관계를 보면, 14세미만의 나이에 체포된少年들의 재범횟수는 4.17이고, 14-15세가 3.45, 16세 이상이 2.47로서 어린 나이에 경찰에 체포될수록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사후검증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세 집단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매우 강력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범간격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7> 최초 경찰체포 연령과 재범정도

구 분	최초 경찰체포 연령			F값	사후검증
	14세 미만	14-15세	16세 이상		
재범횟수	4.17	3.45	2.47	127.78***	1, 2, 3
재범간격	3.64	3.74	3.67	0.21	

* $P<0.05$, ** $P<0.01$, *** $P<0.001$

<표 IV-18> 최초 경찰체포 연령과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최초 경찰체포 연령			F값	사후검증
		14세 미만	14 - 15세	16세 이상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2.03	1.82	1.58	14.54***	1, 2, 3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81	1.60	1.44	14.19***	1, 2, 3
	강도	1.71	1.57	1.42	9.40***	1, 2, 3
	폭행	2.21	2.13	1.82	9.51***	12, 3
	약물	1.14	1.12	1.13	0.12	
	강간	1.38	1.33	1.28	1.26	

* P<0.05, ** P<0.01, *** P<0.001

한편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의 차이를 보면, 14세미만이 2.03, 14-15세가 1.82, 16세이상이 1.58로서 재범횟수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경찰에 체포된 소년일수록 향후 재범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절도 강도 폭행의 가능성에서도 나타났으며, 약물과 강간의 가능성은 차이가 없다.

(3) 최초 범죄유형과 재범

소년들이 최초에 저지른 범죄유형과 재범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IV-19>, <표 IV-20>과 같다.

<표 IV-19> 최초 범죄유형과 재범정도

구 분	최초 범죄유형			F값	사후검증
	재산범죄	폭력범죄	기타범죄		
재범횟수	3.75	3.67	3.86	0.86	
재범간격	3.70	3.63	3.71	0.11	

* P<0.05, ** P<0.01, *** P<0.001

<표 IV-20> 최초 범죄유형과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최초 범죄유형			F값	사후검증
		재산범죄	폭력범죄	기타범죄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87	1.86	1.90	0.05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76	1.46	1.52	10.47***	1, 23
	강도	1.58	1.70	1.53	1.95	
	폭행	2.02	2.35	2.11	6.93**	13, 2
	약물	1.13	1.12	1.17	0.33	
	강간	1.30	1.38	1.51	3.01*	12, 23

* P<0.05, ** P<0.01, *** P<0.001

먼저 재범횟수를 보면, 최초 재산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의 이후 재범횟수는 3.75, 폭력범죄의 경우는 3.67, 기타범죄의 경우는 3.86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범간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최초의 범죄유형이 현재까지의 재범정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인다. 최초의 범죄유형이 전반적인 재범가능성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절도와 폭행, 강간의 가능성과는 일정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절도와 폭행의 경우에는 비교적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최초 재산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의 경우에는 절도의 가능성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최초 폭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의 경우에는 역시 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한 소년들의 범죄경력에 있어서 나타난 전문화 경향과 일정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후검증결과를 통해서 일정부분 뒷받침되는데, 향후 절도의 가능성에 있어서 최초 폭력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기

타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비슷하여 차이가 없으나, 그 두 집단과 최초 재산범죄를 저지른 집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향후 폭력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최초 재산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기타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비슷하여 차이가 없고, 그 두 집단과 최초 폭력범죄를 저지른 집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록 최초 범죄유형이 지금까지 소년들의 재범 정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전문화 경향과 맞물려 향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최초 범죄에 대한 처분과 재범

최초 범죄에 대한 처분결과와 재범과의 관계는 <표 IV-21>과 <표 IV-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경찰단계에서 석방 소년들의 이후 재범횟수는 3.92이며, 비수용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3.67, 수용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3.50으로 최초 범죄에 대한 처분결과에 따라서 이후 재범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경찰단계에서 석방과 같이 가벼운 처분을 받았던 소년들의 재범횟수가 수용처분과 같이 상대적으로 엄한 처분을 받은 소년들에 비해서 재범횟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IV-21> 최초 범죄에 대한 처분경험과 재범정도

구 분	최초 범죄에 대한 처분			F값	사후검증
	경찰단계석방	비수용처분	수용처분		
재범횟수	3.92	3.67	3.50	5.51**	12, 23
재범간격	3.54	3.82	3.89	4.77**	12, 23

* $P < 0.05$, ** $P < 0.01$, *** $P < 0.001$

비수용처분 : 보호관찰,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1호처분 등
수용처분 : 4호처분, 단기소년원, 장기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최초 범죄에 대하여 가벼운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이후에 더 많은 재범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최초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분만이 반드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다.

한편 재범횟수와의 관계를 보면, 경찰단계에서 석방된 소년들은 3.54이며, 비수용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3.82, 수용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3.89로서 경찰단계에서 석방된 소년들이 수용처분을 받은 소년들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재범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용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경우 수용기간을 제외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횟수와 마찬가지로 재범간격을 보더라도 최초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분이 소년들의 재범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2> 최초 범죄에 대한 처분경험과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최초 범죄에 대한 처분			F값	사후검증
		경찰단계석방	비수용처분	수용처분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85	1.82	2.24	5.52**	12, 3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67	1.60	1.89	3.79*	12, 3
	강도	1.58	1.59	1.83	2.96	
	폭행	2.06	2.13	2.28	1.17	
	약물	1.10	1.14	1.12	0.57	
	강간	1.34	1.33	1.37	0.08	

* P<0.05, ** P<0.01, *** P<0.001

그러나 최초 범죄에 대한 처분과 향후 재범가능성의 관계에서는 앞서 재범정도와의 관계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그리고 절도의 가능성과 최초 범죄에 대한 처분경험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지만 관계의 방향은 상반되게 나타났다

다. 즉 경찰단계에서 석방되었던 소년들의 향후 재범가능성과 비수용 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가능성은 각각 1.85, 1.82로서 수용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가능성 2.24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처벌의 억제효과와 낙인효과라는 상반된 성격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 최초 범죄 이후의 생활변화와 재범

(1) 신분의 변화와 재범

최초 범죄 이후 신분의 변화와 재범과의 관계를 고찰하기에 앞서 최초 범죄당시의 신분과 재범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IV-23>, <표 IV-24>와 같다.

<표 IV-23> 최초 범죄시 신분과 재범정도

구 분	최초 범죄시 신분			F값	사후검증
	학생	유직자	무직자		
재범횟수	3.81	3.21	3.68	8.58***	13, 2
재범간격	3.73	3.67	3.53	0.75	

* $P<0.05$, ** $P<0.01$, *** $P<0.001$

최초 범죄시 신분과 이후 재범횟수를 보면, 학생이 3.81, 유직자가 3.21, 무직자가 3.68로서 학생과 무직자의 재범횟수가 유직자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초 범죄시 학생이었던 소년들의 이후 재범 횟수가 높은 것은 유직소년에게 범죄가 갖는 의미와 학생에게서 범죄가 갖는 의미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범죄로 인하여 학생들은 더 이후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더욱더 좌절감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4> 최초 범죄시 신분과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최초 범죄시 신분			F값	사후검증
		학생	유직자	무직자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89	1.56	1.93	3.45*	13, 2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64	1.48	1.76	2.61	
	강도	1.60	1.44	1.70	2.48	
	폭행	2.13	2.07	2.09	0.10	
	약물	1.13	1.06	1.13	0.80	
	강간	1.32	1.42	1.37	0.63	

* P<0.05, ** P<0.01, *** P<0.001

최초 범죄당시 신분과 이후 재범정도와의 관계는 향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즉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에 있어서도 학생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유형별 재범가능성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최초 범죄 이후 신분의 변화와 재범과의 관계를 보면 <표 IV-25>, <표 IV-26>과 같다.

신분의 변화와 재범정도 및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신분의 변동 유무에 따라서 이후 재범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며, 향후 재범가능성에 있어서는 적은 차이를 보인 강간의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5> 최초 범죄이후 신분의 변동과 재범정도

구 분	최초 범죄이후 신분의 변동		T값
	신분변동 없음	신분변동 있음	
재범횟수	3.74	3.73	0.17
재범간격	3.64	3.75	0.77

* P<0.05, ** P<0.01, *** P<0.001

<표 IV-26> 최초 범죄이후 신분의 변동과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최초 범죄이후 신분의 변동		T값
		신분변동 없음	신분변동 있음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83	1.95	-1.66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67	1.63	0.54
	강도	1.59	1.63	-0.63
	폭행	2.06	2.23	-2.00*
	약물	1.12	1.14	-0.81
	강간	1.29	1.43	-2.44*

* P<0.05, ** P<0.01, *** P<0.001

한편 최초 범죄시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가장 재범횟수가 높았던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분석결과는 <표 IV-27>, <표 IV-28>과 같다.

<표 IV-27> 최초 범죄시 학생의 신분변동과 재범정도

구 분		최초 범죄시 학생의 신분변동		T값
		변동 없음	전학, 자퇴 등 변동	
재범횟수		3.77	3.91	-1.30
재범간격		3.73	3.73	0.03

* P<0.05, ** P<0.01, *** P<0.001

<표 IV-28> 최초 범죄시 학생의 신분변동과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최초 범죄시 학생의 신분변동		T값
		변동 없음	전학, 자퇴 등 변동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82	2.03	-2.23*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62	1.69	-0.82
	강도	1.57	1.65	-1.08
	폭행	2.09	2.21	-1.21
	약물	1.12	1.16	-0.97
	강간	1.27	1.43	-2.37*

* P<0.05, ** P<0.01, *** P<0.001

최초 범죄시 학생들의 신분변동은 이후 재범횟수와 재범간격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향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에서는 전반적인 재범가능성과 강간에서 전학 자퇴 등 신분의 변동을 경험한 소년들의 재범가능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신분의 변동과 재범간에는 대체로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있더라도 미약한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분의 변화라는 형식적인 변화보다는 내용적 변화 즉 부모나 친구, 학교 등 생활에서의 변화내용과 재범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부모와의 관계변화와 재범

최초 범죄이후 부모와의 관계변화와 재범과의 관계를 보면 <표 IV-29>, <표 IV-30>과 같다.

<표 IV-29> 최초 범죄(처분)이후 부모와의 관계변화와 재범정도

구 분		재범정도	
		재범 횟수	재범 간격
부모님과 대화 들어들었다	그렇다	3.73	3.66
	보통이다	3.87	3.56
	그렇지 않다	3.67	3.75
	F값	2.31	0.78
	사후검증		
부모님은 나를 더 철저하게 감독했다	그렇다	3.59	3.67
	보통이다	3.73	3.56
	그렇지 않다	3.90	3.81
	F값	5.00**	1.08
	사후검증	12, 3	
부모님과 내 사이는 더 멀어졌다	그렇다	3.73	3.59
	보통이다	3.89	3.66
	그렇지 않다	3.73	3.69
	F값	1.96	0.12
	사후검증		
부모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보였다	그렇다	3.67	3.73
	보통이다	3.91	3.50
	그렇지 않다	3.75	3.75
	F값	2.83	1.07
	사후검증		

* P<0.05, ** P<0.01, *** P<0.001

<표 IV-30> 최초 범죄(처분)이후 부모와의 관계변화와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강도	폭행	약물	강간
부모님과 대화가 줄어들었다	그렇다	210	1.92	1.78	2.25	2.17	1.48
	보통이다	1.97	1.72	1.65	2.10	1.16	1.39
	그렇지 않다	1.75	1.54	1.53	2.01	1.09	1.27
	F값	7.14**	9.90***	4.70**	3.12*	2.38	4.07*
	사후검증	12, 3	1, 2, 3	12, 23	12, 23		12, 23
부모님은 나를 더 철저하게 감독했다	그렇다	1.72	1.65	1.53	2.07	1.09	1.35
	보통이다	1.99	1.66	1.68	2.15	1.16	1.37
	그렇지 않다	1.88	1.66	1.60	2.09	1.12	1.29
	F값	4.38*	0.01	2.12	0.35	1.78	0.71
	사후검증	13, 23					
부모님과 내 사이는 더 멀어졌다	그렇다	2.13	1.97	1.77	2.02	1.12	1.49
	보통이다	2.03	1.73	1.77	2.32	1.19	1.42
	그렇지 않다	1.76	1.57	1.51	2.01	1.10	1.28
	F값	8.17***	9.55***	8.62***	5.52***	2.36	4.80**
	사후검증	12, 3	1, 23	12, 3	12, 23		12, 23
부모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보였다	그렇다	1.77	1.61	1.55	2.04	1.12	1.31
	보통이다	2.03	1.68	1.64	2.18	1.13	1.34
	그렇지 않다	2.05	1.81	1.80	2.29	1.16	1.46
	F값	6.46**	2.11	3.60*	2.56	0.34	1.59
	사후검증	1, 23		12, 23			

* P<0.05, ** P<0.01, *** P<0.001

먼저 재범정도와의 관계를 보면, 부모의 소년에 대한 통제변화는 소년의 이후 재범횟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나, 대화정도, 관심정도, 친밀도 등의 변화 정도와 이후 재범정도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통제와 같은 부모의 직접적인 감시활동

은 이후의 범죄행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변화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화정도, 관심정도, 친밀도와 같이 간접적인 통제활동이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통제활동이 단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간접적인 통제는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은 <표 IV-30>에 나타난 결과이다. 즉 대화정도, 통제정도, 친밀도, 관심도 등의 변화는 모두 전반적인 재범가능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대화정도와 친밀도의 경우에는 유형별 재범가능성에서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3) 친구와의 관계변화와 재범

친구와의 관계변화 정도와 재범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IV-31>, <표 IV-32>와 같다.

<표 IV-31> 최초 범죄(처분)이후 친구와의 관계변화와 재범정도

구 분		재범정도	
		재범 횟수	재범 간격
그 이전에 사귀던 친구들과 떨어졌다	그렇다	3.75	3.74
	보통이다	3.81	3.74
	그렇지 않다	3.71	3.64
	F값	0.51	0.23
	사후검증		
나쁜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게 되었다	그렇다	4.16	3.29
	보통이다	3.95	3.78
	그렇지 않다	3.49	3.80
	F값	26.03***	5.08**
	사후검증	1, 2, 3	1, 23
이전에 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었다	그렇다	3.97	3.53
	보통이다	3.77	3.61
	그렇지 않다	3.38	4.01
	F값	16.22***	3.89*
	사후검증	1, 2, 3	12, 3

* P<0.05, ** P<0.01, *** P<0.001

<표 IV-32> 최초 범죄(처분)이후 친구와의 관계변화와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전반적인 재범 가능성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강도	폭행	약물	강간
그 이전에 사귀던 친구들과 멀어졌다	그렇다	2.00	1.93	1.64	2.02	1.18	1.35
	보통이다	1.87	1.75	1.62	2.04	1.14	1.37
	그렇지 않다	1.83	1.56	1.60	2.16	1.11	1.32
	F값	1.34	10.76***	0.13	1.09	1.15	0.28
	사후검증		1, 2, 3				
나쁜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게 되었다	그렇다	2.15	1.92	1.81	2.32	1.17	1.49
	보통이다	2.06	1.69	1.79	2.23	1.16	1.39
	그렇지 않다	1.68	1.54	1.46	1.98	1.10	1.26
	F값	17.79***	11.56***	17.47***	6.93**	1.99	6.32**
	사후검증	12, 3	12, 3	12, 3	12, 3		12, 23
이전에 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었다	그렇다	2.01	1.76	1.75	2.27	1.11	1.41
	보통이다	1.83	1.63	1.59	2.06	1.15	1.31
	그렇지 않다	1.70	1.57	1.44	1.97	1.12	1.28
	F값	6.04**	3.06*	8.77***	4.89**	0.74	2.15
	사후검증	1, 23	12, 23	1, 23	1, 23		

* P<0.05, ** P<0.01, *** P<0.001

먼저 재범정도와와의 관계를 보면, 첫 번째 범죄이후에 나쁜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게 되거나 이전에 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날 경우에 이후에 저지르는 범행의 횟수도 늘어나게 되고, 더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 범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재범가능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나쁜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게 되거나 이전에 비행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길어졌을 경우에 향후 재범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모와의 관계변화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친구와의 관계가 더욱더 강한 관계를 보였다는 점이고 또 다른 특징은 부모와의 관계변화는 재범간격과는 관계가 없었으나 친구관계의 변화는 재범간격과도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최초 범죄이후에 기존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나쁜 친구를 새로 사귀게 될 경우에 재범의 가속화 경향이 매우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부모의 통제활동은 그러한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학교생활의 변화와 재범

학교생활의 변화와 재범과의 관계는 <표 IV-33>, <표 IV-34>와 같다. 먼저 재범정도와와의 관계를 보면, 학교생활의 변화를 측정한 6개 문항 모두에서 재범횟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 공부관여도, 담임선생님과의 사이, 학교적응, 문제아 낙인 등의 항목은 재범간격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학교생활의 변화 역시 친구관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관계의 변화에 비해서 재범과 더욱더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의 문제아라는 낙인은 매우 강한 관계를 보였다.

한편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재범정도와와의 관계에 비해서 문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관계의 강도는 약화되지만 대체로 재범가능성과 상당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문제아라는 낙인은 전반적인 재범가능성과도 여전히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IV-33> 최초 범죄(처분)이후 학교생활의 변화와 재범정도

구 분		재 범 정 도	
		재범 횟수	재범 간격
그 전에 비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다	3.15	4.76
	보통이다	3.76	3.76
	그렇지 않다	4.05	3.50
	F값	14.99***	7.71**
	사후검증	1, 23	1, 23
그 전에 비해서 담임선생님과 사이가 더 나빠졌다	그렇다	4.14	3.09
	보통이다	3.91	3.58
	그렇지 않다	3.66	4.07
	F값	4.97**	7.10**
	사후검증	12, 23	12, 23
그 전에 비해서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렇다	4.02	3.40
	보통이다	3.90	3.61
	그렇지 않다	3.66	4.03
	F값	3.89*	3.99*
	사후검증	12, 23	12, 23
학교에서 더욱더 문제아로 찍혔다	그렇다	4.12	3.45
	보통이다	3.87	3.59
	그렇지 않다	3.39	4.34
	F값	16.63***	7.99***
	사후검증		
다니던 학교에서 그 사건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	그렇다	3.94	3.74
	보통이다	4.20	3.61
	그렇지 않다	3.70	3.77
	F값	4.67*	0.14
	사후검증	12, 13	
그 전에 비해서 학교친구들이 나를 멀리하였다	그렇다	4.30	3.53
	보통이다	3.95	3.66
	그렇지 않다	3.70	3.80
	F값	5.87**	0.46
	사후검증	12, 23	

* P<0.05, ** P<0.01, *** P<0.001

<표 IV-34> 최초 범 죄(처분)이후 학교생활의 변화와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강도	폭행	약물	강간
그 전에 비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다	1.43	1.40	1.37	1.77	1.05	1.10
	보통이다	1.82	1.66	1.52	1.99	1.20	1.32
	그렇지 않다	1.99	1.73	1.71	2.31	1.11	1.34
	F값	756**	3.24*	5.19**	8.02***	2.59	3.04*
	사후검증	1, 23	1, 23	12, 23	12, 3		1, 23
그 전에 비해서 담임선생님과 사이가 더 나빠졌다	그렇다	1.95	1.75	1.57	2.26	1.12	1.31
	보통이다	2.02	1.79	1.76	2.24	1.22	1.42
	그렇지 않다	1.69	1.53	1.49	1.98	1.08	1.21
	F값	5.54**	4.56*	4.88**	3.46*	3.75*	4.10*
	사후검증	12, 3	12, 3	12, 13	12, 3	12, 13	12, 13
그 전에 비해서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렇다	1.97	1.81	1.67	2.11	1.15	1.37
	보통이다	1.87	1.59	1.62	2.14	1.21	1.32
	그렇지 않다	1.76	1.61	1.53	2.10	1.08	1.25
	F값	1.63	2.33	1.20	0.06	2.86*	1.37
	사후검증					12, 13	
학교에서 더욱더 문제가로 적혔다	그렇다	1.99	1.72	1.66	2.21	1.35	1.35
	보통이다	1.96	1.63	1.65	2.20	1.41	1.41
	그렇지 않다	1.58	1.60	1.46	1.91	1.15	1.15
	F값	7.63**	0.08	2.58	3.56*	1.22	5.41*
	사후검증	12, 3			12, 3		12, 3
다니던 학교에서 그 사건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	그렇다	1.87	1.62	1.69	2.32	1.16	1.44
	보통이다	1.90	1.69	1.67	2.17	1.40	1.50
	그렇지 않다	1.83	1.67	1.54	2.03	1.08	1.21
	F값	0.13	0.15	1.34	2.86	9.68***	6.77**
	사후검증					13, 2	12, 3
그 전에 비해서 학교친구들이 나를 멀리하였다	그렇다	2.23	1.98	1.72	2.49	1.23	1.53
	보통이다	2.02	1.77	1.63	2.05	1.22	1.43
	그렇지 않다	1.73	1.58	1.55	2.07	1.10	1.23
	F값	6.62**	4.68*	0.97	3.11*	3.28*	5.82**
	사후검증	12, 23	12, 23		1, 23	12, 3	12, 23

* P<0.05, ** P<0.01, *** P<0.001

3) 재범정도와 향후 재범가능성

끝으로 지금까지는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재범정도를 이제 독립변인으로 놓고 향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IV-35>와 같다.

<표 IV-35> 재범정도와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강도	폭행	약물	강간
재범 횟수	없음	1.45	1.38	1.30	1.70	1.13	1.26
	1-2회	1.71	1.58	1.47	1.92	1.11	1.31
	3회 이상	2.00	1.71	1.72	2.28	1.14	1.36
	F값	18.16***	8.01***	17.97***	17.86***	0.39	0.99
	사후검증	1, 2, 3	1, 2, 3	1, 2, 3	1, 2, 3		
재범 간격	6개월이내	1.99	1.78	1.74	2.23	1.15	1.42
	6개월-1년이내	2.01	1.61	1.61	2.14	1.07	1.30
	1년이상	1.73	1.56	1.54	2.13	1.14	1.26
	F값	4.45*	4.07*	3.26*	0.47	1.79	2.62
	사후검증	12, 3	12, 3	12, 3			

* P<0.05, ** P<0.01, *** P<0.001

<표 IV-35>을 보면, 이번 사고 이외에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소년들의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은 1.45였으며, 1-2회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소년들의 재범가능성은 1.71, 3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소년들은 2.00으로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많을수록 향후 재범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와 강도 및 폭행의 가능성은 과거 재범횟수와 일정한 관계를 보이지만, 약물과 강간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재범간격과 향후 재범가능성간의 관계를 보면, 재범간격이 짧은 소년들일수록 향후 재범가능성이 높고, 재범간격이 길수록 향후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절도와 강도의 가능성에서는 재범간격과 일정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폭행과 약물 및 강간의 가능성은 재범간격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 재범의 정도는 향후 재범가능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과거 생활환경과 재범

여기서는 소년의 과거 생활환경 즉 소년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비행 친구 등에 관련된 요인과 재범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1) 가정환경과 재범

(1) 가정의 구조적 특성과 재범

가정의 구조적 특성으로서 먼저 친아버지나 친어머니의 결손여부와 재범정도와의 관계를 보면 <표 IV-36>, <표 IV-37>과 같다. 먼저 재범정도와의 관계를 보면, 결손가정출신 소년들의 재범횟수가 정상가정출신의 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범의 간격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6> 결손가정여부와 재범정도

구 분	결손가정 여부		T값
	무결손	결손	
재범횟수	3.16	3.54	-4.00***
재범간격	3.87	3.58	2.04*

* P<0.05, ** P<0.01, *** P<0.001

<표 IV-37> 결손가정여부와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결손가정 여부		T값
		무결손	결손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76	1.86	-1.43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55	1.67	-2.00*
	강도	1.54	1.59	-0.78
	폭행	2.02	2.10	-1.13
	약물	1.15	1.12	1.05
	강간	1.41	1.28	2.60**

* P<0.05, ** P<0.01, *** P<0.001

한편 향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결손여부와 전반적인 재범가능성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형별 재범가능성에서는 절도와 강간의 가능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결손가정여부가 재범정도와 일정한 관계를 보이고 있고, 재범가능성 과도 일부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가정의 결손여부가 재범과 관계가 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결손가정 그 자체의 효과인지 아니면 결손에 따른 어떤 결과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에 관련된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결손가정여부와 재범과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족의 월평균 수입과 재범과의 관계를 보면 <표 IV-38>, <표 IV-39>와 같다.

<표 IV-38> 가족의 월평균 수입정도와 재범정도

구 분	수 입 정 도			F값	사후검증
	상	중	하		
재범횟수	3.33	3.42	3.32	0.55	
재범간격	3.60	3.79	3.61	0.92	

* P<0.05, ** P<0.01, *** P<0.001

먼저 재범정도와 관계를 보면, 가족의 수입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소년들의 재범횟수나 재범간격에는 유의미가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수입정도와 재범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향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먼저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에서는 수입정도에 따라서 재범가능성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와 강도 폭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그러나 그 차이는 대체로 미약하며 세 집단이 서로 각각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위에 속하는 집단과 하위에 속하는 집단 간에만 차이를 나타냈다. 결국 가족의 수입정도는 재범과 별로 관계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범죄의 가능성에서 약한 관계를 보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9> 가족의 월평균 수입정도와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수 입 정 도			F값	사후검증
		상	중	하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86	1.83	1.77	0.39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46	1.63	1.69	3.64*	1, 23
	강도	1.56	1.63	1.47	3.47*	12, 13
	폭행	2.10	2.15	1.90	4.33*	12, 3
	약물	1.12	1.14	1.11	0.41	
	강간	1.31	1.33	1.31	0.16	

* P<0.05, ** P<0.01, *** P<0.001

(2) 가정의 기능적 특성과 재범

가정의 기능적 특성과 재범은 소년과 아버지·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어머니의 훈육태도와와의 관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아버지

와의 관계와 재범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IV-40>, <표 IV-41>과 같다.

<표 IV-40> 아버지와의 관계와 재범정도

구 분	아버지와의 관계			F값	사후검증
	상	중	하		
재범횟수	3.11	3.45	3.50	4.67*	1, 23
재범간격	3.87	3.61	3.70	0.98	

* $P<0.05$, ** $P<0.01$, *** $P<0.001$

<표 IV-41> 아버지와의 관계와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아버지와의 관계			F값	사후검증
		상	중	하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60	1.85	1.92	5.60**	1, 23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56	1.64	1.61	0.57	
	강도	1.44	1.59	1.65	3.54*	1, 23
	폭행	1.95	2.10	2.11	1.36	
	약물	1.04	1.16	1.15	4.84**	1, 23
	강간	1.28	1.34	1.39	0.98	

* $P<0.05$, ** $P<0.01$, *** $P<0.001$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와 재범정도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재범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와의 관계와 재범횟수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아버지와의 관계와 재범 간격간에는 아무런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와 향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와 관계가 나쁠수록 소년의 재범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강도와 약물의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재범정도나 향후 재범가능성 양자 모두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와의 관계와 재범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IV-42>, <표 IV-43>과 같다.

<표 IV-42> 어머니와의 관계와 재범정도

구 분	어머니와의 관계			F값	사후검증
	상	중	하		
재범횟수	3.19	3.34	3.62	3.92*	12, 3
재범간격	3.82	3.65	3.49	1.06	

* P<0.05, ** P<0.01, *** P<0.001

먼저 어머니와의 관계와 재범과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재범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범간격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와의 관계와 향후 재범가능성을 보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쁜 소년들의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범죄의 가능성에 있어서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범죄의 가능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어머니와의 관계와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어머니와의 관계			F값	사후검증
		상	중	하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65	1.84	1.90	3.24*	1, 23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38	1.66	1.70	8.67***	1, 23
	강도	1.46	1.59	1.61	2.19	
	폭행	2.04	2.06	2.06	0.02	
	약물	1.12	1.14	1.14	0.14	
	강간	1.35	1.34	1.36	0.07	

* P<0.05, ** P<0.01, *** P<0.001

다음으로 아버지의 훈육태도와 재범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IV-44>, <표 IV-45>와 같다.

<표 IV-44> 아버지의 훈육태도와 재범정도

구 분	아버지의 훈육태도			F값	사후검증
	상	중	하		
재범횟수	3.40	3.39	3.33	0.11	
재범간격	3.72	3.65	3.51	0.49	

* P<0.05, ** P<0.01, *** P<0.001

먼저 아버지의 훈육태도와 재범정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훈육태도의 정도차이에 따라서 재범횟수나 재범간격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훈육태도와 재범정도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향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훈육태도에 따라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유형별 재범가능성의 경우, 강도와 강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강도의 경우는 훈육태도가 불량한 집단보다는 중간정도인 집단에서 오히려 재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훈육태도와 재범가능성 간에는 강한 관계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정한 비례관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표 IV-45> 아버지의 훈육태도와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아버지의 훈육태도			F값	사후검증
	상	중	하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78	1.94	1.75	2.08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59	1.70	1.60	1.34
	강도	1.51	1.71	1.60	4.37*
	폭행	2.02	2.16	2.15	1.60
	약물	1.12	1.17	1.11	1.19
	강간	1.27	1.42	1.55	7.75***

* P<0.05, ** P<0.01, *** P<0.001

한편 어머니의 훈육태도와 재범과의 관계는 <표 IV-46>, <표 IV-47>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훈육태도와 재범정도와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훈육태도에 따라서 재범횟수나 재범간격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훈육태도는 재범 정도와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6> 어머니의 훈육태도와 재범정도

구 분	어머니의 훈육태도			F값	사후검증
	상	중	하		
재범횟수	3.33	3.52	3.21	1.64	
재범간격	3.73	3.60	3.29	1.52	

* $P<0.05$, ** $P<0.01$, *** $P<0.001$

<표 IV-47> 어머니의 훈육태도와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어머니의 훈육태도			F값	사후검증
		상	중	하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79	1.94	1.70	1.99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59	1.61	1.77	1.67	
	강도	1.52	1.63	1.75	3.63*	12, 23
	폭행	1.97	2.29	2.16	5.67**	1, 23
	약물	1.10	1.23	1.18	5.66**	1, 23
	강간	1.28	1.44	1.58	7.24**	12, 23

* $P<0.05$, ** $P<0.01$, *** $P<0.001$

한편 어머니의 훈육태도와 향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의 훈육태도의 정도에 따라서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유형별 가능성을 살펴보면, 강도, 약물, 폭행, 강간 등의 가능

성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아버지의 훈육태도와 재범가능성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폭행이나 약물의 경우에는 중간정도의 양육태도를 경험한 집단에서 재범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 훈육태도와 재범가능성 간에는 다소 약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관계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교생활과 재범

소년들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학교생활의 정도와 재범과의 관계는 <표 IV-48>, <표 IV-49>와 같다.

<표 IV-48> 학교생활과 재범정도

구 분	학교생활 정도			F값	사후검증
	상	중	하		
재범횟수	2.79	3.41	3.91	22.10***	1, 2, 3
재범간격	3.78	3.73	3.42	1.60	

* $P<0.05$, ** $P<0.01$, *** $P<0.001$

먼저 재범정도와 관계의 정도를 보면, 학교생활과 재범횟수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반면에 재범간격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양호한 학교생활을 하였던 소년들의 재범횟수는 2.79인 반면에 중간수준의 학교생활을 한 소년들은 3.41, 불량한 학교생활을 한 소년들의 재범횟수는 3.91로서 학교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부모와의 관계와 재범횟수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차이에 비해서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9> 학교생활과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학교생활정도			F값	사후검증
		상	중	하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53	1.82	2.08	9.92***	1, 2, 3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47	1.63	1.67	2.88*	1, 23
	강도	1.34	1.58	1.73	7.96***	1, 23
	폭행	1.79	2.06	2.36	8.77***	1, 2, 3
	약물	1.07	1.12	1.20	3.07*	12, 23
	강간	1.22	1.32	1.47	3.94*	12, 23

* P<0.05, ** P<0.01, *** P<0.001

학교생활과 재범횟수와의 강한 관계는 향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즉 학교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은 매우 강한 관계를 보이면서 상, 중, 하 세 집단이 서로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형별 재범가능성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비행친구와 재범

비행친구의 정도와 재범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IV-50>, <표 IV-51>과 같다.

<표 IV-50> 비행친구와 재범정도

구 분	비행친구 정도				F값	사후검증
	없음	1명	2-3명	4명이상		
재범횟수	2.86	3.25	3.53	3.88	24.59***	1, 2, 3, 4
재범간격	3.64	4.09	3.77	3.43	3.42*	13, 23

* P<0.05, ** P<0.01, *** P<0.001

<표 IV-51> 비행친구와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비행친구정도				F값	사후검증
		없음	1명	2-3명	4명이상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64	1.75	1.82	2.05	7.03***	123, 4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58	1.64	1.65	1.62	0.33	
	강도	1.46	1.45	1.53	1.81	9.86***	123, 4
	폭행	1.76	1.87	2.06	2.51	21.55***	12, 23, 4
	약물	1.12	1.15	1.12	1.14	0.20	
	강간	1.25	1.24	1.31	1.50	5.85**	123, 4

* $P<0.05$, ** $P<0.01$, *** $P<0.001$

먼저 비행친구와 재범정도와와의 관계를 보면, 비행친구의 정도는 재범횟수 및 재범간격 모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집단별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재범횟수와 재범간격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재범횟수의 경우, 비행친구가 없는 소년들은 2.88, 1명인 소년들이 3.25, 2-3명은 3.53, 4명 이상은 3.88로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재범횟수도 많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재범간격에 있어서는 사후검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비행친구가 없는 집단은 3.64, 2-3명인 집단은 3.43로 비슷하게 낮은 반면에 비행친구가 한 명인 집단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재범의 간격이 비행친구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비례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향후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향후 재범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행친구가 네 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머지 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도 폭행 강간의 경우에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현재 시설경험, 태도, 자아개념과 재범가능성

여기서는 현재시설에서의 경험, 각종 태도 및 자아개념과 재범가능성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시설에서의 경험과 재범가능성과의 관계에서는 시설 경험의 6가지 차원 및 범죄학습의 정도와 재범가능성간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며, 태도와 관련해서는 법(사회)과 사회에 대한 태도, 낙인인지, 처벌의 두려움 정도와 재범가능성간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자아개념과 재범가능성에서는 범죄적 자아 및 5가지 차원과 재범가능성간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1) 시설경험과 재범가능성

(1) 시설경험의 세 차원과 재범가능성

시설경험의 6가지 차원과 재범가능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IV-52>와 같다. 현재 시설내에서 소년들의 경험을 측정한 항목은 처우의 성격과 처우의 효과를 알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차원은 참여·몰입으로 이는 소년들이 시설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얼마나 몰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지지는 소년들이 서로서로를 지지하고, 직원들에 의해서 받는 지 정도를, 인간적 관계는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는 정도를 각각 측정하는 것으로 이들 세 가지 항목은 관계적 차원을 측정하는 것이다.

다음 세 가지 항목은 개인적 성장과 목표지향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율성·책임성은 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을 지향하는가를 측정하며, 실제적 관심은 여러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석방 이후를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강조하는지를 측정하며, 개

인적 문제지향은 개인적인 문제에 가치를 두고 자기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관심을 부여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김지선, 2002a: 110-113).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먼저 참여·몰입은 전반적인 재범가능성과 매우 강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그 정도가 높을 수록 향후 재범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재범가능성에서도 강도, 폭행, 강간 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표 IV-52> 현재 시설에서의 경험과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강도	폭행	약물	강간
참여 · 몰입	상	1.55	1.58	1.44	1.84	1.16	1.23
	중	1.83	1.61	1.58	2.10	1.12	1.32
	하	2.18	1.77	1.70	2.27	1.13	1.56
	F값	13.88***	1.89	3.99*	5.92**	0.49	6.67**
	사후검증	1, 2, 3	12, 23	12, 23	1, 23		12, 3
지지	상	1.64	1.53	1.45	1.89	1.09	1.18
	중	1.81	1.65	1.58	2.04	1.14	1.34
	하	2.14	1.60	1.68	2.42	1.10	1.52
	F값	9.03***	1.53	3.29*	8.15***	1.12	7.75***
	사후검증	12, 3		12, 23	12, 3		1, 2, 3
인간적 관계	상	1.61	1.53	1.55	1.89	1.19	1.33
	중	1.80	1.61	1.54	2.04	1.11	1.31
	하	2.05	1.75	1.80	2.41	1.21	1.49
	F값	4.60*	1.67	4.83**	5.96**	3.04*	2.60
	사후검증			12, 3	12, 3	12, 23	
자율성· 책임성	상	1.67	1.66	1.59	2.06	1.14	1.37
	중	1.82	1.60	1.55	2.05	1.13	1.33
	하	1.97	1.63	1.60	2.12	1.10	1.31
	F값	4.47*	0.39	0.38	0.27	0.38	0.49
	사후검증	12, 23					

구 분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강도	폭행	약물	강간
실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	상	1.60	1.61	1.42	1.96	1.09	1.20
	중	1.84	1.63	1.59	2.04	1.12	1.33
	하	1.99	1.57	1.66	2.33	1.19	1.48
	F값	5.83**	0.28	3.60*	4.26*	1.81	4.87**
	사후검증	1, 23		1, 23	12, 3	12, 23	12, 3
개인적 문제 지향성	상	1.77	1.57	1.51	1.99	1.16	1.28
	중	1.79	1.62	1.57	2.06	1.12	1.32
	하	2.00	1.68	1.64	2.16	1.11	1.42
	F값	2.29	0.53	0.96	0.84	0.49	1.22
	사후검증						

* P<0.05, ** P<0.01, *** P<0.001

이러한 결과는 소년들로 하여금 각종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소년들의 향후 재범가능성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지와의 관계를 보면, 지지 역시 참여·몰입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재범가능성과 매우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유형별 재범가능성에서도 강도, 폭행, 강간 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구성원들 상호간의 정서적 지지와 관심 역시 참여·몰입만큼이나 소년들의 재범가능성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몰입과 지지의 차원이 주로 강도, 폭행, 강간과 같은 폭력성 범죄의 재범가능성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간적 관계, 자율성·책임성, 실제문제에 대한 관심 등도 앞의 둘만큼 강한 관계는 아니지만 소년들의 재범가능성과 일정부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의 소년들의 경험여하 즉 시설에서의 소년들에 대한 각종 치우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소년들의 재범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특히 폭력성 범죄에 대한 재범가능성을 줄이는데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범죄학습과 재범가능성

한편 시설의 수용으로 인한 대표적인 부정적 효과의 하나인 범죄학습의 정도와 재범가능성을 살펴보면 <표 IV-53>과 같다. 전체적으로 소년들의 범죄학습의 정도와 재범가능성간에는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범가능성의 경우에 '이곳에서 범죄수법을 많이 배웠다'고 응답한 소년들의 재범가능성은 2.23으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소년들의 1.68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유형별 재범가능성 전 항목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표 IV-53> 범죄학습과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이곳에서 범죄수법을 많이 배웠다			F값	사후검증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2.23	2.05	1.68	21.62***	12, 3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85	1.82	1.54	11.63***	12, 3
	강도	1.97	1.63	1.48	21.99***	1, 23
	폭행	2.59	2.12	1.95	19.40***	1, 23
	약물	1.26	1.16	1.10	7.27**	1, 23
	강간	1.67	1.46	1.24	22.00***	1, 2, 3

* P<0.05, ** P<0.01, *** P<0.001

결과적으로 시설내에서 각종 치우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범죄학습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소년들의 재범가능성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각종 태도와 재범가능성

(1) 법(범죄)과 사회에 대한 태도와 재범가능성

법, 범죄 그리고 사회에 대한 태도는 소년들이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중화기제(neutralization)의 작동 정도나 사회에 대한 부정적 편견 정도를 의미한다. 이들 문항을 하나로 합하여 중화의 정도나 부정적 편견의 정도에 따라서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표 IV-54>와 같다.

<표 IV-54> 법(범죄)과 사회에 대한 태도와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법(범죄)과 사회에 대한 태도			F값	사후검증
		긍정적	중간	부정적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36	1.76	2.43	44.76***	1, 2, 3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43	1.60	1.86	9.14***	12, 3
	강도	1.22	1.53	2.01	37.16***	1, 2, 3
	폭행	1.42	2.04	2.78	56.99***	1, 2, 3
	약물	1.02	1.12	1.25	9.15***	1, 2, 3
	강간	1.08	1.30	1.71	27.97***	1, 2, 3

* P<0.05, ** P<0.01, *** P<0.001

법(범죄)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진 집단의 재범가능성은 2.43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1.36)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 재범가능성과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형별 재범가능성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설에서의 각종 치우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소년들의 중화기제의 약화와 법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불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2) 낙인인지와 재범가능성

범죄소년에 대한 각종 처분은 소년을 보호·교정하며 또한 격리 수용을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그로 인한 낙인이라고 하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한 낙인인지와 재범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표 IV-55>와 같다.

<표 IV-55> 낙인인지와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생각이 든다			F값	사후검증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2.07	1.89	1.65	15.71***	1, 2, 3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83	1.65	1.49	13.94***	1, 2, 3
	강도	1.74	1.63	1.45	12.19***	12, 3
	폭행	2.26	2.11	1.94	7.61**	12, 23
	약물	1.20	1.15	1.08	6.18**	12, 28
	강간	1.49	1.32	1.24	9.67***	1, 23

* P<0.05, ** P<0.01, *** P<0.001

낙인인지의 정도에 따라서 소년들이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은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유형별 재범가능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시설내에서의 효과적인 처우를 통하여 재범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만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 자체가 갖고 있는 낙인인지의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어떻게 낙인의 효과를 차단하면서 각종 처우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 하느냐가 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궁극적인 숙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처벌의 두려움과 재범가능성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처리절차와 그에 따른 처벌은 낙인효과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지만 억제이론에서는 처벌의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추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과연 처벌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이 향후 재범가능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표 IV-56>과 같다

<표 IV-56> 처벌의 두려움과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만약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에 잡혀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운다			F값	사후검증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77	1.94	1.85	1.75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65	1.69	1.49	3.53*	12, 3
	강도	1.56	1.67	1.52	1.64	
	폭행	2.07	2.15	1.98	1.06	
	약물	1.13	1.11	1.14	0.13	
	강간	1.34	1.33	1.31	0.13	

* $P<0.05$, ** $P<0.01$, *** $P<0.001$

처벌의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이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형별 재범가능성에서도 절도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절도의 경우에도 두려움을 크게 느낀 집단에서 재범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 처벌의 두려움의 범죄억제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처벌로 인한 억제효과보다는 낙인효과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의 억제효과와 낙인효과는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른 조건적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이성식, 1996). 따라서 단순히 개별변인간의 관계를 비교해서 속단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여러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고 난 이후에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자아개념과 재범

일찍이 레클리스(Reckless, 1961)는 자신의 봉쇄이론에서 비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내적 통제력을 제시하면서 ‘좋은 자아개념’이 청소년비행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김준호 외 2003:111). 또한 웰스와 랭킨(Wells & Rankin, 1983)도 자아개념이 비행의 매개요인으로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비행을 유발하기 쉬운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는 범죄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좋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의 자아개념과 재범가능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소년들이 범죄자로서의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정도와 재범가능성의 관계를 고찰하였으며, 또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아의 차원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그 각각과 재범가능성을 고찰하여 재범가능성과 관련된 자아의 요소를 찾고자 하였다.

(1) 범죄적 자아와 재범가능성

범죄적 자아와 재범가능성의 관계를 보면 <표 IV-57>과 같다.

<표 IV-57> 범죄적 자아와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범죄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F값	사후검증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1.87	1.85	1.76	1.17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1.76	1.64	1.51	7.58**
	강도	1.60	1.59	1.53	0.57
	폭행	2.07	2.07	2.06	0.01
	약물	1.13	1.15	1.11	0.40
	강간	1.36	1.30	1.33	0.40

* P<0.05, ** P<0.01, *** P<0.001

소년들의 범죄적 자아의 정도와 전반적인 재범가능성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절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만, 나머지 범죄의 가능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범죄적 자아의 정도와 재범가능성간에는 관계가 없으며, 있더라도 일부 범죄에서 약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범죄적 자아의 형성은 낙인의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매개변인으로서의 중요성이 크므로 개별적인 분석결과를 가지고 그 연관성을 선부르게 판단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적 자아를 측정하기 위한 본 조사에서의 질문자체가 아직은 범죄성향이 성향이 뿌리 깊지 않은 소년들에게 부적합한 항목으로서 측정자체의 오류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자아의 제 차원과 재범가능성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된다 할 것이다.

(2) 자아의 제 차원과 재범가능성

자아의 제 차원과 재범가능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IV-58>과 같다. 먼저 도덕적 자아와 재범가능성의 관계를 보면, 도덕적 자아의 정도에 따라서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에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자신이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소년일수록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약물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별 재범가능성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성격적 자아의 경우에도 도덕적 자아만큼 강한 관계는 아니지만 재범가능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는 전반적인 재범가능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절도와 폭행의 재범가능성과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적 자아의 경우에는 전반적 재범가능성과 관계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절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정적 자아는 도

덕적 자아와 마찬가지로 재범가능성과 매우 강한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가정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V-58> 자아개념과 향후 재범가능성

구 분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강도	폭행	약물	강간
도덕적 자아	상	156	134	143	185	111	127
	중	176	160	154	202	115	139
	하	215	185	173	234	117	151
	F값	16.44***	14.00***	617**	847***	117	588**
	사후검증	1, 2, 3	1, 2, 3	12, 3	12, 3		12, 3
성격적 자아	상	160	148	141	170	102	113
	중	182	161	156	202	113	133
	하	192	171	168	241	118	145
	F값	301*	291*	320*	1381***	327*	561**
	사후검증	12, 23	12, 23	12, 23	1, 2, 3	123	1, 23
사회적 자아	상	178	143	157	223	116	140
	중	179	160	157	208	112	134
	하	192	185	156	183	115	125
	F값	103	960***	002	394*	064	162
	사후검증		1, 2, 3		12, 23		
능력적 자아	상	171	151	158	206	107	139
	중	179	157	154	206	114	135
	하	195	181	162	208	114	124
	F값	360*	869***	073	002	178	264
	사후검증	12, 23	12, 3				
가정적 자아	상	155	138	138	184	106	123
	중	182	164	160	204	113	130
	하	212	186	172	237	119	149
	F값	1750***	1758***	1031***	1255***	460*	707**
	사후검증	1, 2, 3	1, 2, 3	1, 23	1, 2, 3	12, 23	12, 3

* P<0.05, ** P<0.01, *** P<0.001

전체적으로 볼 때 도덕적 자아와 가정적 자아가 재범가능성과 강한 관계를 보였으며, 흥미로운 점은 절도의 가능성은 다섯 가지 차원의 자아와 모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범죄적 자아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대로 자아의 효과는 다른 변인들의 효과와 맞물려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후에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6. 재범요인에 대한 종합분석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요인들과 재범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다변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다른 변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변인들이 재범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범요인에 대한 종합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지금까지의 재범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이며, 둘째는 향후 재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이다. 종합분석에서는 앞서 개별분석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던 재범간격은 제외하였다. 이는 앞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항목이 별로 없었고, 또한 재범간격을 종속변인으로 상정할 경우에 최근 사건까지 세 건 이상을 저지른 소년들만이 분석대상으로 포함되는 한계를 안고 있었는데, 다변인 분석의 경우는 그 사례수가 현격하게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1)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범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회귀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IV-59>와 같다

<표 IV-59> 재범횟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 분		표준화 계수1	표준화 계수2
연령 학력		.20*** -.09**	.24*** -.16***
과거 생활 환경	가족수입	.02	.03
	결손가정	.02	.01
	부와의 관계	.02	-.01
	모와의 관계	.02	-.03
	부의 훈육	.05	.01
	모의 훈육	-.02	.04
	학교생활	-.07*	-.05
	비행친구	.09**	.04
비행 범죄 경력 및 생활 변화	유흉비행	.05	-.01
	폭력비행	.05	.08*
	재산비행	.12***	.03
	약물비행	.06	.05
	성비행	-.02	-.01
	최초체포연령	-.44***	-.32***
	최초 재산범죄		-.04
	최초 폭력범죄		-.04
	최초범죄시 공범		-.01
	최초범죄시 처분		-.07*
	최초범죄시 학생		.13*
	최초범죄시 무직		.09
	신분변화		.01
	부모대화		.01
	부모통제		-.08*
	부모친밀도		.07
	부모관심도		-.01
	기존친구사이		.03
	나쁜친구교제		.10***
	친구와 보내는 시간		.07*
결정계수		.36***	.30***

* P<0.05, ** P<0.01, *** P<0.001

재범횟수에 대한 회귀분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방식은 소년들의 과거생활환경과 비행 및 범죄경력에 관련된 일부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방식은 첫 번째 방식에 투입된 변인에 첫 번째 범죄에 관련된 변인과 그 이후의 생활변화에 관련된 변인을 추가 투입하여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방식에서는 결과적으로 모든 소년들이 포함되었으며, 두 번째 방식에서는 이번 사건이 최초의 범죄에 해당하는 소년들은 자동적으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방식은 모든 소년들의 재범횟수를 설명하고 대처하는데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적용하는데 유용한 분석이 될 것이다.

재범횟수에 대한 첫 번째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년들의 재범횟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년의 학교생활, 비행친구의 정도, 재산관련 문제행동의 여부, 최초 경찰에 체포된 연령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생활이 불량하고 비행친구가 많으며, 물건훔치거나 훔친물건사고팔기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경찰에 처음 체포된 연령이 낮은 소년들일수록 이후 재범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초 경찰에 체포된 연령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매우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발비행 또는 조발범죄가 이후 범죄의 연속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범죄이후에 재범횟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폭력관련 문제행동의 여부, 최초 경찰에 체포된 연령, 최초 범죄시 처분정도, 최초 범죄시 학생여부, 첫 번째 범죄로 인한 부모의 통제정도 변화, 첫 번째 범죄이후 나쁜 친구들과의 교제 정도, 첫 번째 범죄이후 기존 친구와 보내는 시간의 변화 정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과거에 폭력관련 문제행동을 한 적이 있고, 최초 경찰체포 연령이 낮으며, 첫 번째 범죄에서 낮은 처분을 받았으며, 첫 번째 범죄시 학생이었으며, 첫 번째 범죄 이후에

부모의 통제정도가 약화되고 나쁜 친구를 새로 사귀거나 기존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경우에 이후에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가 던지는 몇 가지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초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첫 번째 범죄시 수용처분보다는 비수용처분이나 경찰에 의해서 훈방조치되는 소년들이 이후에 범죄를 더 많이 저질렀다는 사실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첫 번째 범죄시 학생인 신분을 가진 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분의 변화라는 요인이 재범횟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첫 번째 범죄시 학생 신분인 소년들이 외형적인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 재범을 많이 저지르기 보다는 다른 요인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다른 신분을 가진 소년들보다 더욱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학교생활에서의 변화이다. 물론 학교생활에서의 변화요인은 본 분석에서 요인으로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¹⁰⁾에서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하지만 앞서 개별분석에서의 결과 등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가정생활과 친구관계의 변화이다. 부모의 통제활동의 강화는 일정부분 이후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의 변화에서는 기존 친구와의 사이의 변화는 상관이 없고 새로 나쁜 친구를 얼마나 사귀었는가 그리고 기존 친구와 더 많이 어울리게 되었는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모의 적절한 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며, 그 초점은 기존 친구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

10) 학교생활의 변화에 관련된 항목은 첫 번째 범죄시 학생신분이었던 소년들만 응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에 두기 보다는 새로이 나쁜 친구를 사귀지 못하도록 하거나 기존 친구와 예전보다는 더 많이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재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에서는 지금까지의 재범횟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주로 과거의 생활환경, 과거 비행 및 범죄경력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현재 시설에서의 경험과 소년의 태도 및 자아개념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향후 재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았다.

그 분석결과는 <표 IV-60>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금까지의 재범횟수, 시설에서의 참여·몰입정도,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 낙인인지 등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의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재산관련문제행동의 경험여부, 기존친구와의 사이변화, 최근 재산범죄여부, 범죄학습정도, 낙인인지, 도덕적 자아 등의 요인이었다.

<표 IV-60> 재범가능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 분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강도	폭행	약물	강간
연령 학력		-.07 -.01	-.11* -.06	-.17*** -.51	-.15*** .04	.04 -.01	.01 .04
과거 생활 환경	가족수입	.02	-.01	.04	.03	.01	-.02
	결혼가정	-.01	-.01	-.06	.01	-.03	-.10*
	부와의 관계	-.02	.01	-.06	.02	-.01	-.08*
	모와의 관계	.01	-.02	-.04	.03	-.02	-.04
	부의 훈육	.20	-.07	-.07	-.05	.05	-.12**
	모의 훈육	-.05	.02	-.02	-.06	-.09*	-.01
	학교생활	-.07	-.01	-.02	-.03	-.08	-.09*
	비행친구	.02	.01	.01	.10**	-.04	.05

구 분		전반적인 재범가능성	유형별 재범가능성				
			절도	강도	폭행	약물	강간
비행 범죄 경력 및 생활 변화	유흥비행	-.03	-.04	-.01	-.01	-.08	-.01
	폭력비행	-.54	-.03	.11*	.10*	-.04	-.02
	재산비행	-.06	.09*	.05	.03	.03	.01
	약물비행	.06	-.03	.04	.03	.30***	.03
	성비행	.01	-.01	.04	.05	-.01	.11**
	최초 체포연령	-.06	.01	.01	-.03	.05	-.05
	최초 재산범죄	-.04	-.01	.01	-.01	-.01	-.09
	최초 폭력범죄	-.01	-.05	.07	.06	.04	-.04
	최초범죄시 처분	.07	.01	.04	.01	-.02	-.07
	최초범죄시 학생	.06	.04	-.02	-.05	.12	-.09
	최초범죄시 무직	.05	.05	.01	-.04	.09	-.03
	신분변화	.05	-.01	.01	.10**	.02	.10**
	부모대화	.03	.02	.03	-.05	-.02	-.04
	부모통제	-.05	-.05	-.06	.04	-.06	.04
	부모친밀도	-.02	-.05	-.01	.02	.01	.05
	부모관심도	-.04	-.04	-.04	.01	-.07	-.01
	기존친구사이	-.01	-.10*	.01	.06	-.02	-.01
	나쁜친구교제	.07	.03	.08	-.01	.02	-.02
	친구와보낸시간	.01	.04	.05	.04	-.03	.05
	최근 재산범죄	-.03	.13*	.01	-.01	.10	.02
	최근 폭력범죄	-.03	.03	.05	.09	.05	.04
	최근범죄시 공범	.02	-.05	-.03	-.07	-.07	-.01
	재범횟수	.11**	.05	.09*	.10*	-.01	-.02
현재시설 경험 태도 자아	참여·몰입	-.08*	-.08	-.03	.01	.07	.01
	지지	.01	.03	.05	.02	-.04	-.11*
	인간적관계	-.01	-.02	-.02	-.09*	-.01	-.01
	자율성·책임성	-.06	.02	.03	.01	.05	-.08*
	실제적문제관심	-.02	.04	.05	.02	-.01	.02
	개인적문제지향	.01	.01	-.03	.01	.03	.01
	범죄학습	.08	.09*	.11*	.04	.07	.10*
	법·사회태도	.20***	.08	.18***	.26***	.08	.15**
	낙인인지	.11*	.11*	.13**	.11**	.04	.05
	처벌두려움	-.04	.02	-.03	-.01	-.01	-.02
	범죄적자아	-.08	-.03	.11*	-.15**	-.01	-.08
	도덕적자아	-.17	-.10*	-.10*	-.12**	-.01	.01
	성격적자아	.01	-.02	-.01	-.09*	-.05	-.03
	사회적자아	.01	-.08	.01	.08	.03	.04
	능력적자아	.01	.05	.04	.01	-.01	.04
	가정적자아	-.08	-.08	-.02	-.01	-.02	-.01
결정계수		.27***	.24***	.26***	.35***	.17***	.23***

* P<0.05, ** P<0.01, *** P<0.001

다음으로 강도의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거 폭력관련 문제행동의 경험여부, 재범횟수, 범죄학습정도,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 낙인인지, 범죄적 자아, 도덕적 자아 등이며, 폭행의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행친구정도, 과거 폭력관련 문제행동의 경험여부, 첫 번째 범죄 이후 신분의 변화경험여부, 재범횟수, 시설내에서의 인간적 관계의 경험정도,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 낙인인지, 범죄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등이며, 약물의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훈육태도, 과거 약물관련 문제행동의 경험여부 등이며, 강간의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가정여부,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의 훈육, 학교생활, 과거 성관련 문제행동의 경험여부, 첫 번째 범죄이후 신분의 변화경험 여부, 시설내에서의 지지경험 및 자율성·책임성 경험정도, 범죄학습의 정도,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 등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군별로 비교해 보면, 향후 재범가능성에 대해서 과거 생활 환경에 관련된 변인 보다는 첫 번째 범죄이후 현재까지의 경험이나 그에 관련된 변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요인별로 비교해 보면, 먼저 소년들의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법의식과 사회에 대한 편견제거 내지는 적대감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낙인의 인지는 처벌의 두려움과 달리 소년들의 재범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아개념의 경우 범죄적 자아와 도덕적 자아의 경우 범죄유형에 따라서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들의 신분의 변화 역시 폭행과 강간 등 주로 폭력성 범죄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나 소년들의 신분변동으로 인한 좌절감 등이 향후 이들 범죄가능성과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분변화로 인한 소외감 좌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과거의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서 향후 재범가능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년들이 경험하는 각종 문제행동의 유형이 이후 같은 유형의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소한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이들 독립변인을 통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은 폭행 가능성이었으며, 가장 약한 것은 약물 가능성이었다. 폭행의 가능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 자아개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의 예방을 위해서는 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자아의 형성과 법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적대감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간의 가능성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과 달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과거 생활환경 변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에서의 경험 등의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변인의 성격과 강간범죄의 성격을 연관시켜 보면 비교적 가정환경 그리고 시설내에서 정서적 지지의 경험 및 자율성·책임성과 같은 요인들이 애정을 기반으로 적절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행위의 통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다른 범죄유형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의 치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V. 청소년 범죄통제에 대한 국제 정책동향

1. 21세기 소년사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 각국의 재범억제 프로그램
및 정책동향

공 백

V. 청소년 범죄통제에 대한 국제 정책동향

1. 21세기 소년사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두 가지 주요 질문이 등장한다. 누가 그것을 했는가? 그리고 가해자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후자의 질문은 주로 다른 질문, 즉 가장 적절한 처벌, 적어도 청소년 범죄의 경우에는 재화를 증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처우(treatment or service)에 대한 질문과 연결된다. 처벌 또는 처우에 대한 질문은 지난 40년동안 형사정책적 담론(dialogue)의 주된 관심사였다.

소년사법의 역사를 보면, 소년의 범죄행위를 개념화함에 있어서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이 존재하였다. 복지모델(welfare model)과 사법모델(justice model)의 대립이다. 실상 형사법체계에서 청소년을 성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다루는 ‘소년사법’이 분리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1) 일반형사제도와 구분되는 ‘소년사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관점이 바로 [복지모델]이다. 이 모델은 “소년보호이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미성년자의 특성을 감안,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교육적 견지에서 형벌보다는 필요(needs)에 부응한 처우에 초점을 둠으로써 소년범들을 교정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데 우선 순위를 둔다. 이러한 접근모델에서는 응보적(처벌적) 성격은 사라져 버리고, 도구주의적인 재활적 접근이 우세하게 된다. (2) 하지만, 복지모델은 사법모델로부터 중요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다름에 있어서 적법절차(due process)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소년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재범억제에도 효과적이지 않으며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도 소홀하는 것이다. 사법모델의 기본 관점은 소년범을 처우함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적법절차와 비례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념모델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 각국의 소년사법체계를 형성·발전시켜 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두 가지 원칙간의 종합 또는 타협(절충)을 구성(소위 “the welfare/justice balance”)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Walgrave, L.; 1998:3).¹¹⁾

산업화 이후, 사회의 거대한 변화는 청소년 비행 및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경제적·기술적·인구학적 변화는 사회를 보다 이중적으로 만들었고, 약화된 사회통제, 여러 형태의 사회화, 일탈에 대한 보다 낮은 관용도, 그리고 범죄와 일탈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 공황상태”를 야기했다. 청소년 비행은 질과 양에 있어서 크게 변화되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청소년비행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예전의 순수한 사회복귀(또는 재활)모델은 점점 나이브한 대응방법이 되고 있다. 요컨대, 청소년 범죄자를 다룸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처벌지향성을 포함한 ‘정의(Justice)’ 요소에 대한 관심이 비등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변화는 이태리(1988)·영국웨일즈(1988-89)·독일(1990)·벨기에(1994)·네덜란드(1994-95) 등 각국의 소년사법체계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과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는 잘 모르지만, Hirsche and Gottfredson(1991) 및 Feld(1993)가 제안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소년사법체계의 폐지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Deok, 1994; Junger-Tas, 1994)이다. 이는 특별하게 고려된 소년사법체계가 구성된 이래로 유지되어 온 “justice와 welfare 균형” 담론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소년범죄자들 처우하는 방법에 대

11) www.afk.dk/eng98/juvenile.htm 참조

해 전면적으로 새롭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다.

최근, “제3의 길”에 대한 옹호론은 범죄에 대하여 매우 다른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소위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라는 관점으로 제기되었는데, 범죄란 그것이 개인과 공동체에 해악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시 말해, 범죄가 해악(harm)에 관한 것이라면, 정의는 가해자는 처벌하거나 처리함으로써 단순히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법과정(justice process)은 회복을 증진시켜야만 하며, ‘상처의 치료(heal the wound)’를 시도해야만 한다. 기존 담론의 쟁점인 가해자에 대한 응보적 처벌이나 온정주의적 재할(처분)이나 등과 관련된 일차원적인 초점과는 달리,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정의가 시민, 가해자, 피해자들의 필요에 대한 균형적인 반응이 있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안전감을 위하여 범죄는 제재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가해자(위반자)를 재통합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다면적인 지역사회의 기대는 위반자에 의해 드러난 위험(risk)이나 필요(needs)에 관한 편협한 초점에 의해서는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범죄가 야기한 해악(harm)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공동체·위반자들은 형사정책시스템의 고객으로서 간주해야만 하며, 전반적인 사법과정(holistic justice process)에 협력자로서 의미있게 포함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한다(Bazemore, 1999).¹²⁾

최근 등장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원칙들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재통합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피해자와 공동체를 포함한 위반자 재할(rehabilitation)에 대한 독특한 접근방법을 지향하고 있으며, 실제 몇몇 나라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소년 사법제도의 개혁방향에 접합시키고, 구체적인 제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2) www.gwu.edu/~ccps/Bazemore.html

1990년대부터 ‘회복적 사법’, ‘공동체 정의’, 그리고 ‘원상회복적 공동체 정의’라고 불리는 개혁운동이 전세계적으로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재판프로그램국’의 주체로 강도높은 그룹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회복적 사법’에 대한 국제토론회가 개최되면서, 미국·캐나다·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몇몇 유럽 국가들에서의 논쟁을 촉발시켰다. 회복적 사법정책과 소송실무(관례)들이 일정한 지역사회와 특정 국가와 사회에서는 이미 작용되고 있다. 뉴질랜드와 같이 몇몇 경우에, 살인과 강간을 제외한 모든 비행(delinquency) 사건에 대한 처분을 지역사회 가족그룹위원회가 처리하고 있고, 美 Vermont주에서는 대부분의 비폭력적 felon(중죄)과 경범죄(misdemeanor)들은 지역사회위원회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배상)을 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는 등 ‘회복적 사법’은 형사사법정책에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의 Minnesota, Maine 및 다른 주들에서도 교정보호국 임무로서(as the mission for their corrections departments)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채택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펜실바니아, 플로리다, 뉴멕시코, 아이다호 및 몬테나 및 기타 주의 소년사법제도는 정책 혹은 법령(statute)에서 ‘회복적 사법’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Bazemore, 1999).¹³⁾

‘회복적 사법’이념에 입각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피해자-범죄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과 ‘가족집단회의(Family Group Conference)’가 있다

13) 사회봉사(communitary service)와 상환(restitution)으로서의 보상(reparation)이 급세기 미국법원에 의해 종종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1970년까지는 널리 대중적인 판결옵션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상환과 사회봉사, 피해자-가해자 중재 등의 프로그램은, 미국의 형사 및 소년법원에서는 특정규칙하에 사용되어 왔으며, 때로는 사회복귀 전환프로그램(communitary diversion programs) 또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probation)에 의해 집행되기도 하였다.

(1) 피해자-범죄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 VOM)

이것은 1970년대 초반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시작된 「피해자-범죄자 화해 프로그램(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 VORP)」에서부터 기원한다. 당시 그것은 피해자와 범죄자의 화해가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의 회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자의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주로 보호관찰과 결부되어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시행되었다. 그 연원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 프로그램은 현재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담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의 하나로 간주된다. 조정프로그램에서 피해자와 범죄자는 조정자의 보조 하에 서로 대면함으로써 범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의 회복과 갈등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범죄자와 피해자는 “형식에서 탈피한 분위기에서” 갈등해결의 능동적 주체가 된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중재자가 중재안을 판단하는 방식의 중재제도와는 달리, 조정절차는 어떠한 합의 내지 결과물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Van Ness and Strong, 1997:69). 여기에서는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의 역할은 단지 참여자의 대화과정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에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절차의 목적이자 과정은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Van Ness and Strong, 1997:71-72). 우선은 무엇이 행해졌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것은 갈등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단계로서 범죄사건의 발생사실과 그로 인한 당사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확정하고 그것을 어떠한 급부를 통하여 회복할 것인가가 주로 논의된다. 이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면 다음으로는 장래에 그 합의사항의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뒤따르게 된다. 예를 들면

배상을 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배상스케줄,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미팅 일정 등이 논의된다(이호중, 2000 재인용).

(2) 가족집단 회의(Family Group Conference = FGC)

1989년은 회복적 사법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두 가지 계기가 출현하였는데, 하나는 Braithwaite(1989)의 [범죄, 수치심, 재통합(Crime, Shame and Reintegration)]이라는 책의 출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뉴질랜드에서 가족집단회의를 시작한 것이다. Braithwaite(1989)의 재통합이론¹⁴⁾은 가족집단회의의 기본원리와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면서, 가족집단회의를 시행하는데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재통합이론에 근거한 가족집단회의는 1989년 뉴질랜드와 호주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유럽과 북미 등 세계 각처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조정절차에 비해서는 최근에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그 뿌리는 뉴질랜드 마오리 족의 “와나우(Whanau)회의”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한다¹⁵⁾ 이 프로그램은 범죄자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나 형제, 자매 등 관련집단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범죄자 조정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범죄자를 체포한 경찰관, 범죄자의 변호사 등도 참여한다고 한다(Van Ness and Strong, 1997:73). 이러한 가족집단회의는 주로 청소년범죄 사건의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McElrea, 1994:99-100).¹⁶⁾

14) 재통합이론은 세 가지 핵심개념 ①공동체특성 ②재통합적 수치심 ③ 상호의존성을 통해서 개인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뿐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세 가지 핵심개념은 회복적 사법의 근본원리로서 작용하게 된다

15)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cElrea (1994), "Justice in the Community : The New Zealand Experience", in Burnside and Baker(Eds), Relational Justice : Repairing the Breach 참조

16)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성호(2000), 외국의 새로운 소년법 치우제도-가족회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람.

이 프로그램은 보통 참여자의 수가 10명 내외라고 한다. 회의의 진행은 보통 조정자가 프로그램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난 후 범죄자에게 범죄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난 후 피해자에게 피해의 경험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고 필요하다면 범죄자에게 질문도 허용된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그리고 범죄자의 가족에게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정자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하는가 하는 테마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게 된다. 이 협상은 모든 참여자들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이 프로그램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해자의 만족도는 90% 정도로 평가되었다고 한다(이호중, 2000 재인용).

2. 각국의 재범억제 프로그램 및 정책동향

외국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우정책은 범죄유형에 의한 구분보다는 청소년의 범죄성 정도에 의한 처우정책이 우선적이다. 이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매우 복잡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범죄행위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보다, 범죄성향의 심각성 및 새로운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어 다루고 있다.

1) 미국

(1)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 전략

미국의 청소년 범죄는 지난 십여년간 매우 증가하였다. 15세 이하 위험한 범죄와 무기를 사용한 범죄로 체포된 청소년은 극적으로 증가했다. 청소년 체포와 소년구금시설 수용율의 놀라운 증가는 사회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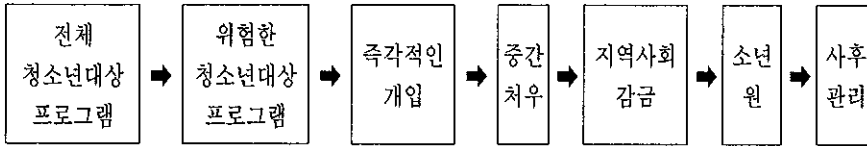
을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가중되면서, 강력한 처벌요구도 비등해졌다. 미국의 전국가사회적인 공감대는 청소년 범죄에 맞서 싸우는 포괄적이고 종합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소년사법과 비행예방 사무국(OJJDP)은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만성적인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회, 도시, 주, 그리고 국가수준에 맞춘 전략적 대응체제를 제공할 종합전략을 수립하였다. 종합적 전략은 십여년간의 연구, 프로그램평가, 그리고 범죄와 소년재판에 대한 통계, 공중건강, 그리고 청소년개발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¹⁷⁾

OJJDP는 1993년 '심각하고 폭력적이고, 고질적인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종합전략: 프로그램 요약(Wilson and Howell, 1993)'을 발행하면서,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종합적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OJJDP가 1995년에 발행한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종합전략 시행지침(Krisberg, B. et al, 1995)'에 근거하여, 미국의 종합전략의 핵심적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 미국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 전략

문제행동 → 비범죄적 문제행동 → 비행 → 심각하고, 폭력적이고, 고질적 범죄	
<u>예방(prevention)</u> 대상집단 : 비행위험있는 청소년 청소년발달의 목적 - 건전한 가족 - 안전한 지역사회 - 학교에 대한 애착 - 친사회적인 또래 관계 - 개인적 발달과 삶의 기술 - 건강한 삶의 방식 선택	<u>누진적 제재 (Graduated Sanction)</u> 대상집단 : 청소년 범죄자 청소년 사회복귀의 목적 - 건강한 가족의 관여 - 지역사회 통합 - 교육적 성공과 기술의 발달 - 건강한 또래 관계의 발달 - 친사회적 가치의 발달 - 건강한 삶의 방식 선택

17) www.djj.state.fl.us/jjdp/execsummary.html



출처 : Krisberg, B et al(1995:8), 최영신(2001:114재인용)

OJJDP의 종합 전략은 다음의 5가지 일반원칙에 기초한다

① 가족에 대한 강화: 어린이에게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어린이를 지원,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므로 이를 강화한다.

② 핵심적인 사회기관에 대한 지원: 학교·종교기관·지역사회는 청소년이 가능성 있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발달하도록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이들 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③ 비행예방의 강화: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접근은 비행을 예방하는 것이다.

④ 비행행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비행행동을 하는 청소년이 고질적이고 심각한 범죄자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심각하고 폭력적·고질적인 소년범죄자 확인과 통제: 강력범죄에 가담하는 심각한 청소년 범죄자들에게는 초기 개입이 실패하였으므로, 소년원이나 지역사회 구금시설 같은 엄격한 시설내처우 혹은 소년 사법체계에서 형사사법체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최영신, 2001:115 재인용).

OJJDP 종합적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 비행정도에 따라 개입전략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전략은 크게 예방(prevention)과 누진적 제재(graduated sanction)로 나누어진다. 예방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비행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누진적 제재는 일단 범법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비행의 정도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로 올라갈수록 제재의 강도가 커진다(최영신,

2001'116). 즉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종합전략은 조기개입을 통한 예방(prevention)으로부터 소년사법체제로 들어온 청소년들에 대한 누진적 제재(graduated sanction)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점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복잡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방정책은 위험요인(risk factors)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위험에 대해 완충역할을 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Reno et al. 1998, 김지선, 2002b'60 재인용). 종합적 전략은 청소년을 비행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영향과 요소에 접근하고, 유효한 자료를 결정하고, 종합적 전략 속에서 확인된 19개의 위험요소(risk factors)를 감소시키거나 청소년을 그러한 요소의 영향으로부터 완충시키는 보호요소를 제공하는 예방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지원한다.

(2) 개입단계별 프로그램

① 예방프로그램 : Juvenile Mentoring Program(JUMP)

미국의 소년사법과 비행예방 사무국(OJJDP)은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주제와 영역에 걸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The Juvenile Mentoring Program(JUMP) 이다. JUMP는 1992년 '청소년범죄 및 비행방지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의 개정을 통해 [소년사법과 비행예방 사무국(OJJDP: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에서 관리하는 미연방 전체의 멘터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JUMP는 OJJDP에서의 청소년 범죄자 종합전략의 일환으로서 "효과적인 예방정책은 위험요인의 감소와 보호요인의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기조하에, 소년사법제도에 진입하거나 재진입할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개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JUMP는 청소년기의 비행과 갱 참여를 줄이고 학업성적을 개선시키며, 학교에서의 중도탈락율(dropout rates)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보호해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어른들(mentor)와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필요로 하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mentee)를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JUMP는 성인-청소년 자매결연 프로그램(Big Brothers, Big Sisters of America: BBBSA)에 기원한다. BBBSA는 기본적으로 편부/편모가정의 청소년(6-18세)을 대상으로 한다. 멘터링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술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시행기관에 대한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1994년 JUMP가동이후 가입된 프로그램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00년에는 164개 프로그램이 지원을 받았다. 여기에 참여한 청소년수도 늘어 1995년에 25개주의 약 2천명이 참여하였으나, 2002년 현재 47개주의 9,200명이상이 1:1 멘터링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http://ojjdp.ncjrs.org/jump/oview.html>).¹⁸⁾

이밖에도 미국에는 거의 450-500개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주요 예방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최영신, 2001 154-173).¹⁹⁾

- 중서부 예방 프로젝트(Midwestern Prevention Project) · 중학교 전체학생(6,7학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약물남용예방 프로그램
- 가족기능요법(Functional Family Therapy) · 11-18세의 부적응행동과 그와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18) 미국 멘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지선(2002b),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터링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람

19) 여기에 예시된 프로그램들 각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영신(2001), 청소년 폭력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람.

- CINS/FINS 프로그램 가족의 동일성과 완전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숙박 및 거주지원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아이와 가족문제를 해결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
- 기회제공 프로그램(Quantum Opportunities Program) · 9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4년 동안 불우한 청소년에게 재정지원 및 교육·서비스 활동을 제공하는 발달지원프로그램
- 생활기술훈련(Life Skill Training) ·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물문제 대응을 위한 기초개입 프로그램
- 태아·영아 가정방문 간호프로그램(Prenatal and Infancy Home Visitation by Nurse Program) · 저소득이며 위험에 처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가정방문 서비스
-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Bullying Prevention Program) · 범죄예방과 감소를 위한 일반적 개입 프로그램
- 대안적 사고능력 향상 프로그램(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 초등학교령기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 감소 종합프로그램

② 즉각적인 개입 프로그램(immediate Intervention)

즉각적인 개입 프로그램은 강력범죄가 아닌 초범인 청소년범죄자와 경미한 재범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범방지에 초점을 둔다. 비거주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비행위험이 있는 청소년 예방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한다. 프로그램의 계획, 운영, 평가 등에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집중적 전환처우 서비스(Intensive Delinquency Diversion Service: IDDS)’를 들 수 있다. IDDS 프로그램은 집중적 조기개입이 재범자가 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다. 플로리다 소년사법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초 청소년 체포자들의 14퍼센트가 습관적 범법자가 될 높은 위험성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찍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청소년범죄의 약 2/3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²⁰⁾ IDDS 프로그램은 반복적 범죄자가 될 14%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범과 위험한 범죄자가 될 아주 높은 위험성을 가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조기확인 및 집중적 서비스와 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DDS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에서의 연구와 “8%의 해결”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전한 것으로서,²¹⁾ 15세 이하에 체포된 청소년에 대한 다음의 비행예측 위험요소를 통해 개입대상자를 확인한다.

1. 학업실패, 정학 및 결석
2. 빈약한 부모의 통제, 가정교육의 결핍과 형사재판제도에 전과가 있는 가족을 포함한 가족적 안정성의 결핍
3. 정신적 건강과 마약문제
4. 가출, Gang참여, 분열적 행동과 절도 등을 포함한 예비적 비행

IDDS 프로그램에서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은 청소년이 다시는 소년 재판 또는 형사재판에 돌아오지 않도록 5-7개월간 상담, 감독, 그리고 도움을 받는다. 특정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개별화된 자료가 제공된다. 이것은 정신적 건강상담, 마약치료, 가정교사와 가정교육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와 학교의 협

20) 플로리다 소년재판부의 ‘BILL’ 비서관에 따르면, “우리는 청소년 범죄자가 습관적 비행의 높은 위험이 있다는 적신호에 일찍 관심을 두었다. 범죄자는 15세 또는 그 이하의 나이에 최초로 체포되었고 나쁜 학교 품행, 마약, 또는 정신적 건강의 문제, 가족의 안정성의 결핍 그리고 범죄단체 가입이나 가출과 같은 4개의 위험한 범죄요소 중 3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절적인 도움과 감독, 처우를 제공하는 타겟으로 삼는다.”

21)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보호관찰부서의 전문성과 지식을 연구하였다. 그것은 습관적 범죄자가 될 높은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에게 기관의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개발시켰다. “8%의 해결”이라는 제목을 가진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은 6200건의 비행에 대한 7년간의 연구로부터 습관적 범죄와 연관된 사회심리적 통계적 요인을 결정함으로써 완성되었다. 대상자 확인은 교육, 가족, 마약, 그리고 조기비행요소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였다.

력 속에 그들의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고 그들의 인식과 사회성, 학업능력, 고용기술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장래의 비행활동을 저지하는데 초점을 둔 지역사회중심-처우계획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즉각적 개입 프로그램들이 있다.²²⁾

- 다면적 양육처우(Multi-dimensional Treatment Forster Care) · 시설구급위험이 높은 만성적 범죄경력 10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감독 프로그램
- 주간처우 프로그램(Day Treatment Program) 펜실베이니아주의 베데스다 시설에서 시작된 프로그램 범죄를 저지른 판결전 청소년 및 판결을 받은 청소년에게 거주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제공 가정에 거주하면서 주당 일정 시간(약 55시간)의 처우를 받으며, 프로그램은 학교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구성. 가족도 치료과정에 참여가능
- 선택 프로그램(Choice Program) 볼티모어와 메릴랜드 5개주의 비행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의 집중적 상담치료프로그램(4-6개월 정도). 일종의 Mentoring과 유사함
- 미시간주 전환처우 프로젝트(Michigan State Diversion Project) 일종의 멘토링 기법으로서 비전문적인 사례관리자를 통한 레크레이션 중심의 관리프로그램
- 노스캐롤라이나 집중보호관찰 프로젝트(North Carolina Intensive Protection Project) · 이 프로그램은 심각하고 폭력적이고 만성적인 범죄자가 될 위험이 높은 지위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안된 것으로서,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소년사법체계내의 개입프로그램. 사례관리자는 초기에 하루에 여러 번 접촉할 정도로 대상자를 집중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부가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

③ 중간처우 프로그램

중간처우 프로그램은 즉각적 개입프로그램으로 다루기에는 범죄가 너무 심각하고, 교정시설에 배치하기에는 범죄가 너무 경미한 청소년

2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영신(2001) 참조.

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것이다. 중간처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병영식 캠프(Boots Camp)와 밀착감시프로그램(Intensive Supervision Program), 그리고 다체계적 요법(Multi-systemic Therapy)²³⁾에 근거한 지역사회 거주프로그램(community-based residential program) 등을 들 수 있다.

병영식 캠프(Boots Camp)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1980년대말부터 교도소 구금형과 일반 보호관찰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개발되어 확장 추세에 있는 중간처벌(intermediate sanction) 형태의 하나이다. 프로그램들은 군대식 훈련을 중심으로 기율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훈련 기간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통 극히 제한된 자유만을 허용하는 3-4개월간의 훈련을 거친 후 일반보호관찰처분을 받는다. 집중적인 군대식 육체훈련, 노동, 작업 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 상담 등 다양한 교화적 측면도 강조된다. 이는 충격보호관찰²⁴⁾과 비슷하지만 주교정국 관할이 아니고 보호관찰소 관할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병영식 훈련프로그램은 기율있는 생활습관을 습득하고 마약 및 알콜 등과 차단되며 건강을 회복시키고 대상자의 과거 생활, 사고 및 행위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잇점이 있다(김준호 외, 2003:479)

밀착감시프로그램(Intensive Supervision Program:ISP)은 구조화된 정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개인별로 감독한다. 이 프로그램은 5단계로 구성되는데, 규제감소정도의 순으로 보면, 단기간의 지역사회시설구금(1단계), 주간처우(Day Treatment:2단계), 활동범위의 제한과 추적(3단계), 일상적인 감독(4단계), 해제와 추후지도(5단계) 등의 순으로 진

23) 12-17세 수용처분 위험이 높은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 중심의 집중적 처우 프로그램들

24) 충격보호관찰이란 보호관찰에 앞서 일시적(1-4개월)으로 교도소 등에서 고통스런 구금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미래 범죄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갖도록 하는 처벌형태이다 보통 구금경력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행된다. 또한 ISP 프로그램에는 추가준수사항으로서 야간통행금지(Curfew)나 지역사회배상명령(Community Service Restitution), 특정인과의 접촉금지(No Interaction with other), 피해배상(Financial Restitution),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 System), 가택구금(Home Confinement), 보호시설거주유치(Secure Residential Placement), 그룹홈(Group Home), 대리양육(Foster Care) 등이 덧붙여질 수 있다.

지역사회거주(community-based residential program) 프로그램은 다체계적 처우원칙에 입각한 “상당한 정도로 개별화된 가정과 집에서 처우”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처우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공 프로젝트인 가족과 이웃 서비스(FANS)를 들 수 있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실시하며, 청소년복지부와 정신건강부간의 협조에 기초한다. 처우는 다체계적 처우 원칙에 근거, 훈련프로그램과 규칙적 감독과 관리를 통해 통합된다.

④ 엄격한 교정처우 · 구금센터(Juvenile Detention Centers)

엄격한 교정처우는 심각하고 폭력적이고 고질적인 청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고 구조화된 처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엄격한 처벌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구금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지역사회시설구금(community confinement)이고, 다른 하나는 소년원 구금(incarceration in training schools)이다.

지역사회시설구금 대상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또는 재범에 의해 중간처우가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청소년들이다. 마약류 유통관련범죄, 상습적인 재산범죄, 강력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사회 시설구금은 대체로 소규모이며, 집중적인 처우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처우과정에 가족의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개입이 가능

하다

소년원구금 대상자는 지역사회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역사회중심 처우로는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소년범죄자들이다. 이들은 소년원이나, 캠프, 목장과 같은 교정시설내 처우를 받게 된다(최영신, 2001:118-119).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모든 처우가 적당하지 않거나 실패했다고 확인된 소수의 청소년 강력범은 형사사법체계로 이동한다.

⑤ 소녀들을 위한 PACE 센터(PACE center for girls)

여자를 위한 실질적 학문교양교육(PACE) 프로그램은 성적으로 감성적이고, 주저지가 없고, 문제 있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기초한 공동체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비행, 법령위반, 중등학교 중퇴, 청소년기 여성의 십대임신 등의 숫자를 감소 또는 방지하려는 것이다.

2) 영국

영국의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사법체계와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소년사법체계는 크게 다음의 3 단계를 중심으로 누진적 처우 및 관련프로그램들이 작동되고 있다.²⁵⁾

25) www.youth-justice-board.gov.uk/YouthJusticeBoard/theSystem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소개한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소년사법체계를 통하여, 이와 유사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영미법계 통에서의 소년범 처우에 대한 개괄적 이해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표 V-2> 영국의 소년사법체계와 처우담당기관

개입단계	개입대상 및 내용	담당기관
예방	청소년이 범죄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청소년범죄담당팀(YOT) LEA, Social Services 경찰
재판전 pre- court	청소년이 최초 또는 두 번째의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에 빠져있거나 반사회적으로 행동할 경우	경찰, YOT 지방법관청
소송 court	청소년이 계속 범죄를 범한 후 경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또는 더욱 위험한 범죄로 인해 기소될 경우	경찰, YOT, CPS
소송 court	청소년이 보석되거나 구금된 경우	경찰, YOT 변호사, CPS, 소년법원
	청소년이 소년법원에 출석할 경우, 위험한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소년법원은 형사법원에 사건을 회부함	YOT, 변호사, CPS, 소년법원, 형사법원
	청소년이 유죄인정 또는 유죄확증되어 선고가 내려짐	소년법원, 형사법원
	사회복귀판결 또는 구금판결	YOT 또는 소년원

(1) 예방

사전범죄 예방의 목적은 범죄의 높은 위험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확인하고 그들이 소년사법체계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도록 돕는 것이다. 영국의 소년사법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안전한 학교만들기 공조(Safer School Partnership)
- ② 여가 및 놀이계획 프로그램(Splash and Splash Extra)
- ③ 청소년포용프로그램(Youth Inclusion Programme)

- ④ 청소년포용·지원패널(Youth Inclusion and Support Panel)
- ⑤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me)
- ⑥ 부모훈련 프로그램(Parenting Programme)

① [안전한 학교만들기 공조 프로그램]

학교생활을 향상시키고 거리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써 현재 거리범죄가 빈발하는 지역학교에 100명의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술부(DfES), 소년사법위원회, 그리고 경찰서장협회(ACPO)간의 선도적인 협력 작업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 담당경찰은 기본적으로 교사역할을 했던 학교에 참여한 전직 경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의 역할은 매우 효율적이며, 학교와 사회간의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교와 사회에서 피해자·범죄·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총체적 학교(whole school)’적 접근에 따라 학교와 협력하고, ○피해자 또는 범죄자가 될 위험에 있는 청소년을 다루고, ○청소년범죄자에게 전시간 교육을 가능케 하고, ○학령기 이행기간 동안 유혹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에게 더욱 안전한 배움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경찰과 학교, 그리고 다른 지역기관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② [여가 및 놀이계획(Splash and Splash Extra)]

2000년 여름, 내무성의 범죄감소프로그램으로부터 150만파운드를 지원받아 여름방학동안 영국전역에서 100개이상 마을에서 splash scheme을 실행하였다. 이것은 소년사법위원회와 지역청소년범죄담당팀(YOT), 자원봉사자들간의 매우 성공적인 공동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1년에는 더 많은 146개 계획이 실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범죄율이 높은 지역부터 실행되었는데, 그 지역의 십대에게 방학기

간 동안 창조적인 행동과 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splash scheme는 지역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시행되었는데, 고도의 훈련된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 활동, 즉 운동, 예술, 교육, 환경활동은 젊은이가 범죄로부터 떠나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 계획이 뿌리내린 지역에서는 실제로 매년 범죄율의 감소 등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첫째에는 절도의 36%, 청소년범죄의 18% 감소를 가져왔고, 2001년에는 자동차범죄가 11%감소가 있었다고 한다.

③ [청소년포용 프로그램(Youth Inclusion Programme:YIP)]

매년 7-8만 파운드의 기금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적극적인 선도 및 재범억제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영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70개 지역에 살고 있는 13-16세의 범죄위험이 있는 청소년 중 50명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문제아들을 돕기위해 적절한 범위의 간섭과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지닌 반사회적 공격적 행동의 개선 및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YIP의 목적은 ○대상그룹의 체포율을 60%까지 감소시키고, ○YIP 지역의 범죄를 30%까지 감소시키며, ○대상집단 중 무단결석 및 소외를 최소 1/3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위험이 있거나, 결석, 학교와 사회에서의 배척받는 것으로 판단된 13-16세의 핵심 그룹이다. 대상청소년들은 다기관(청소년범죄담당팀, 경찰, 사회복지기관, 지방교육청 및 학교, 다른 지방관서와 지역사회)의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핵심사항은 바로 대상집단 그 자신에게 초점화된 지원(도움)이 제공되어야 하며, 인기있는 다양한 활동내용들을 발전시키고(가령, 또래 멘토링, 사이버 카페, 댄스강습 등), 매주 각 대상 소년들을 위한 평균 10시간 활동을 조성해야만 한

다는 점이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년사법위원회와 예방프로그램 지원평가단은 효과적 실행을 지원하고, 관리과정의 핵심을 확보하고 있다.

④ 청소년포용지원패널(Youth Inclusion and Support Panel)

소년사법위원회는 2003년 4월부터 일년동안 활동할 청소년포용지원패널(YISP) 14명의 지도자를 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위원회와 소년기 금으로부터 기금을 조성받는다 YISP는 8-13세의 범죄위험이 있는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하여, 위원들은 청소년범죄담당팀, 경찰, 학교, 공공사회단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대표들과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다. 적절한 경우에 청소년과 부모/후견인이 스스로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지역 기관들은 약물남용, 정신적 건강문제, 가족문제 또는 반사회적 행위 등 그들을 범죄위험에 처하게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청소년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위원단에 회부한다. 위원은 사안을 숙고하고,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주된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도움을 제공할 핵심인력을 공급한다.

⑤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me)

멘토링은 범죄위험에 있는 청소년과 성인자원자가 한조를 이룬다. 성인의 역할은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청소년을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관계는 조언자와 청소년사이의 자신감과 동질성에 대한 헌신과 자신감에 의해 형성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이 그들을 범죄의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를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다.

⑥ 부모훈련 프로그램(Parenting Programme)

이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아이들을 범죄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은 부모/후견인에게 아이의 습관을 조절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 등과 같은 1대1 조언을 제공한다. 청소년사법체계에 처우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특정한 사례에서 자발적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험있는 부모/후견인이 참가하도록 강요하는 [Parenting Order] 또한 YOT에 의해 행해지기도 한다.

(2) 재판전 명령

재판전 명령의 목적은 청소년이 너무 일찍 소년재판제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를 멈추도록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청소년이 최초로 곤경에 처하거나, 반사회적으로 행동하고, 작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정 밖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청소년이 반사회적으로 행동한다면, 경찰과 지역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재판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표 V-3> 재판전에 개입할 수 있는 명령들

명령종류	내 용
허용가능한 행동약정 (Acceptable Behaviour Contracts)	· 경미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확인하였을 때 · 청소년과 부모/후견인과 함께 지역사회에 말썽을 야기하는 행동패턴을 중지하고 그들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약정에 동의 · 계약조건을 위반하면, 지역기관 및 YOT는 반사회적행동명령 적용가능
반사회적 행동명령 (Anti-Social Behaviour Orders)	· 경찰 또는 지역기관에 의해 행해짐 · 타인에게 괴롭힘과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한 10세이상의 소년에게 부과 · 특정한 장소에 가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청소년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기소가능

명령종류	내 용
야간 통행금지 (Local Child Curfews)	- 야간통행금지명령이 내려지면 10세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은 저녁의 특정시간에 가정에 머물러야 함. 금지시간에 가정밖에서 발견되는 어린이는 어린이 보호 명령의 대상이 됨 - 지역행정부는 거주민들에게 괴롭힘과 놀람을 야기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특정 지역에 야간통행금지를 위해 장관에게 신청가능함. 야간통행금지는 90일까지 유지될 수 있고 10세이하의 어린이에게만 적용
아동보호 명령 (Child Safety Orders)	10세이하의 어린이에게만 적용 - 범죄를 저질렀거나, 야간통행금지를 위반했거나, 괴롭힘, 고통, 놀라게함을 다른 사람에게 유발시킨 어린이에게 적용가능 - 어린이보호명령하에서 사회복지가나 YOT의 담당자가 어린이를 감독. - 만약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린이는 주의명령 대상이 됨.

만약 그들이 한두 번의 경미범죄를 했다면, 경찰은 징계(Reprimands)나 최후경고(Final Warnings)로서 다룰 수도 있다.

(3) 소송: 보석과 구치(Bail and Remand)

법원이 사건을 연기시킬 때(사건을 다른 날짜로 이동시킬 때)는, 대개 중한 범죄로 기소된 청소년을 구치(remand)하기로 결정할 경우이다. 만약 법원이 청소년의 구치(remand)를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루어진다

<표 V-4> 소송을 위한 소년법에 대한 구치방법들

구치방법	내 용
조건부 보석 conditional bail	- 법원은 청소년이 석방 중에 재범을 하지 않고 재판과정을 방해하거나 증인에게 간섭을 하지 않고, 다음에 재판에 참석할 것을 확실히 할 경우, 조건부 보석결정 - 조건부 보석은 청소년이 어디에 있는지를 경찰서에 보고하는 낮은 단

구치방법	내 용
조건부 보석 conditional bail	- 계에서부터 청소년이 있는 곳이 YOT에 의하여 보석지원감독프로그램 감시를 받는 높은 단계까지로 분류됨 · YOT는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거나 보석감독지원프로그램의 부분으로서 집중 감독감시프로그램(ISSP)을 포함
무조건 보석 unconditional bail	· 무조건 보석으로 처우된 청소년은 특정일 특정시간에 법원에 출석할것이 요구되나, 보석에 따른 별개의 조건은 부여되지 않음
지역기관 수용 Local Authority accomodation	· 청소년 구금은 지역기관에 의해 청소년이 감시되는 것을 포함. · 보석과 마찬가지로 지역위원회수용소감금에도 조건이 부여될 수 있음 · 만약 숙식형태가 구금조건이 아니라면 지역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어떤 형태의 숙소를 제공할지를 선택할 수 있음
시설구치 (안전구금) Custody	· 안전구금은 범죄가 특별히 위험하거나, 자주 범법을 하는 청소년에게 법원에 의해 내려짐 · 안전구금된 청소년은 보통 지역위원회안전소년원 또는 안전수련센터에 배치

(4) 판결

다음은 영국의 소년재판제도에서 접할 수 있는 판결이다. 판결은 크게 “구금판결(Sentence of custody)”과 “사회복귀판결(Sentence of the community)”로 나뉠 수 있다.

구금판결에는 [Section90/91]과 [구금훈련명령(Detention & Training Order:DTO)] 등이 시행된다. ① [Section 90/91] 판결은 살인, 강간 또는 성인이 14년 이상의 판결을 받을 정도의 범죄와 같은 위험한 범죄에 대하여만 행해진다 이 판결은 형사법원에 의해서만 내려지고, 완전한 판결은 구금으로 완성된다. Section90 판결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보도시한은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 Section91 판결에 대한 보도시한은 자동으로 정해진다.

② 구금훈련명령(DTO)은 청소년에게 구금을 판결한다. 그것은 12-17세의 소년에게 내려진다. 형량은 4개월에서 2년 사이가 될 수 있다. 형의 처음 절반은 감호소에서 보내지고, 나머지 절반은 청소년범죄 대응팀의 감독아래 사회에서 보내게 된다. 법원은 청소년에게 판결의 기간동안 사회통제로서 집중감시프로그램(ISSP)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DTO는 높은 위험을 나타내고, 중요한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범죄자이고, 그들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다른 판결이 없는 청소년에게 오직 법원에 의해서만 내려진다. 범죄의 위험성은 청소년이 DTO판결을 받을 때 항상 참작된다.

사회복귀판결에는 ① 사회복귀 및 징계명령(Community Rehabilitation & Punishment Order), ② 감독명령(Supervision Order), ③ 집중감시프로그램(Intensive Supervision & Surveillance Programme: ISSP), ④ 활동계획명령(Action Plan Order), ⑤ 센터참가명령(Attendance Center Order), ⑥ 위탁명령(Referral Order), ⑦ 배상명령(Reparation Order), ⑧ 벌금(Fine), ⑨ 조건부 유예(Conditional Discharge), ⑩ 완전면제(Absolute Discharge) 등으로 세분된다.

<표 V-5> 지역사회내 처우 유형과 내용

처우종류	내 용
사회복귀 및 징계명령	사회복귀명령(Community Rehabilitation Order) · 이 판결은 16-17세의 청소년에 대하여 법원에서 발함 · 특정한 연령범위를 제외하고 감독명령과 동등 · 청소년범죄대응팀(YOT)에 의해 감독 · 배상활동 및 ISSP 또는 공격행동 대처프로그램 등이 부가되기도 함.

처우종류	내 용
사회복귀 및 징계명령	사회징계명령(Community Punishment Order) · 이 판결은 16-17세의 청소년에게 법원에서 발함. · 40-240시간동안 무료 공공근로를 요구(목수일, 하천관리, 페인트칠, 노인 장애자 돕기 등 포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팀에 의해 감독
감독명령 및 집중감시 프로그램	감독명령(Supervision Order) · 최대 3년까지가능 · 위험한 범죄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질 때 감독명령가능. 이것들은 ‘특정한 행동’이라고 불리고, 90일까지 지속될 수 있음(가령, ISSP참가, 약물치료(16세이상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또는 판결기간동안 지역기관수용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요구 등) · 감독명령을 받는 청소년은 피해자 또는 사회에 가해진 해악의 배상과, 분노관리와 같은 공격적 행동을 대처할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청소년 범죄대응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가할 것이 또한 요구됨. 집중감시프로그램(ISSP) · 감독명령의 일부 또는 사회복귀명령에 부가될 수 있음. · ISSP는 가장 지속적이고 위험한 청소년범죄자(가령, 2개월안에 4번의 범죄를 행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행한 자)에게 행해짐. · ISSP는 보석감시프로그램 또는 구금훈련명령의 부분으로 집행가능 · ISSP하에서 청소년은 주당 25시간의 교육, 범죄습관프로그램, 그들의 범죄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배상을 포함한 강한 지원을 받음 · ISSP대상 청소년에게는 전자팔찌가 채워질 수 있음
활동계획 명령	· 3개월간 지속하는 강한 사회기초적 프로그램 · 명령은 YOT에 의해 감독 · YOT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특별히 청소년의 필요와 위험에 맞춤. 그것은 사회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교육훈련, 센터참가, 그리고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을 없애 줄다양한 다른 프로그램들을 포함.
센터참가 명령	· 참가센터는 보통 경찰에 의해 운영 · 프로그램은 교육, 체력단련, 사회성 함양 등을 포함 · 명령은 범죄자의 나이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36시간까지 지속 가능함

처우종류	내 용
위탁명령	· 범죄가 구금판결이 요구될 정도로 위험한 경우지만, 청소년이 최초범죄이고 선처를 요구할 경우 위탁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위탁명령이 발하면, 청소년은 YOT직원과 지역사회의 두 명의 자원자로 구성된 청소년범죄위원회(YOP)에 참가할 것이 요구됨. · 청소년이 포함된 위원회, 그들의 부모/후견인 그리고 피해자는 3-12개월간 지속되는 계약에 동의함 · 약정은 공격적 행동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 그들의 범죄에 의해서 또는 다른 다양한 행동에 의해서 행해진 피해에 대한 배상등을 포함하며, 판결은 약정이 일단 완성되면 소멸한다
배상명령	· 배상명령은 청소년이 그들의 범죄의 결과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계획된 것으로서 피해자-가해자가 동의한다면 피해자/범죄자 중재(VOM)를 포함함. · 사회 및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야기된 피해를 배상활동(가령, 낙서를 지우거나, 공공근로작업 등) · 명령은 YOT에 의해 감독
벌금	· 벌금정도는 발생된 범죄와 범죄자의 재정상태를 반영 · 16세이하의 경우 벌금지불은 그의 부모/후견인의 책임임.
조건부 유예	· 조건부 유예를 받는 청소년은 즉각적인 징벌을 받지 않고,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기간이 정해지고 청소년이 이 기간동안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어떠한 징벌도 부과되지 않음. · 만약 청소년이 이 기간동안 다른 범죄를 범하면 법정으로 다시 소환되어 재판결을 받음. 1998년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에 따라서 법원은 이 판결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
완전면제	·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가진 것으로 보일 때 청소년에게 완전면제를 선고

한편, 모든 지역사회내 처우에는 ⑪ 야간통행금지명령(Curfew Order)²⁶⁾, ⑫ 부모훈련명령(Parenting Order)²⁷⁾, ⑬ 약물치료검사명령

26) 이 명령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시간 동안 청소년이 머무를 것을 요구한

(Drug Treatment & Testing Order)²⁸⁾ 등이 부가될 수 있다.

(5) 구금

재범의 위험성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 때문에 어떠한 대안도 적절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범죄자들은 구금판결을 받는다. 주요한 내용은 구금훈련명령이며, 더욱 위험한 범죄의 경우엔 Section 90/91판결을 받을 수 있다. 소년재판부는 청소년을 적절히 안전한 수용소를 마련·배치하고, 수용시설의 표준을 정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최근 수용시설에서 약물알콜문제, 정신적 건강문제와 교육이 잘 행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이 배치되는 수용시설에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 다 시간은 하루에 2-12시간 사이이며, 판결은 16세이상인 경우 6개월, 16세 미만인 경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27)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단결석을 하거나, 아동보호명령, 반사회적행동명령, 또는 성범죄자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부모/후견인에게 내려질 수 있다. 그것은 3개월동안 지속되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모/후견인의 범죄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부모훈련명령을 받는 부모/후견인은 상담 또는 보호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아이의 학교에 참석하고, 아이가 적절하지 않는 장소에 방문하지 않도록 감독하며, 또는 아이가 특정 시간에 집에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통제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범죄행동으로 다루어지고, 부모/후견인은 기소될 수 있다
- 28) 약물치료검사명령은 치료가 필요한 약물남용문제를 가진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사용된다. 16세 이상인 청소년에게 사용되며, 사전에 명령을 따를 것에 대한 청소년 동의가 요구된다 명령은 6개월에서 3년 사이에서 유지된다 명령하에서 청소년은 사회내에서 약물검사와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다. 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보호관찰제도의 감독을 받는다

<표 V-6> 소년구금시설의 세 가지 유형

처우종류	내 용
보호훈련센터 (소년원STC) Secure Training Centres	· STC 제도는 교육에 초점을 맞춤 재범억제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STC의 운영과 연관된 모든 서비스(교육, 수련, 기초건강관리, 치아관리, 그리고 공격행동 대처훈련 등)은 현장에서 제공 ·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정공동체와 연관된 양육업무를 수행하는 헌신적 인적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소년범죄자에 대한 높은 직원비율(최소한 8명의 수련생에 3명의 담당자)로 대응하며, 시설규모도 소규모로 구성됨 · 센터는 17세까지의 소년범죄자를 안전한 교육환경속에 구금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서, 내무부와의 계약에 따라 세부운영조건을 충족하며 개인운영자에 의해 관리됨. · 현재 영국에는 3개의 안전수련센터가 있음 - DURHAM주의 HASOCKFIELD - RUGBY의 RAINSBROOK - KENT의 MEDWAY
지방청 보호아동의 집 (LASCH) Local Authonty Secure Chidren's Home	· 보호아동의 집은 위탁된 청소년의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습관적 필요를 보살피는 것에 초점을 맞춤 청소년에게 개인별 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 · 소년수에 대해 높은 비율의 담당자를 보유하고, 일반적으로 5-38침상의 작은 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12-14세의 소년범죄자를 수용하는데, 여자의 경우는 16세까지, 상처받기 쉽다고 평가되는 15-16세의 소년도 수용가능
소년교도소 (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	· 이 시설은 교정청(prison sevice)에 의해 운영 · 15-21세의 청소년을 수용하며, 소년재판부는 18세이하의 청소년만을 보호훈련센터(소년원)에 배치하므로, STCDHK LASCH보다도 보다도 나이드 청소년을 수용하는 경향 · YOI는 STC와 LASCH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직원비율이 낮고,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청소년을 수용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청소년의 개인적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이 낮다 YOI는 일반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청소년범죄자들에게는 부적절한 수용소로 간주됨.

3) 유럽

(1) 소년사법체계와 연령범주

미국과 영국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의 모든 나라들 역시 소년처우를 위한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시스템은 대체로 복지적 접근(처벌은 배제하거나 청소년들의 특별한 필요를 지원하는 것)에 의해서 발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럽 각국은 다음의 다섯 가지 처우방법을 각자의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구조화시키면서 “정의-복지모델의 균형”을 추구해왔다.

- ① 순전히 응보적 형벌시스템(P)
- ② 교육적 관심(exception)과 결합한 형벌적 개입(PW)
- ③ 특별한 소년사법 시스템(JLP)
- ④ 형벌적 개입(exception)과 결합한 복지적 접근(WP)
- ⑤ 순전히 복지적 접근(W)

이와 같은 개입유형들은 각국의 소년사법 체계내에서 연령범주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비행의 점차 저연령화되어 가면서, ‘아동비행(Child Delinquency)’ 대응에 대한 형사정책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조사연구결과들은 효과적인 비행 예방 및 재범대책이란 결국 비행조기예측(행위위험성평가)과 조기의 집중적 개입(early intensive invention)이 범죄발전에 주요한 관건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각국에서도 비행소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입연령의 하한 및 상한선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연령범주별로 개입(invention)의 법적 성격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유럽 각국에서 연령범주별로 어떻게 처

우하는지, 그 개입방식을 간략히 개관해 보기로 한다.

<표 V-7> 각국의 소년사법체계에서의 연령범주들

연령	벨기에	덴마크	독일	잉글랜드 & 웨일즈	프랑스	이태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코틀 랜드
21	형법	형법	형법	형법	형법	형법	형법	형법	형법
20	형법	형법	형법 (+복지)	형법	형법	형법	형법	형법	형법
19	형법	형법	형법 (+복지)	형법	형법	형법	형법	형법	형법
18	형법	형법	형법 (+복지)	형법	형법	형법	형법	형법	형법
17	복지 (+형법)	복지 (+형법)	소년 형법	소년 형법	소년 형법	소년 형법	형법	소년 형법	형법 (+복지)
16	복지 (+형법)	복지 (+형법)	소년 형법	소년 형법	소년 형법	소년 형법	소년 형법	소년 형법	형법 (+복지)
15	복지	복지 (+형법)	소년 형법	소년 형법	소년 형법	소년 형법	소년 형법	소년 형법	복지 (+형법)
14	복지	복지	소년 형법	소년 형법	소년 형법	소년 형법	복지 (+형법)	소년 형법	복지 (+형법)
13	복지	복지	복지	소년 형법	소년 형법	복지	복지 (+형법)	소년 형법	복지 (+형법)
12	복지	복지	복지	소년 형법	복지	복지	복지 (+형법)	소년 형법	복지 (+형법)
11	복지	복지	복지	소년 형법	복지	복지	복지 (+형법)	복지	복지 (+형법)
10	복지	복지	복지	소년 형법	복지	복지	복지 (+형법)	복지	복지 (+형법)
9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형법)	복지	복지 (+형법)
8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형법)	복지	복지 (+형법)
7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형법)	복지	복지
6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복지

자료 : Walgrave, L. 외(1998): 3-4쪽

일반적으로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형법상 성인(majority)연령과 민법상 성인연령은 일치한다²⁹⁾ 하지만, 형사책임연령은 매우 다양하다. 영국에서 비행청소년은 10세부터 기소될 수 있다. 스코틀랜드는 이론적으로는 이보다 어린 8세부터 가능하다. 아일랜드에서는 심지어 7세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원칙은 그들을 복지적 처우로 다룬다는 것이다. 반면, 벨기에의 경우 비행소년은 16세부터만 기소될 수 있다. 물론 이 또한 매우 드문 경우이다. 실제, 소위 ‘보호적’ 처우는 처벌적 함축(연상)으로 부과되곤 한다. 최소연령 이하의 비행소년에 대한 개입은 복지적 문제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원칙상, 범죄소년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우되고, 도움을 받으며, (재)교육된다. 이러한 경우에 “강제되는 처우”는 선택적일 수 있다.

형사책임 최소연령과 형사성인연령사이에, 연령범주와 개입가능 종류는 상당히 다르다. 대부분 국가(벨기에·프랑스·네덜란드·스코틀랜드·영국웨일즈)에서, “16세”는 결정적이다. 그 연령 미만에 대해서는 복지적 접근이 대부분 원칙이며, 형법적 접근은 예외적이다. 16세 이상에 대해서는 처벌적 접근이 점차 중요해지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벌적으로 다룬다. 한편, 덴마크의 경우에 정식형사재판은 15세이상의 비행소년에게 관할·적용되지만, 수많은 교육적 및 사회지향적 예외와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소년법원이 18세까지 관할하도록 남겨있지만, 이론적으로는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고, 다만 ‘보호적’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 16세부터, 소년법원은 사건을 정식형사재판에 의해 기소할 목적으로 ‘검사(public prosecutor)’에 사건을 회부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덴마크(15세까지) 및 스코틀랜드(16세까지)는 복지주도적 정책이 너무 강하여, 법원이 아닌

29) 논리적 분류상 약간의 예외가 존재하는데, 잉글랜드의 경우 21세이하 유죄확증자는 청소년범죄자를 위한 특별한 구금(Custodial) 시설에 가둘 수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18-20세까지의 젊은 청년들은 소년법원의 관할에 놓이며, 소년법원법에 따라서 기소될 수 있다.

“지역복지국(Local Welfare Authorities, DK)” 혹은 “아동청문회(Children’ Hearing, SC)”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강제적 처분 부과기관

유럽각국에서 다양한 조직들이 비행청소년과 그의 가족들을 다루는데 활동한다. 그러나 어떤 기관이 강제적 처우를 부과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바로 여기에서 복지모델과 사법모델간의 긴장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덴마크와 스코틀랜드의 경우, 특별한 소년법원이 존재하지만, 그 조직과 권한은 다르다. 아일랜드의 경우, 유일한 전문아동법원이 더블린에 존재하지만, 소년범죄자들은 특정 사법관할구역의 지방법원에서 성인과는 별도로 다루어진다.

벨기에·프랑스·이태리·네덜란드의 경우, 소년법원은 미성년자의 교육환경(조건)의 보호를 위한 처우부과라는 측면에서 소위 ‘민사적’ 또는 ‘보호적’ 관점으로 집행한다. 소년법원과 소년형법의 명시적인 복지적·교육적 지향성은 그에 따른 개입을 이끌어낸다. 이태리·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소년형법은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처벌은 가능한 한 새로운 (재)교육으로 부과해야만 한다. 벨기에에는 소년을 위한 형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법적 소년보호(judicial Juvenile protection)’ 절차에 의해 다루어진다.

독일과 영국·웨일즈에서 소년에 대한 사법관할권은 복지적 개입과는 엄격하게 분리된다. 독일의 경우, 강제적 복지개입은 지방 후견법원 <Vormundschaftsgericht>에 의해 명령이 발하고, 반면, 비행자에 대한 제재는 소년법원 <Jugendgericht>에 의해 부과된다. 영국웨일즈의 경우, [Family Proceedings’ Panel of Magistrates’ 법원]이 전자에 해당하고, 소년법원 <Youth Court>는 후자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문판사가 소년법원을 담당하지만, 이태리 같은 곳에서는 두 명의 비전문적인 관찰자(observer)가 맡기도 한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소년형법재판(관할)은 3단계로 구성된다. 직업판사는 덜 심각한 사건들만을 관장한다. 좀더 심각한 사건들은 판사와 평가자 “assesseurs”로 구성된 고등(중급)법원 “intermediate court”에 의해 청문이 이루어진다. 가장 심각한 범죄유형의 경우에 미성년자는 소년지원법원 <Cour d’Assises des mineurs> 혹은 <jugendkammer>에 회부된다.

영국·웨일즈에서 소년법원은 3단계 수준의 치안판사들(magistrates)이 담당한다. 교육적 동기가 선고에 매우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관심은 개인, 지속성 및 비행심각성, 그리고 지역사회와 통상적 범감정 등에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사법정의적 지향성이 복지지향성보다는 좀더 강하게 작용한다.

한편, 스코틀랜드와 덴마크에는 소년을 위한 특별한 법원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덴마크에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부조제도를 다루는 ‘지방 복지국’이 15세까지의 아동들에 대해 관할한다. 그들의 일차적 업무는 ‘지원(help)’이다. 만일 강제적 처우가 수행된다면, 부모와 아동은 법률가의 도움을 가질 수 있다. 15세부터의 모든 비행소년들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지만, 18세까지 특별한 절차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따라서 복지국이 사법권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형벌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칙과 체계가 비행청소년들에게 적용된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아동청문회(‘Children Hearing’)는 16세까지의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이다. 매우 심각하고 기술적인 범죄를 저지른 소년(8세부터 정식법원에 설 수 있다)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년범죄자는 아동청문회(Children’ Hearing)에 사건 회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사관(‘Reporter’)에 위탁된다. 또한 교육상의 방임과 다른 비행사건들 역시 여기에 회부된다. 청문회는 3명의

비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구(제도)는 아동이 강압적 보호처우가 필요한 상태인지의 여부와 그 처우내용만을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사업국(Social Work Department)와의 협력은 매우 긴밀하다. 16세부터, 비행소년들은 이미 아동청문회에 의한 감독하에 있지 않는 한, 정식형사재판에 나설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엔 아동은 18세 생일이 되기까지 복지국의 관할권 하에 놓여 있다.

(3) 청소년범죄자 처우와 처벌

공식적 소년사법체계상의 주요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된다.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소년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형벌적 접근과 복지지향적 접근의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덴마크에서 가장 뚜렷하다. 네덜란드·프랑스·독일·이태리 등에서는 (소년)판사가 범죄대응을 결정할 수 있거나 소년범죄를 복지문제의 신호로 간주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지향성은 15세까지는 매우 강하지만, 이후에 대해선 형법이 보다 중요해진다.

이론적으로 벨기에는 복지지향적 접근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몇몇 복지적 처우는 사실상 형벌적 처우로서 시행된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영국·웨일즈(및 아일랜드)의 경우, 법적 대응은 보다 형식적으론 응보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매우 많은 복지적 고려사항들이 재판권에 적용되며 조건부로 부과되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수행하는 처우방법에는 거의 동일한 누진적 체계(gradation)를 구성하고 있다.³⁰⁾

30) 앞서 제시한 영국의 처우단계와 개입방법을 참조하기 바람

- 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경고('cautioning' 혹은 'warning')
- 조건부 감독명령('Supervision with conditions')
- 대리가정(foster families) 혹은 시설(institution) 위탁
- 폐쇄시설 위탁(유치)('Placement in a closed institution')
- 구금(감금 detention)

모든 곳에서 비행청소년들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될 수 있지만, 이 또한 교육적 동기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제로 비행소년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만들어지는 준거는 처벌적 처우가 필요할 때이다. 벨기에의 경우 교육적 처분이 '폐쇄적 공공시설유치'로 부과되며, 덴마크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폐쇄적 사회/교육시설'은 교도소를 대신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폐쇄된 청소년형벌제재는 '교정학교(correctional school)'에서 대신하고, 이태리의 경우 '공인된 학교(approved schools)'에서 처리하며, 영국·웨일즈의 경우 15세부터의 비행소년들을 <소년교도소>에 구금할 수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 단기간의 규율적 구금 혹은 특별한 소년구금소(소년원 youth custody houses) 혹은 소년교도소에 구금하기도 한다.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처우(measure)란 지역사회를 위한 일종의 안전조치, 비행자에 대한 처벌의 측면과 교육적 목표 사이의 일종의 타협을 의미한다. 심각한 자유박탈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처분된다.

한편, 16세부터의 비행소년들은 일반교도소에 투옥될 수 있지만, 여기에도 특별한 체계가 이용된다.

<표 V-8> 각국의 청소년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강제적 처우내용

벨기에 17세까지	복지체제로 위탁(refer) 징계(reprimand) 감독(supervision+조건부) 가정/시설유치 폐쇄시설유치(최대20세)		16-17세 성인법원에 회부
덴마크 17세까지	14세까지 모든 종류의 이동 및 거주 보호(care)	15-17세 소년을 위한 특별규정하 형사 법원 기소유예(복지X) 집행유예(+조건부 복지X) 벌금 / 시설내 처우 '사회교육'시설내구금(최대 8년)	
스코트랜드 15세까지	15세까지. 면제(discharge) 감독명령(사회봉사X) 거주감독(사회봉사X)		8세부터: 매우 심각하고 전 문적 범죄의 경우 엔 성인법원
네델란드 12-17세	요보호아동으로서 복지사 법관할권에 회부	징계(reprimand) 벌금/보호관찰(probation) '교정학교'에 보호구금(custody) (최대 2년)	16-17세. 성인법원에 회부
프랑스 13-17세	귀가조치 징계 감독명령(+조건부) 가정/시설에 유치	봉사명령(service order)/ 벌금 보호관찰(probation) 최대 성인1/2보호구금(custody)	
이태리 14-17세	용서(pardon) 이해무능력으로 소송기각 (복지X)	보호관찰(최대 1년 혹은 3개월) '공인된' 학교에 보호구금(custody) -최대 성인의 2/3	
영국 10-17세		면제(+조건부) 부모에 대한 처우(의무서약, 벌금, 보상명령) 센터참가(attendance centre)(최대 24/36시간) 감독(+조건부) 15세부터 소년범죄자수용시설에 구금(detention) 16세부터. 보호관찰(+조건부)/지역사회서비스 10세부터, 14세 혹은 16세 구금(detention)	

독일 14-17세	교육적 처우 . 교육적 지시(directives) 교육적 지도(guidance) 시설내 교육	벌금, 피해와 손해비용지불(부모의 지불의무) 부모에게 선행 보증명령 12세부터 reformatory 교정학교(2-4년) 15세부터 징역(imprisonment) 16세부터 지역사회 서비스/구금(detention)
아일랜드 7-16세	14세까지 : 복지체계에 회부 산업학교(최대 16세까지) 감독명령/보호관찰 관리 적절한 사람에 의한 보호	규율적 처우: 징계(reprimand)/ 규율명령(discipline orders) 보호구금(custody, 최대 4주) 징역(imprisonment) 징역유예(최대2년)+보호관찰명령 징역(최소 6월-최대5년)

유럽각국의 소년법 처우내용에 있어서 사실상의 유사성은 그들이 이론적으로 채택하는 상이한 체계(명명법) 때문에 희석되고 있다. 가령, [폐쇄시설내 구금(confinement)]을 덴마크는 일반형법의 부분에 근거해서 실행하는 반면, 네덜란드·이태리·독일 등에서는 특별한 소년사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벨기에는 순전히 교육적 처우로서 다룬다. [경고]는 독일에서는 규율적 처우(disciplinary measure)로서 일종의 전환처우의 성격을 지닌다. [지역사회봉사명령] 역시 기소단계에서 전환처우를 위한 기회로서 제시되거나, 교육적 지침(educational directive) 또는 규율적 처우(disciplinary measure) 혹은 심지어 독일의 경우엔 법원에 의해 보호관찰을 위한 조건으로서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벨기에는 교육적 감독조건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네덜란드에서는 전화처우(diversion) 수단이거나 보호관찰조건일 수 있다. 이태리·영국·아일랜드에서는 ‘경고’가 소년형법사법내 특별한 제재이기는 하지만 16세 이후 소년에게만 부과될 수 있다

영국·웨일즈·아일랜드에서는 매우 독특한 소년사법의 <처벌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소년형법에 구속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부모들이 일정한 처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들 나라의 ‘허용가능한 행동약정’ 또는 ‘부모훈련명령’

등은 위험에 처한 아동(비행소년을 포함하여)에 대한 ‘보호적 사법권(protective jurisdiction)’의 하나로써 행해지는 것이다.

(4) 유럽 국가들의 청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전략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범죄예방전략을 일반적으로 요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예방(prevention)이란 가장 일반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이슈라는 점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예방’은 범죄통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내용은 개인에 대한 조기탐색 및 의학적으로 지향된 각종 치우 프로그램으로부터, 구체적인 위험상황의 ‘target hardening’을 위한 기술적 전략(방법)들을 거쳐, 사회경제적으로 일반화된 정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난 10년간 유럽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에서 다소 공통적인 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중앙정부, 특히 법무부와 내무부가 혁신적인 예방정책을 고양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³¹⁾
- ② 지방수준에서 각 기관들의 참여는 결정적이다. 지방자치기관들은 매우 중요한 핵심동력이자 조정자이다.
- ③ 범죄예방은 경제사회적 통합, 합리적인 주택 및 생활조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 ④ 많은 프로그램들은 개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임상적 접근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 임상과학의 새로이 발전된 Tools과 더불어

31) 프랑스의 경우, ‘비행예방국가위원회(Conseil Nationale de Prevention de la Delinquence)’에서, 덴마크에서는 ‘덴마크범죄예방위원회(Danish Crime Prevention Council)’에서,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와 범죄 프로그램(Society and Crime Programme)’에서, 영연방에서는 ‘보다 안전한 도시 프로그램(The Safer-cities Programme)’이 도입되었고, 벨기에서는 ‘Permanent Secretariat the Prevention’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어 다기관간 협력(multi-agencies cooperation)형태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project가 수행되고 있다.

- ⑤ 네덜란드와 영국·웨일즈에서 특히 ‘상황적 예방’ 전략은 잘 발전되었다. ‘상황적 예방’ 프로그램의 장점은 범죄감소에 있어서 분명하게 측정가능한 목표를 규정하고, 단순하게 잘 규정된 활동들을 수행하며, 그리고 제한된 시간 후에 평가를 수행하는 등 ‘no-nonsense’ 태도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단기간에 측정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고, 정부기관들이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끌어들이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범죄문제 배후의 배경이 되고 있는 폭넓은 사회문제를 무시한 채, 제한된 활동에 머무는 문제점이 있다.
- ⑥ 이태리·덴마크·벨기에·프랑스 등에서는 ‘통합적 예방’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통합적 예방(integrative prevention)’이란 좀더 폭넓은 예방적 접근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활동가들에 의해 조정되고, 범죄예방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목표로 사회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상황의 재생산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방법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VI. 한국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1.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정책
시사점
2. 사법적 처우의 현안과제와
발전동향

공 백

VI. 한국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1.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정책 시사점

범죄예방과 방지대책에 있어서 본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재정리해 보기로 한다. 특히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처우효과의 한계와 조기개입의 중요성

범죄경력에 발전할수록 범죄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① 소년들의 범행이 거듭될수록 재산범죄에서 폭력범죄로 옮겨가고, 폭력범죄에 있어서도 보다 흉폭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② 범죄의 전문화 경향은 폭력범죄자보다는 특히 재산범죄자에게서 더 두드러졌으며, ③ 범행이 거듭될수록 단독범행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범죄경력발전에 따라 대담성도 커지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기존 소년보호정책과 사법적 처우관행들이 과연 비행청소년들의 재범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또 다른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나이에 경찰에 체포될수록 범죄를 더 많이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조발비행 또는 조발범죄는 향후 범죄경력을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자의 30% 이상의 최초체포연령은 13세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즘 신체적 성숙이 빨라지면서, 유해환경에 조기 노출됨과 동시에 가솔 및 비행가담 연령도 점차 저연령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 10년 동안 소년법원에서 다루어진 아동범죄(7-12세)가 33%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이들이 “보다 심각하고

폭력적인 고질적 범죄자”로 발전할 개연성이 보다 나이 많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3배가 높다는 분석결과(Snyder, 2001)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²⁾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범죄 사건들(특히 학교폭력 및 성폭력 등)이 빈발하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촉법소년(12-14세) 뿐만 아니라 12세미만 아동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미 살펴 본 것처럼, 최근 각국의 범죄 예방정책의 핵심은 이제까지 소년형사정책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7-12세 사이의 아동들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early invention and preven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각 연령단계별 이행기적 특성에 초점을 둔 각종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과거의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서 향후 재범가능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년들이 경험하는 각종 문제행동의 유형이 이후 같은 유형의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들은 사소한 문제행동을 통해 점차 위험에 처하는 어린 청소년들(7-12세)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2) 초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범후 6개월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던 경우가 48.9%나 되고 있으며, 1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72.9%에 달했다. 최초 처분과 재범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석방된 소년의 재범횟수는 3.92인데 비해, 비수용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3.67, 수용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3.50으로 최초 범죄에 대한 처분결과에 따라 재범횟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최초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재범억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32) 미국 OJJDP의 [Child Delinquency Bullem Series]를 참조하기 바람.

범죄시 수용처분보다는 비수용처분이나 경찰에 의해서 훈방 조치되는 소년들이 이후에 범죄를 더 많이 저질렀다는 사실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아동범죄(Child Delinquency)”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근거와도 일치한다. 초범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책임” 문제를 회피하도록 만들며, 지나치게 관대한 처우는 오히려 “제재의 긴장과 두려움”을 해제시켜 버림으로써 법 준수의 가치를 부식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몇몇 주요 연구들은 최초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legal sanctions)이 어떠한 것인가 향후 범죄경력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물론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엄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초범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이미 소년이 위험상황에 빠져있다는 신호이다. 미국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종합전략이 예시하듯, 조기에 비행소년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재범억제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초범자에 초점을 둔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과 전략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학생의 신분변화와 재범으로의 강화효과

조사에 따르면, 초범이후에 신분변화를 겪는율이 36.5%로 상당수가 급격한 신분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재통합의 어려움을 겪을 개연성이 큰 만큼 많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년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는 문제아로 낙인을 당하고, 그로 인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힘들어진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범에 학생인 신분을 가진 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신분의 변화라는 요인이 재범횟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

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첫 번째 범죄시 학생 신분인 소년들이 외형적인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 재범을 많이 저지르기 보다는 다른 요인들로 인하여 범죄를 다른 신분을 가진 소년들보다 더욱 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소년들의 신분변동으로 인한 좌절감 등이 향후 이들 범죄가능성과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분변화로 인한 소외감·좌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조사결과는 범죄소년들의 처우방법에 있어서는 가급적 학생의 신분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다룰 수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개입전략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신분변동]은 브레이스웨이트(1989)가 재범방지체계로서 들고 있는 일상적 삶에서의 공동체소속감, 재통합적 수치심, 상호의존성의 효과적인 실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책실행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대목으로 판단된다.

4) 부모의 감독활동이 재범억제에 갖는 중요성

조사결과, 부모의 통제활동의 강화는 일정부분 이후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의 변화에서는 기존 친구와의 사이의 변화는 상관없이 없고 새로 나쁜 친구를 얼마나 사귀었는가 그리고 기존 친구와 더 많이 어울리게 되었는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모의 적절한 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며, 그 초점은 기존 친구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에 두기보다는 새로이 나쁜 친구를 사귀지 못하도록 하거나 기존 친구와 예전보다는 더 많이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모훈련명령(Parenting Order)]이나 [허용가능한 행동약정(ABC)]과 같은 처분을 소년처우제도와 결합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5) 법과 사회에 대한 의식

조사에 따르면, 소년들의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가 재범가능성과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법의식과 사회에 대한 편견제거 내지는 적대감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폭력범죄의 재범가능성에 있어서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 자아개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소년으로 하여금 분노조절 및 문제해결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아통제능력을 길러 주고,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 및 상호의존감을 확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이 밖에 위협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낙인이나 배제가 아닌, 다체계적 재통합과정에 흡수시켜 법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재범 발전기제로서의 낙인효과

조사결과, 처벌의 두려움은 재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 비해, 낙인의 인지는 소년들의 재범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낙인인지의 정도에 따라서 소년들의 전반적인 재범가능성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즉 시설 내에서의 효과적 처우를 통하여 재범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만,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 자체가 갖고 있는 낙인인지의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얼마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엄격한 처벌)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각종 처우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가가 핵심 과제라는 사실이다.

7) 시설처우에 대한 시사점

재범가능성에 있어서 현재 수요시설에서의 경험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설 내에서 ‘참여·몰입’과 ‘정서적 지지’의 경험 등은 주로 강도, 폭행, 강간과 같은 폭력성 범죄의 재범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자율성·책임성’과 같은 요인들이 애정을 기반으로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한 경우, 행위의 통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소년들로 하여금 각종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구성원간의 정서적 “지지와 관심”을 북돋는 것은 향후 재범가능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교정시설내의 각종 처우프로그램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특히 폭력성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법적 처우의 현안과제와 발전방향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기에서는 범죄청소년의 재범억제를 위한 효과적 정책방향과 개선방안들을 정리한다. 제 V 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년사법제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 운영 및 정책수행에 있어서 크게 변화되고, 다각화되는 추세이다. 변화추세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역사회중심 처우정책(중간처우의 확대)
- ② 민간분야의 참여확대
- ③ 새로운 처우 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추구
- ④ 다체계적·통합적 예방전략
- ⑤ 사회-임상과학적 접근과의 결합

변화의 배경에는 기존의 사법기관 중심적이고, 사후대책에 초점을 둔 처우방법의 비효과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현행 처우방법이 청소년들에게 낙인의 오명을 가져오거나, 신분변동으로 인한 상실과 좌절감이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오히려 방해한다면, 오히려 범죄경력을 발전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과 정책방향은 설득력을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범죄자 처우정책과 방향은 청소년 개인의 위험요소(risk factor)에 대응한 개별화된 적절한 개입(보호요소 확충) 전략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중심처우를 통해 낙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재통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정책적 입장에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와 이행되어야 할 변화들에 대해서 지적해 보기로 한다.

1) 소년사법제도 개혁과 처우시스템의 개선

: 처우의 차별화와 누적적 제재의 강화

현행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법적 처우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결여

현행 우리의 소년형법은 검사선의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사건처리가 기소편의주의에 의거하여 결정됨으로 소년보호이념과 정책이 충분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³³⁾ 더욱이 현행

33) 실제로 최근 10년간 범죄소년에 대한 평균 기소율은 무려 36.3%에 이르며, 구공판율은 약 14%가 넘는다. 이에 반해 소년법원 송치율은 약 13%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율이 절반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 실무관행에서 검사는 소년을 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다루기 보다는 불기소하든지 아니면 기소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

제도에서는 적절한 중간 개입절차와 프로그램이 없음으로 인하여, 재범률이 가속되는 경향이 있다. 가장 극명한 한계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에서 드러난다. 현재 소년범죄자 2명중 1명꼴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있고, 이중 기소유예처분이 약 39.4%이다. 하지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재범률이 1997년 5.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13.3%라는 점은 소년범의 다루는 현행처우방식과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

② 처우의 개별화와 과학화의 필요성

소년법에 대한 비행성 진단업무를 전담하는 분류심사원 위탁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보호자위탁 인원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최근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입원자중 56%가 3회이상의 누범소년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서, 처우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구속상태로 소년부에 송치되는 대부분의 범죄소년은 특별한 진단이나 환경조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에게 다시 위탁되는 등 종전의 비행환경에 노출되어 재범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년사법제도 및 처우과정들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여러 절차와 단계들의 개입목표와 원칙들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종합전략은 청소년 비행정도에 따라 변화 달라져야 한다. 이 전략은 크게 예방(Prevention)과 누진적 제재(Graduated Sanctions), 그리고 사후관리(After Care)를 목표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예방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비행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누진적 제재는 일단 범법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후적 복지지원을 통해 적응력을 키우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비행의 정도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로 올라갈수록 제재의 강도가 커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중간처우와 지역사회시설 수용에 해당하는 처우형태가 없다. 그 결과, 개입 프로그램의 수준에 있어서, 소위 “위기개입과 관리”라는 이념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급격하게 교정시설 수용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비행정도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합리적인 누적적 제재의 제도화와 단계적 처벌강화가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그로 인하여 재범률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야기되고 있으며, 청소년 처우프로그램 및 대책의 전반적인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년사법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범죄억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차별화와 누적적 제재의 원칙하에 종합 대책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비행성향(위험성 정도)에 적절한 처우단계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각 단계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들이 시급히 연구·개발될 필요가 있다.

2) 범죄위험성(JOB) 지표분석의 과학화 및 내실화

소년사법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특별한 보호절차나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사실상 처분 전의 단계에 개인에 대한 환경과 특성 등 충분한 사전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상 소년사법제도의 성패는 바로 소년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조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성인형사절차와 분리하여 소년범을 처우한다는 의미는 상실될 것이다(윤용규 외, 2000:65). 사실상 형사사법기관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범죄예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은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위험집단이 누구인지를 판별하고, 이러한 목표 집단(target group)의 위험요소(risk factor)를 제거하고 보호요소(protective factor)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범예측”은 적절한 처우선택과 개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국에서는 다양한 개입전략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적절한 프로그램 대상자(target) 선정하기 위해 범죄예측 위험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싱가포르 소년법원에서는 피의자 양형(처분)을 객관화하고 개별화하기 위해, 재범위험평가를 위한 청소년범죄자행위(Juvenile Offender Behavior) 지표를 개발·시행하고 있는 것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발달심리학과 범죄학적 임심적 및 통계적 예측과 결합된 사법적 평가과정(judicial evaluative process)으로서 기능한다 이것은 회복적 사법 이념-억제와 처벌 뿐만 아니라 재활과 회복의 균형적 목표를 추구하는 제도-과 맥락을 같이하며, 개별화된 전인격적인 재활(사회복귀)을 향한 보다 효과적인 미래과정의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다양한 개별적 생활사를 고려하여 청소년 범죄자들은 개별적으로 분류·평가한다. 이것은 누진적인 제재명령과도 일치한다고 한다.³⁴⁾ 판사는 보호관찰관에 의해 준비된 판결전조사 보고서에 기초하여, Panel Advisor과의 협의하에 각 기소된 청소년에 대한 판결(결정)을 내린다. 이 판결전 JOB지표를 부가함으로써, 제재결정에 있어서 다-체계적 선택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한다.

현대 형사사법제도하에서는 처우의 개별화 및 처우방법의 다각화가 발전되고 있기 추세이고, 지역사회기반 처우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34) www.laegazette.com.sg/2001-7/July01-focus.htm 참조. “JOB”에서 중요한 평가요인들은 “범죄의 심각성”, “위험수준-static risk & dynamic risk-”, “사건이후의 관련요인들” 등을 종합 점수를 산정한 후 특별한 사정(special assessment)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표에 대응한 누진적 명령을 부과한다

것이 요청되는데, 각 정책의 효과성은 결국 정책에 적절한 대상자 선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측기술의 적정화는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들을 통해서 재범위험예측을 위한 범죄행위지표(JOB)를 과학화하고, 제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3) 조기 개입의 제도화

소년범죄는 점차 저연령화되고, 지위비행자들은 증가추세이지만, 우리의 현행 제도상 이들에 대한 뚜렷한 개입전략은 없고 거의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다. 조기개입의 부재 또는 초기의 지나치게 관대한 처우는 오히려 재범 및 범죄경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최근 미국 범죄예방 프로그램(1994)은 무엇보다도 조기개입을 강조한다. 다양한 연령층의 필요와 비행위험에 따라 프로그램이 분화되어 있다. 중학교 학령기의 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그에 앞서 영유아기 및 초등학교로부터 아동기 전 과정의 이행기적 특성을 반영한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가족의 기능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특성이 강하다. 호주의 '폭력에 대한 국가위원회 보고서(1990)'에서는 어린시절의 경험과 가정에서의 양육과정이 청소년 범죄예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적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미국의 방문간호 프로그램은 가능한 미혼모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양육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내 폭력을 예방하고, 적절한 자녀양육 모델을 제시하여 폭력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정책의 하나이다(최영신, 2001: 171-173).

4) 지역사회중심 개입전략과 민간참여기반의 확대

청소년 비행예방과 선도라는 정책목표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들에 대한 사전예방 환경의 조성, 특히 가정, 학교, 사회간의 지원체계구성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적절한 개입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의 새로운 범죄예방정책은 “상황적 전략” 또는 “통합적 예방전략”을 중시한다 기본적으로 가정 요인을 강조하지만, 직접 개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교요인, 학업, 또래요인 등 일상적 삶의 연결망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중시하여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를 존중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대체로 소수집단의 결손을 보완하고 상황적 위험요소의 제거해 주는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내처우와 중간처우(개입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되면서, 비행예방 및 선도보호분야에서 시민의 참여 및 자원의 연계망 확보 등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보강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향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할 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기반 비행예방 프로그램
- 비행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방안
- 분노조절서비스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의 지원
- 가출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 개발과 자원활용 방안
-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취업대책 및 근로조건의 보호
-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의 적극적인 제검토
- 소년분류심사원의 개방화: 청소년 위기개입센터화
- 판결전 조사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5) 비행예방을 위한 환경의 조성 과 프로그램 개발

: Diverison과 즉각적인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

범죄예방의 목적은 범죄의 높은 위험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확인하고 그들이 소년사법체계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국과 영국에서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실행 예를 참조할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 예방단계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적극적으로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³⁵⁾

- ① 안전한 학교만들기 공조(Safer School Partnership)
- ② 여가 및 놀이계획 프로그램(Splash and Splash Extra)
- ③ 청소년포용프로그램(Youth Inclusion Programme)
- ④ 청소년포용·지원패널(Youth Inclusion and Support Panel)
- ⑤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me)
- ⑥ 부모훈련 프로그램(Parenting Programme)

또한, 초범자나 경미한 재범자를 위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전략은 Diverison을 통한 즉각적인 개입전략이다. 플로리다 사법부의 ‘집중적 전환처우 서비스(IDDS)’ 및 캘리포니아의 “8%의 해결”과 같은 조기개입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초범자에 대한 집중적인 조기개입이 재범자가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이들의 교훈을 경청해야 한다.

35)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 V 장 참조.

6) 다기관 협력체계의 제도화

외국의 소년사법제도 및 처우정책이 예전의 사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기관 협력체계(multi agencies partnership)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1980년 후반부터 소개되면서 최근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에 작용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지역사회내의 여러 관계기관들, 가정, 학교, 종교기관, 상담기관, 여가시설, 행정기관, 보호관찰기관, 그리고 경찰 등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되어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사항이 되고 있다.

우리는 영국의 청소년범죄대응팀(YOT)에서 다기관 협력체계의 모델을 배울 수 있다. 현재 YOT는 영국 소년재판제도의 성공열쇠이다. 모든 지역기관에 YOT가 있다. 그들은 경찰, 보호관찰국, 사회보전, 건강, 교육, 약물과 알코올 남용, 주택문제 등의 공무원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YOT는 소년사법서비스의 업무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YOT매니저에 의하여 관리된다. YOT가 다양한 범위의 공공단체의 혼합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인 방식으로 청소년범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YOT는 국가적 평가기준으로 청소년범죄자들을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확인한다. YOT는 청소년들이 타인에게 나타내는 위험성을 측정함과 아울러 청소년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특정한 문제도 확인한다. 이것은 YOT가 더 이상의 범법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청소년의 욕구를 대처하는 적당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7)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새로운 처우제도 도입

소년사법체계의 발달과정 속에서 선진 각국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두 가지 원칙-사법모델과 복지모델-간의 종합 또는 타협(절충)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사실상 두 가지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타협가능하지 않다. 처벌은 과거의 사실, 즉 범죄에 관련된 것이며, 범죄란, 개입과 개입정도를 결정하는 근거이기도 한다. 그것은 합법성과 비례성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적 처우란 미래의 대상, 즉 독립적이고 동조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처우는 더 이상 결정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needs)에 연결되며, 이것은 법률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범죄행위와의 연결은 점차 모호해지고, 비례성은 더 이상 역시 예측될 수 없으며, 공판의 절차적 보증도 희미해지고 있다.³⁶⁾ 일반적으로 형법과 교육적 원칙간의 조합은 두 시스템의 단점만을 혼합한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은 후퇴하였고, 교육적 질(효과) 역시 의심스럽다. 지난 세기동안 이와 같은 비판들은 처우와 처벌선택에 다양한 생각들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과연 민주적 헌법국가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복지적 이익을 결합하여 이상적인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각국은 이와 같은 딜레마로부터의 탈출구를 ‘회복적 사법’이념에서 제시한 새로운 대응모델에서 찾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소위 ‘대안적 제재’로 불리는 실험들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해자 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과 지역사회봉사명령, 가족집단 회의

36)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최근 국제기구들은 미성년자에게 주어지는 법률적 보호로서 최소 규칙과 권고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위 ‘베이징 규칙’은 전세계 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사법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을 일련의 명백한 조항들-소년들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존중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규칙들)에 관한-을 제시하고 있다.

등이다. 이미 여러 나라(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모델은 전환처우(diversion)를 위한 공식적 기회의 하나로서 법률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벨기에와 프랑스와 같은 곳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그것들을 적용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 '회복적 사법' 모델은 단순한 처벌모델로의 회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사법제도에 '회복적 사법' 모델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회복적 사법' 모델은 소년사법제도내의 여러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소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소년범의 부모를 호출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경찰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해자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건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족집단회의'나 '피해자-가해자 중재(VOM)'으로 발전, 제도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가령 교통범죄나 경미범죄의 경우, 피해자-가해자 중재 또는 가족집단회의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를 단위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경찰청 (2001), 경찰백서.

김성언·노성호 (1999), 청소년범죄추세분석:1996-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이동원 (1990),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외 (2003),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김지선 (2002a),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2002b),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성호 외 (1994), 소년법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대검찰청 (1975, 1976, 1981, 1982), 범죄분석.

류철원 외 (1995),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2), 청소년백서.

법무연수원 (1996, 1998, 2000, 2001, 2002), 범죄백서.

심응철·최광현.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연구”, 『행동과학연구』 8:275-282.

윤용규 외 (2000),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1권 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동원 (2000), “청소년 범죄피해실태의 변화 - 1990년과 1999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8:267-293.

이성식 (1996), 처벌의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순래 외 (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호중 (2000) '회복적 사법: 이론과 법이론적 쟁점들' 국제형사학 심포지움 발표논문.
- 최영신 (2001), 청소년 폭력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가석방의 실태와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강력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재산범출소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

<외국문헌>

- Agnew, R. (1985),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 longitudinal test', *Criminology* 23:47-61.
- Akers, R.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3rd ed., Belmont, CA: Wadsworth
- Allison, P. D. (1984), *Event History Analysis: Regression for longitudinal event data*,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Bard, S. C., G. M. Storrs & H. Connelly (1987), *Classification of Juveniles in corrections: A model systems Approach*, Washington, D.C: Arthur D. Little.
- Blumstein, A., J. Cohen, J. A. Roth & C. A. Visher (1986), *Criminal Carrers and Carrer Criminals. Vol (1)*, Washington,

- D.C. : National Academy Press.
- Buckland G. & A. Stevens (2001), "Review of Effective Practice with young Offender in Mainland Europe", European Institution of Social Service, Univ. of Kent at Canterbury
- Bursik, R. J. Jr. (1980), 'The dynamics of specialization in Juvenile offenses', *Social Forces* 58(3): 851-864.
- Datesman, S. K. & M. Aickin (1984), 'Offense specialization and escalation among status offenders', *Criminology* :1246-1277.
- Farrington, D. P., H, N Snyder & T. A. Finnegan (1988), 'Specialization in Juvenile court careers', *Criminology* 26(3):461-485.
- Fitt, W. H., & Hammer, D. 1969. The self concept and delinquency, Nashville :Mental Health Center (Research Monograph No. 1).
- Gottfredson M. R. &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 Stanford Univ Press.
- Grasmick, H. G. C. R. Tittle, R.J. Burshik, Jr. & B. J. Arneklev (1993), 'Testing the core emp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 5-29
- Heckman, J. (1981), 'Statistical models for discrete panel data', in C. F. Manski and D. McFadden (eds.), *Structural Analysis of Discrete data with Econometric Applications*, Cambridge, Mass.: Mit Press.
- Hirschi, T. & M. Gottfredson (1993), 'Commentar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47-54.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Keane, C., P. S. Maxin & J. J. Teevan (1993), 'Drinking and Driving, self-control, and gender: Test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 30-46.
- Klein, M. W. (1984) 'Offense specialization and versatility among juvenil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4(2): 185-194.
- Krisberg, B. et. al. (1995), *Guide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Lab, S. P. (1984), 'Patterns in juvenile misbehavior', *Crime & Delinquency* 30(2):293-308.
- Le Blanc, M. & M. Freshette (1988), *Male Criminality Activity from Childhood through Youth: Multileve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New York: Spriger-Verlag
- Lemert, E. (1972),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2nd ed.,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 Massey, J. & M. Krohn (1986),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n integral social process model of deviant behavior', *Social Forces* 65:106-134.
- McCord, J. (1980),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patterns of crime,' *Criminology* 19(2):211-218.
- Meier, R, S. Burkett and C. Hickman (1984), 'Sanctions, peers and deviance: preliminary models of social control process', *the sociological Quarterly* 25:67-82.
- Nagin, D. S. & D. P. Farrington (1992), 'The onset and persistence of offending', *Criminology* 30(4):501-524.
- Nagin, D. S. & D. P. Farrington (1993), 'The stability of criminal

- potential from childhood to adulthood', *Criminology* 30(2):235-260.
- Nagin, D. S. & R. Paternoster (1991), 'On the relationship of past to future participation in delinquency', *Criminology* 29(3): 163-189.
- Osborn S. G. & D. J. West (1978),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predictors of criminal careers', *Journal of Adolescence* : 101-117.
- Osgood D. W., L. D. Johnston, P. M. O'Malley and J. G. Bachman (1988), 'The generality of deviance in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Feb): 81-93.
- Polakowski, M (1994), 'Liking self and social control with deviance: Illuminating the structure underly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its relation to deviant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 4-77.
- Polk, K. (1975), 'Schools and the delinquent experienc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15-388.
- Quinney, R. (1975), *Criminology: Analysis and Critique of Crime in America*, Boston: Little, Brown.
- Reckless, W. C. 1961. *The Crime Problem*, New York: Apple Century Crofts.
- Rowe, D. C. W. Osgood and W. A. Nicewander (1990), 'A latent trait approach to unifying criminal careers', *Criminology* 28: 237-270.
- Rudolf H. Moos, PH. D. 1987 *Correctional Institutions Environment Scale*
Review Set: *A Social Climate Scale*
Second Edition, Consulting Psychologists

- Press, Inc, USA.
- Sellin, T. (1931), "The Basis of Crime index,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 Police Science 22.
- Shannon, L.W., J. L. McKim, J. P. Curry and L. J. Haffner (1988), Criminal Career Continuity, New York, NY: Human Sciences Press.
- Shover, N. (1985), Aging Criminals, New York:Elsevier.
- Smith, D. R. & W. R. Smith (1984), 'Delinquent career-lines: A conceptual link between theory and juvenile offens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25:155-172.
- Smith, D. R. & W. R. Smith (1984), 'Patterns of delinquent careers: An assessment of three perspective', Social Science Research 13:129-158.
- Sykes, G. M. & F. T. Cullen (1992), Criminology(2nd. ed.), Fort Worth: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Tontodonato, P. (1988), 'Explaining rate changes in delinquent arrest transitions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Criminology 26(3):439-459.
- Walgrave, L. & J. Mehlbye (1998), "Confronting Youth in Europe", Juvenile Crime and Juvenile Justice, www.afk.dk/eng98/invenile.htm.
- Wells, L. E. & J. H. Rankin. 1983. "Self-concepts and a Mediating Factor in Delinquency." Social Psychological Quarterly 46:11-22.
- Wilson, J. J. and J. C. Howell (1993),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s. Program Summary,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Wolfgang, M. E., R. M. Figlio and T. Sellin (1972), *Delinquency in a Birth Cohort*, Chicago, IL. Univ. of Chicago Press.

Wolfgang, M. E., T. P. Thornberry and R. M. Figlio (1987), *From boy to Man, From Delinquency to Crime*, Chicago, IL. Univ. of Chicago Press.

공 백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03-R01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맹영임 · 구정화)
- 03-R02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조혜영 · 김선아)
- 03-R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 · 조아미 ·
백지숙 · 유혜림)
- 03-R04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 -정책제안 요약집-(임지연)
- 03-R05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연구(이종원 · 유승호)
- 03-R06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정주 · 김용대 · 성기원)
- 03-R07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황진구 · 권태희)
-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 · 전명기 · 이주연)
- 03-R09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 · 노재봉)
- 03-R1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 대책 연구
(이민희 · 임영식 · 이진숙)
- 03-R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길은배 · 문성호)
- 03-R12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정자 · 김은경 · 김형주)
- 03-R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김세진)

- 03-R14 청소년 정보소의 실태 조사 연구(김경준·최선희)
- 03-R1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이경상·김진호·오해섭·김희진)
- 03-R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과 함양방안 연구(김선미·남경희)
- 03-R17 가족복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 모색(방은령)
- 03-R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문성호)
- 03-R19 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영호)
- 03-R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통제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김희화)
- 03-R2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구(최동선)
- 03-R22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이성식)
- 03-R2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노혁)
- 03-R2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 03-R25 폭주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예방에 관한 연구(김문섭)
- 03-R26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문성원)
- 03-R27 부모를 위한 청소년지도 가이드(신인순 외)
- 03-R28 한·중·일 청소년 정책비교 연구(이종원)
- 03-R29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연구(김선미)
- 03-R30 2003전국청소년 자원봉사 주관사업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1 2003 대한민국 청소년봉사상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2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보고서(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메뉴얼(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4 일본자원봉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5 한중정책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6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공청회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7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김영한·서정아)
- 03-R39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재분·박효정·현주)
- 03-R40 일탈·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김은경·이동원)
- 03-R4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손유미·김상호·조정아)
- 03-R42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조한범·이금순·이우영·전효관)
- 03-R4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춘화·윤옥경)
- 03-R44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
(김영한·김진호·김갑성)
- 03-R4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길은배·한만길·최영표·강영혜·오해섭·김학성)
- 03-R46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이경상·조혜영·박창남)
- 03-R47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교육시설 특성화방안
(김정주·김진호·소병조)
- 03-R48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종원·이경상·김종길)

- 03-R49 청소년 책읽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춘화·서정아·김상현)
- 03-R50 선진국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전경숙·김민)
- 03-R51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9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집 모음집-
(황진구·강명숙·임지수)
- 03-R52 2003특성화 수련거리개발 [3]-청소년마을체험
(윤철경·이은경)
- 03-R53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6]-국제언어캠프
(김선미·김호숙)
- 03-R54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7]-환경음식만들기
(서정아·최경학)
- 03-R55 청소년 단체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맹영임·
이광호·김민·임연희)
- 03-R56 연령대별 외국청소년 정책비교 및 정책 대안
(윤철경·이상오·황성하·서수경)
- 03-R57 청소년 개발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김진호·송병국·
임영식·김진화·오해섭·윤명희·정효진)
- 03-R58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우정자·
김문섭·최종혁)
- 03-R59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함병수·임지연·김종두)
- 03-R60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혜영·최원기·임지연)
- 03-R6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황진구·김경준·이춘화·최창욱)
- 03-R62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연구(김경준·함병수·
김영한·최창욱)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3-03

연구보고 03-R 40

일탈 및 범죄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인 쇄 2003년 12월 26일
발 행 2003년 12월 30일
발 행 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권 이 중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대산문화사
전화 (02) 2278-0958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2188-8844(사무국)

ISBN 89-7816-505-2(93330)

공 백

일탈 및 범죄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 재범 문제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김은경 (KIC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동원 (광주대학교 교수)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3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5개 국책연구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3. 용어정리	9
II. 논의 배경	11
1. 한국 청소년범죄 발생동향과 재범추세 분석	13
1) 청소년범죄 발생추세	13
2) 발생추세에 나타난 청소년 범죄의 주요 특징	17
3) 청소년 재범추세와 문제점	26
4) 사법적 처리현황과 치우의 문제점	28
2. 재범 및 범죄경력화 과정에 대한 이해	34
1) 범죄경력화를 설명하는 두 가지 대립적 입장	34
2) 주요 선행 연구결과	37
III. 조사방법	41
1.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43
2. 변인의 측정	44
1) 비행·범죄경력과 생활변화 관련 변인	45
2) 과거 생활환경 관련 변인	46
3) 현재 시설에서의 경험과 태도 및 자아관련 변인	47
3. 분석방법	50

IV. 조사결과	53
1. 조사대상자의 특성	5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5
2) 조사대상자의 비행·범죄관련 특성	60
3) 조사대상자의 문제행동 경험	63
4) 조사대상자의 향후 재범가능성	65
2. 비행·범죄경력과 생활의 변화	65
1) 범죄발전의 양상	65
2) 최초 범죄 이후의 생활의 변화	73
3. 비행·범죄경력 및 생활변화와 재범	78
1) 비행·범죄경력과 재범	78
2) 최초 범죄 이후의 생활변화와 재범	86
3) 재범정도와 향후 재범가능성	98
4. 과거 생활환경과 재범	99
1) 가정환경과 재범	99
2) 학교생활과 재범	106
3) 비행친구와 재범	107
5. 현재 시설경험, 태도, 자아개념과 재범가능성	109
1) 시설경험과 재범가능성	109
2) 각종 태도와 재범가능성	113
3) 자아개념과 재범	116
6. 재범요인에 대한 종합분석	119
1)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9
2) 재범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3

V. 청소년 범죄통제에 대한 국제 정책동향	127
1. 21세기 소년사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29
2. 각국의 재범억제 프로그램 및 정책동향	135
1) 미국 .. .	135
2) 영국	145
3) 유럽	158
VI. 한국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169
1.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정책 시사점	171
1) 현행 처우효과의 한계와 조기개입의 중요성	171
2) 초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172
3) 학생의 신분변화와 재범으로의 강화효과	173
4) 부모의 감독활동이 재범억제에 갖는 중요성	174
5) 법과 사회에 대한 의식	175
7) 시설처우에 대한 시사점	176
2. 사법적 처우의 현안과제와 발전방향	176
1) 소년사법제도 개혁과 처우 시스템의 개선	177
2) 범죄위험성(JOB) 지표분석의 과학화 및 내실화	179
3) 조기 개입의 제도화	181
4) 지역사회중심 개입전략과 민간참여기반의 확대	182
5) 비행예방을 위한 환경의 조성파 프로그램 개발	183
6) 다기관 협력체계의 제도화	184
7)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새로운 처우제도 도입	185
참고문헌	187

표 목 차

<표 I-1> 범죄청소년들의 시설수용 현황(2003. 5 22 현재)	8
<표 II-1> 전체 소년범 인원 및 전체범죄인중 점유비율(1996-2001)	14
<표 II-2> 소년?성인별 형법범 및 특별법범 인원 및 인구비	16
<표 II-3> 청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18
<표 II-4> 청소년 특별법범의 범죄유형별 구성 동향(1966-2000) ...	20
<표 II-5> 청소년 형법범의 연령별 동향(1966-2000) ..	21
<표 II-6> 청소년 형법범의 연령과 범죄유형(2001)	22
<표 II-7> 청소년 범죄자의 성별 현황(1966-2000)	23
<표 II-8> 청소년 범죄자의 신분 현황(1966-2000) ...	24
<표 II-9> 청소년 범죄자의 학력수준 현황(1966-2000)	25
<표 II-10> 청소년 범죄자의 전과 현황(1966-2000)	27
<표 II-11> 소년범죄의 처리	29
<표 II-1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30
<표 II-13> 소년보호사건 처리동향	31
<표 II-14> 소년보호사건 대상자 위탁현황	32
<표 II-1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재범현황 ...	33
<표 II-16> 청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	40
<표 III-1> 조사대상자의 기관별 분포	44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5
<표 IV-2> 조사대상자의 비행·범죄관련 특성	59
<표 IV-3> 조사대상자의 문제행동 경험	62
<표 IV-4> 조사대상자의 향후 재범가능성에 대한 태도	64
<표 IV-5> 범행단계별 범죄유형의 구성변화	67

<표 IV-6> 범죄유형의 발전양상	69
<표 IV-7> 범행단계별 공범정도의 변화	70
<표 IV-8> 제1범행과 제2범행의 시간적 간격(재범간격)	71
<표 IV-9> 첫 번째 범죄와 두 번째 범죄에 대한 처분비교	72
<표 IV-10> 첫 번째 범죄 당시 신분	73
<표 IV-11> 첫 번째 범죄 이후 신분의 변화	74
<표 IV-12> 부모와의 관계의 변화	75
<표 IV-13> 친구관계의 변화	76
<표 IV-14> 학교생활의 변화	77
<표 IV-15> 문제행동 경험과 재범정도	79
<표 IV-16> 문제행동 경험과 향후 재범가능성	80
<표 IV-17> 최초 경찰체포 연령과 재범정도	81
<표 IV-18> 최초 경찰체포 연령과 향후 재범가능성	82
<표 IV-19> 최초 범죄유형과 재범정도	82
<표 IV-20> 최초 범죄유형과 향후 재범가능성	83
<표 IV-21> 최초 범죄에 대한 처분경험과 재범정도	84
<표 IV-22> 최초 범죄에 대한 처분경험과 향후 재범가능성	85
<표 IV-23> 최초 범죄시 신분과 재범정도	86
<표 IV-24> 최초 범죄시 신분과 향후 재범가능성	87
<표 IV-25> 최초 범죄이후 신분의 변동과 재범정도	87
<표 IV-26> 최초 범죄이후 신분의 변동과 향후 재범가능성	88
<표 IV-27> 최초 범죄시 학생의 신분변동과 재범정도	88
<표 IV-28> 최초 범죄시 학생의 신분변동과 향후 재범가능성	88
<표 IV-29> 최초 범죄(처분)이후 부모와의 관계변화와 재범정도	90
<표 IV-30> 최초 범죄(처분)이후 부모와의 관계변화와 재범가능성 ...	91
<표 IV-31> 최초 범죄(처분)이후 친구와의 관계변화와 재범정도 .	93
<표 IV-32> 최초 범죄(처분)이후 친구와의 관계변화와 재범가능성	94

<표 IV-33> 최초 범죄(처분)이후 학교생활의 변화와 재범정도	96
<표 IV-34> 최초 범죄(처분)이후 학교생활의 변화와 재범가능성 ..	97
<표 IV-35> 재범정도와 향후 재범가능성	98
<표 IV-36> 결손가정여부와 재범정도	99
<표 IV-37> 결손가정여부와 향후 재범가능성	100
<표 IV-38> 가족의 월평균 수입정도와 재범정도	100
<표 IV-39> 가족의 월평균 수입정도와 향후 재범가능성	101
<표 IV-40> 아버지와 의 관계와 재범정도	102
<표 IV-41> 아버지와 의 관계와 향후 재범가능성	102
<표 IV-42> 어머니와의 관계와 재범정도	103
<표 IV-43> 어머니와의 관계와 향후 재범가능성	103
<표 IV-44> 아버지의 훈육태도와 재범정도	104
<표 IV-45> 아버지의 훈육태도와 향후 재범가능성	104
<표 IV-46> 어머니의 훈육태도와 재범정도	105
<표 IV-47> 어머니의 훈육태도와 향후 재범가능성	105
<표 IV-48> 학교생활과 재범정도	106
<표 IV-49> 학교생활과 향후 재범가능성	107
<표 IV-50> 비행친구와 재범정도	107
<표 IV-51> 비행친구와 향후 재범가능성	108
<표 IV-52> 현재 시설에서의 경험과 향후 재범가능성	110
<표 IV-53> 범죄학습과 향후 재범가능성	112
<표 IV-54> 법(범죄)과 사회에 대한 태도와 향후 재범가능성 ..	113
<표 IV-55> 낙인인지와 향후 재범가능성	114
<표 IV-56> 처벌의 두려움과 향후 재범가능성	115
<표 IV-57> 범죄적 자아와 향후 재범가능성	116
<표 IV-58> 자아개념과 향후 재범가능성	118
<표 IV-59> 재범횟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120

<표 IV-60> 재범가능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123
<표 V-1> 미국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 전략	136
<표 V-2> 영국의 소년사법체계와 처우담당기관	146
<표 V-3> 재판전에 개입할 수 있는 명령들	150
<표 V-4> 소송을 위한 소년법에 대한 구치방법들	151
<표 V-5> 지역사회내 처우 유형과 내용	153
<표 V-6> 소년구금시설의 세 가지 유형	157
<표 V-7> 유럽각국의 소년사법체계에서의 연령범주들	159
<표 V-8> 각국의 청소년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강제적 처우내용 ..	165